

목 차

1부 |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활동

여는 글	●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걸어온 길
활동보고1	● ‘비정상’가족들의‘비법한’미래기획“찬란한 유언장”
활동보고2	● 연구 활동
활동보고3	● 가족정책포럼
활동보고4	● 파트너십법안 연구

2부 | 활동 자료 수록

A. 가족정책 포럼 발표문/칼럼

■ 2차 가족정책포럼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

[발표문] 생명보호, 어떻게 해야할까 /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발표문]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 백영경(KAIST강사)

[칼럼] 인권오름 <가족정책 토크보기> /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 나영정(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발표문] 부동산 계급과 한국사회 / 손낙구 (『부동산 계급 사회』 저자)

[발표문] 소수자의 주거권을 생각한다. / 호연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운동 네트워크 활동가)

[칼럼] 인권오름 <가족정책 토크보기> /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 케이 (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칼럼] 인권옴 <가족정책 톨아보기> /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 더지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5차 가족정책포럼<주거제도와 가족상황차별:전세자금대출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문] 35세 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대출 허용 집단민원 경과 보고 / 타리 (진보신당 성정지위원회)

[발표문] 청년 빈곤문제와 주거권 / 김삿갓

[발표문] 주거제도와 비혼자 차별 / 더지(언니네트워크)

[발표문] 성소수자의 주거제도 배제 / 소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6차 가족정책포럼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범주 ; 차별금지법에 담기>

[발표문] 왜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하는가 / 선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표문] 차별금지법에서 재정의 하고자 하는 ‘가족’이란 /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발표문]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차별 사례 / 더지 (언니네트워크)

[발표문]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차별과 복합차별 / 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토론문]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 권희정(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진경(반차별공동행동/장애여성공감 활동가)

B. 기타 발표문

2011.1.15 제2회 LGBT인권포럼 [사회권 섹션] /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 가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가족구성권연구모임)

1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활동

여는 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걸어온 길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2006년 8월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가족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 안팎을 아우른 차별을 없애고 가족제도로부터 배제된 집단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및 정당, 활동가, 연구자,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모임이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평소 현실 생활에서 경험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와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 차별받았던 문제 그리고 견고한 차별의 틀에 대한 문제의식들에서 비롯한 것이다.

1. 시작

2005년 3월,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근간을 이루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전부터 확산되었던 가족에 대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연구모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그동안의 다양한 가족 논의들 사이에서 ‘빈틈’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가족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제도에 균열을 내겠다는 포부로 출발하였다.

연구모임에서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기반하고 있던 부계혈통주의·성별분업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현실

속의 가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는 범주들은 끊임없이 ‘가족’에 포함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나누고, 어떤 가족이 ‘가족’에 포함되는냐를 결정짓는 기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회복해야 할 가족의 돌봄 기능, 경제적 생존단위로서 역할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른바 “다문화가정”이 가족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연구모임은 이러한 논의의 틀로는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의 실질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가족 담론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논의의 틀을 전환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내걸었던 의제는 ‘가족구성권’이었다. 가족구성으로부터의 배제야말로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가족과 관련한 차별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가족구성권이라는 문제 설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의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 동성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와 공동체 가족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자 과제로 정했다. 물론 이러한 목표 설정은 우리의 활동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정상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 담론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2. 전개(1) - 연구활동의 진행

활동 초반, 연구모임은 대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새로운 파트너십 관련 법률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와 연구 활동에 집중했다.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들이 진행한 가족차별 사례 분석, 파트너십 논의에서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또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파트너십 관련 법률을 정리한 자료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파트너십 관련 법률의 상을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됐다.

세미나와 함께 진행한 또 다른 작업은 여러 사회정책·제도 안에서 가족이 어떠한 정의 하에 어떤 범주로 설정돼 있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어떤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와 자료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주택정책, 조세제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러한 제도 설계의 근간이 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2007년 6월에는 “가족에 대한 발칙한 이야기: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1년간 고민해 온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 모임은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출발하면서도 오늘날 가족을 ‘선택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 개인들의 실천,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욕망에 주목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존 가족관계의 성별 권력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정형화되고 제도화 된 가족 범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 임대주택제도 등을 통해 제도와 정책을 드러난 가족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 가족과 개인, 가족과 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해외 파트너십 관련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 동성애자 운동에서 제기되었던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워크숍을 기점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모임 구성원을 확대하고 우리 모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경로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 기존에 참여하던 단체, 연구자, 활동가들 외에 더 많은 단체, 개인들에게 참여를 제안했고, 이후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담론과 논리를 개발하고 이후 입법 운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우리 모임 구성원들은 △심층면접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성원들에 대한 사례 조사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정리 △동성결혼과 동반자 관계 관련 해외 법률 정리 △고용정책, 복지제도의 가족 차별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작업결과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 담론·제도·사례 연구』(2008)를 발간할 수 있었다.

3. 전개(2) - 문제의식의 확대와 심화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처음 계획은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을 펴낸 이후 그때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거쳐 법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결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문제의식을 좀 더 넓히고 깊이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선화하기로 하였다. 당장 입법운동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대중적 활동을 통해 가족 차별과 관련한 현실을 드러내고 가족 차별의 현실에 놓인 사람들의 자력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보다 현실에 다가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가족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더욱 가로막게 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에 대항하여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정책 담론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도한 것이 <‘비정상’ 가족들의 ‘대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프로그램이었다. 제도적으로 가족 차별을 구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 차별과 가족구성권 배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죽음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동시에, 반대로 유언장 쓰기를 통해 가족제도가 어떻게 제도 바깥의 가족들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가족제도와 여기에 더 작은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아울러 성찰하면서, 가족제도 바깥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가족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죽음 후의 자기주체성을 유언장으로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게이, 레즈비언, 장애 여성, 비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찬란한 유언장” 행사와 동시에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2010년 한 해 동안 <가족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현 정권의 가족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낙태’와 ‘출산장려’정책, 주거 정책과 계급의 문제, ‘다문화’와 관련한 가족 정책, 주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 혼인 및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강화와 가족 차별, 차별금지법과 가족 차별 등을 주제로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가족 차별과 가족구성권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4. 전개(3) - 욕망 실현하기

2011년부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운동의 큰 목적 중 하나인 입법운동과 현실 속의 문제점이 가족구성권과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1인 가구의 현실과 청년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후 가족 상황 차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실질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참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주요한 목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법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들을 토대로 생활동반자 관계 법안 초안 작업을 진행했다.

5. 미래

앞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그동안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을 넘어, 이제까지 발전시킨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모임을 확대하여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 계획이다. 가족과 가족구성권에 관한 연구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면서도, 변화하는 가족과 관련한 법·제도·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운동에 공감하는 단체, 개인들과 보다 광범위한 연대모임(네트워크)을 구성할 것이다.



▲ 2011년 2월 워크숍 3개년 계획 논의 중!

이 운동의 큰 줄기 중 하나는 그동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목표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동반자 관계와 공동체가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연대모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즈베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이 글은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민주노동당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2008.에 수록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소개글과 『2010-2011 LGBT 인권포럼 자료집』,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1.에 수록된 가족구성권과 성소수자(가람) 글에서 상당 부분 옮겨온 것입니다.

활동 보고 1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1. 시작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이하 “찬란한 유언장”)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가을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그에 잇따른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회복, 그리고 유산의 향방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었다. 상당한 재산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던 유명 배우의 죽음이었다. 만큼, 친권, 후견인, 유언, 상속과 같은 친족상속제도에 대해 유래 없이 대중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한편, 최진실이 사망한 다음날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제도화 운동을 하던 한국계 미국인 성소수자 변호사 알마 송이 백(Alma Soongi Beck)의 강연이 있었고, 그 강연에 참여한 몇몇 연구모임 구성원들은 그 변호사가 잠시 언급한 동성 커플이 유언장 작성을 도왔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다.

그 즈음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발간사업을 정리하고, 이후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을 넘어 대중적인 활동

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던 중 최진실의 사망으로 불거진 친족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최진실이 만약 유언장을 남겼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여기에 미국 동성 결혼 제도화 관련 활동에서 유언장 쓰기를 통해 동성 결혼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필요성과 요청을 확인했다던 백 변호사의 강연 내용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유언장을 키워드로 해서 대중적인 사업을 벌여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사업의 기획이 잡혀나가면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찬란한 유언장”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 기획 의도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찬란한 유언장”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였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한 가족의 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상 가족’의 틀에서 벗어난 가족에 차별적으로 작동되는 현재의 친족상속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했다.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친권의 문제나 후견인이 있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친족상속제도에서는 이성애와 혈연관계, 그리고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의 틀과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러는, 한 개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에서 차별받게 된다. 또 이러한 제도설계는 실질적으로도 애도를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배제하는 현실과 이어진다. 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이성애 가족형태의 ‘정상성’을 유지시키며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가족주의 규범을 지탱하고 있는 상징적·물질적 기체인 친족상속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했다.

다음으로는 유언장을 쓰는 과정에서 현재의 가족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 사례와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직접 수집하고 접해 보려고 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유언장에 담은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차별들이 발생하는지 서로 확인하고 유언장으로 대처하는 방법, 유언장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과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색해 보고자 했다.

세 번째로는 대안적 가족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안적 가족제도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알려려고 했다. 유언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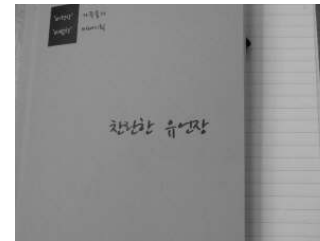
친족상속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어떤 이들이 유언장 행사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며 얼마만큼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무개를 둔 것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른바 '사후통제권'을 획득하도록, 차별이나 배제 속에서 유언장을 통해 스스로 힘을 가짐으로써 자력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경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파트너나 가족에게 재산이나 유품이 아닌 갈등과 분쟁의 여지만 남겨 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언장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혈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제도 바깥에서 스스로의 주도 하에 삶과 죽음, 생의 의미와 소중한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은 재산의 귀속, 장례절차 등 죽음 뒤 발자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살아생전 자신이 유지해 온 가치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유언장 작성은 현재의 삶을 성찰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하게 유언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되는지, 유언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언장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의 사망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속, 장례, 자녀나 친지 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씌으로써 사망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정리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편협한 가족주의에 기초한 상속제도와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관행이 초래하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고, 그러한 가족구성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보다 가치 있게 의미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언장 작성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출발점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유언장 작성 문화를 확산하는 것 뿐 아니라, 이성애 가족주의 하에서 배제된 다양한 가족들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며 부딪치는 갖가지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3.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다시 한 번 현재의 상속제도와 친족제도, 그리고 유언장의 의미와 효력, 효력 있는 유언장이 되기 위한 요건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은 “죽을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여는 글(인정 집필)과 유언장의 의미를 짚어보는 글(이종걸 집필), 현행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비



판하는 글(류임량 집필), 유언장의 작성방법과 활용법(장서연 집필), 유언장 작성례(가람 집필, 이경환 변호사 감수), 그리고 친족상속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은 부록(박혜림 집필)으로 구성되었고, 김원경의 꼼꼼하고 보기 쉬운 편집으로 완성되었다. 이 자료집은 굳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료집만을 보더라도 상속제도를 이해하고 유언장에 담은 내용과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 자료집에서는 일반적인 유언장과는 다르게 가족제도 바깥의 가족구성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언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다. 자료집에 대한 호응이 좋아 몇 달 되지 않아 2쇄를 찍는 기업을 토했다.

본 행사는 크게 1) 여는 프로그램, 2) 유언장의 의미와 법적 효력 안내, 3) 유언장 작성례를 통한 유언장 쓰는 방법 안내, 4) 유언장을 참가자들이 직접 쓰는 시간, 5) 참가자들이 쓴 유언장이나 유언내용, 소감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여는 프로그램에도 무개를 많이 두었는데, 단지 유언장만을 쓰는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담은 유언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또 참가자들이 유언장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꼭 배치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산의 정리가 중요 목적인 일반적인 유언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내용을 담게 되는지 참가자들이 서로 나누면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간에는 다양한 내용의 유언이 발표되었고, 이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놓친 부분을 유언장에 바로 추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오랜 준비 끝에 첫 행사가 2009년 9월 19일 오후 마포 민중의집에서 열렸다. 첫 행사는 대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꾸몄다. 오프닝 프로그램에서는 즉흥극을 하는 극단 “목요일 오후 한 시”를 초청해서 참가자들의 죽음에 대한 경험과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즉흥극으로 꾸며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와 유언장 작성 시간이 이어졌는데, 이날에는 성소수자, 비혼, 미혼모(비혼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서 많은 사연과 질문들이 오갔다.

이후에는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각 모임의 특수성에 맞게 준비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찬란한 유언장 행사를 진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2009. 9. 19. 첫 행사
- 2) 2010. 2. 19. 거제여성회
- 3) 2010. 3. 6.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4) 2010. 5. 28. 언니네트워크
- 5) 2010. 6. 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6) 2010. 7. 10. 장애여성공감
- 7) 2010. 10. 6. 이화레즈비언인권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일곱 차례에 걸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참신한 유언들을 많이 제시해 주었다. 어떤 참가자는 자신의 유산으로 여성주의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넣기도 했고, 영정 사진은 언제 찍은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자신의 동성 파트너와 자녀,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책을 세심하게 적기도 했다. 또 장례식은 자신의 유산으로 친구들이 여행을 가주는 것으로 대신해 달라는 유언도 있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파티가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특히 소수자로서 혈연가족과 다름없는 동료들이 충분히 자신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요청하기도 하고, 가족제도가 사회적으로 차별에 비판하고 변화를 꿈꾸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기도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등 공익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유언이 많은 것도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다. 각각의 행사마다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다양한 서사와 유언이 오가면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결과물들을 낳았다.



4. 평가와 이후의 계획

“찬란한 유언장”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 복잡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나 정치적인 이슈화와 새로운 담론 개발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내용이나 대상이 동성 커플에 집중돼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이주결혼가족, 이혼가족 등 대상을 발굴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좀 더 폭을 넓혀보려고 했었지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참가동력을 끌어내지 못해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차별에 집중하다 보니 긍정적인 미래기획으로서의 성격, 현재 다양한 가족형태를 꾸려나가고 있는 가족들의 대안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반성도 이어졌다. 프로그램의 시간상 제약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참여 인원을 제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후통제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며 놀라워했고, 유언장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든든해 했으며, 친족·상속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고 완결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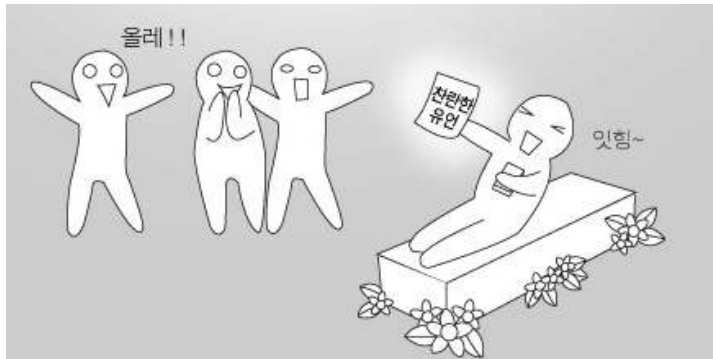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이 행사를 역량상 계속 진행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진행을 하고, 다른 단체에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지원하면서 여러 모임들이 주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30회의 진행과 500명의 참가자”를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많고 큰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여기고 있다. 차별과 배제가 광범위한 현실 속에서, 이 행사의 의미와 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뒷이야기

“찬란한 유언장”은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서 여러 차례 진행됐던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또 죽음을 다루었던 만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구성원들에게 많은 기억과 여러 감정들을 남겼다.

첫 행사 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성과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일 죽더라도 사과나무라도 하나 심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인정의 말을 바탕으로 “목요일 오후 한 시” 팀이 꾸민 즉흥극 리허설에서는 설교자의 역할을 한 배우가 “사람과 사과나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서 안 돼요!”라는 풍자 섞인 설교를 해서 두고두고 연구모임 사람들은 폭소를 했었고,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 타리는 오프닝 프로그램으로 영화 <더 월 2>의 1960년대 미국의 노년 레즈비언을 다룬 단편을 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다 오랜 울음을 터뜨려 사람들은 또 오래오래 애잔해 했다. 참가자들은 상실을 떠올리며 여럿 울기도 했고, “내 장례식은 무조건 파티로 해야 해!”라면서 결국 우리 삶이 파티여야 함을 이야기하며 많이 웃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독 더 슬프기도 하고, 유독 더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하는 상가집에 모인 죽은 이와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가 찾아다니며 만난 죽음과 유언들은 사실 각자 자신의 죽음과 유언이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삶의 현실과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들을 포착하면서 대안적인 가족제도를 기획해 나가고 세상에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밑바탕을 갖게 한 이 프로그램은 그 제목만큼이나, 찬란했다. (기담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활동 보고 2

연구 활동

1. 들어가며

2006년 8월 첫 모임을 가진 가족구성권 모임은 말 그대로 ‘연구모임’으로 출발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가족을 둘러싼 척박한 담론 지형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법·제도 변화 역시 방대한 기존 법률에 대한 검토와 치밀한 성안 작업을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 하에 연구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지난 5년간 가족구성권 모임이 남긴, 작지만 큰 성과를 여기서는 △가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책 안의 가족 비판 △사례 연구 △가족차별 해소 법률 △양극화 시대의 가족 이상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2. 가족담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 모임이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한 활동은 가족차별 사례 및 관련 법률을 조사한 기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었다. 그동안 민우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몇몇 사회운동단체와 기관에서 진행한 가족차별 실태조사, 성소수자 실태조사 등의 자료, 해외 동성애 관계의 법적 보호 현황을 연구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2007년부터 주된 세미나의 기조로 삼은 것은 이른바 ‘Post-호주제’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둘러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을 설득할 수 있는 대중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연구 성과는 먼저 2007년 6월에 진행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 워크숍에 제출되었다. 이날 발표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 가족구성권 문제의식 제안”에서 우리는 이성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근대적 가족의 ‘해체’를 주장했던 기존의 페미니스트 논의를 검토하며, 이러한 비판이 원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망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실제 정상가족

과는 다른 형태로 가족을 꾸리며 자신의 가족구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탈근대적 변화 속에서 친밀성과 사랑, 관계의 변동을 목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를 담아낼 담론적 공간으로서 '가족구성권'이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우리가 던진 문제의식은 2008년 발행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를 발간하기 까지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발전되었다. 이 책에 실린 "대안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가족구성권 논의의 출발점"은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이 능동적으로 가족을 구성해 가는 개인들의 시도를 포착하고 이성애 중심 결합을 전제로 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해체·재구성할 수 있다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라는 자유주의적 논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가족들의 출현을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 - 가족기능의 사회화, 가족 다양성 담론 등 - 가 여전히 정상가족의 상을 전제함으로써 중심-주변의 구분을 유지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처럼 대안적 가족에 대한 논의가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의 경계와 범주를 설정하거나 개인-가족의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관계의 구성에 대한 개인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욕구를 특정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는 '가족'의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생애 전반에서 늘 가족을 구성·유지·해소하고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가족 혹은 다른 확장된 의미의 공동체는 이러한 여러 관계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계들이 갖는 다양한 속성들, 예컨대 경제적 협력, 부양, 돌봄, 정서적 친밀성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가족을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임은 가족구성권의 실현을 혼인·혈연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변종(?)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개념 자체를 해체·전환하는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로 위치시키고, 특정 관계에 대한 승인과 지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인-가족-국가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3.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여러 사회정책들을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 모임이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연구사업의 하나다. 이는 기존의 정책과 제도에 내재한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주의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다른 형태의 가족/개인들이 배제되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지양하는 다양한 가족공동체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제도 안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여러 분야의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작동되고 있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했다. 여기에는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있던 사회정책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 시기 우리가 검토하기로 정한 네 가지 제도는 △건강보험 △임대주택 △고용관련 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 이 제도는 그동안 혼인·혈연관계 외의 가족공동체들이 직접 겪은 차별과 불편 사례에서 가장 흔하게 제기되었던 영역이고, 그만큼 가족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가.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정책 중에서도 사회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주 접하게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친족관계에 기초한 고유한 부양·피부양 체계를 보험 가입과 혜택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어,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가족공동체들은 제도 안에 통합되지 못한다. 소득 기여가 있는 가족구성원(생계부양자)을 가입자로, 그와 부부-친족 관계에 있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피부양자로 규정하는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보장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현 제도 안에서 공적 의료보장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가입 자격에서 가족(또는 세대)의 범위를 확장하여,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공동체로 부양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이 변화하는 가족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나. 임대주택정책

주택은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가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주택이라는 자원의 사회적 분배는 사회가 강제하는 특정한 가족모델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배제하거나 아예 공동 거주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가 정상가족에 기초한 '세대' 개념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주민등록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이지만, 임대주택 관련 제도나 임대차보호법에서 이는 혈연가족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세대가 혈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는 단독세대주

역시 이혼녀와 자녀 등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지만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주택공급 사업이 '정상적인' 4인 가족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설계된 공간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 고용관련 법·제도

고용관련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별노동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여러 제도와 마찬가지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가족상황별로 법·제도의 적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이다. 또 많은 경우 고용과 관련된 가족차별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이력서를 제출할 때 가족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게 한다거나 면접 과정에서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은 정상가족 바깥의 가족구성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관행이다. 가족임금, 가족수당, 육아휴직 등 가족 돌봄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별분업에 기초한 가족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가족형태,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 내 지위, 가족 책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고용 관행을 '차별'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요구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사회의 오랜 전통인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복지제도는 가족을 1차적인 생계의 기초 단위가 개인의 보호 장치로 기능하게 해 왔다. 때문에 개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정의와 의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개인의 수급권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친족·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강제함으로써 빈곤층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방치하는 문제적인 규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수급권 기준에 따라 현재 가족을 해체하거나 스스로 법적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문제의 해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나아가 부양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이 네 가지 제도를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문제는 여러 가족관련 법률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념'이나 '관행'에 의존하여 재해석되며, 의무가 아닌 권리 주체를 명시할 때는 특히 매우 좁은 의미의 가족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에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작업은 향후 민법 등 가족 관련 기본법 상 가족의 정의와 범주를

확장하는 작업과 함께 개별 법률이 정의하는 가족과 그 유사한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4. 다양한 가족형태 사례 연구

한국사회에서 이성애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가족구성권 개념의 확장과 대안적인 가족관련 법·제도를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인 만큼 우리 모임은 직접 사례조사 연구를 기획했다. 기존 조사와 달리 우리 모임의 연구는 제도 밖의 가족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에 더 깊이 착목하고,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이들 스스로의 요구가 결합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2007~2008년에 진행한 제도 밖의 가족 사례 조사는 동성애 가족, 트랜스젠더 가족, 이성애자 가족 중 등록하지 않은 가족, 장애인 가족, (동성애, 장애인) 공동체 가족과 비혼을 선택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모두 12개 가족공동체를 만나 심층면접을 통해 각 유형별로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지금과 같은 가족을 구성하게 된 배경, 제도 밖의 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제도적 차별이나 비제도적·관행적 차별, 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많은 공을 들인 만큼 이 작업을 통해 얻은 교훈은 적지 않다. 이들이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는 가족들이 놓인 사회적 환경이 가족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는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환경과 자기 의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은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관계를 탈피하여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이들 가족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 사례들에 주목하였으나 정작 가장 많이 지적된 사례는 사회문화적인 차별, 즉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편견과 문화적 배제였다. 이러한 차별은 비혼이라는 상황, 성별 및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등의 특수한 맥락과 겹쳐져 상호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제도 밖의 가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정상가족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거나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아웃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당사자들과의 긴

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변수를 통제해 나가는 것이 향후 입법운동에서 중요한 과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차별금지법 내 가족상황차별 관련 규정 연구

2008년 상반기까지 위 연구 사업들을 마친 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도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라는 데는 이의가 없었지만, 2008년 대선을 지나며 변화된 정치 상황은 언제 어떻게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회의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입법운동의 구체적인 전망을 그리고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제안이 제기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가족 관련 의제에 대해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안적인 가족담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가족상황차별 이슈를 포함하기 위한 활동은 가족정책포럼과 더불어 후자의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연구사업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위협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입법 과정에 있었다. 2008년 마련된 당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 성적 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제외하면서 성소수자 운동 진영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구성된 사회운동 내 연대망은 이명박 정권 이후 거의 중단 상태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불씨를 피우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상황차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임의 논의는 2010년 이러한 활동과의 연계 하에 시작되었다.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지침이나 해외 법률,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한 이 작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복잡한 고민들을 던져주었다.

앞서 사례 조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가족 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서 ‘가족상황차별’은 가족구성원 개인이 겪는 성별·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의 차별 요인들과 연결되어 대체로 ‘복합차별’의 양상을 띤다. 이는 각각의 케이스에서 특별히 ‘가족상황차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차별들을 매개하고 서로를 강화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피해, 그 상황과 느낌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차별이 명백한 ‘차별’로 인식되지 못한 채 지배적인 통념과 관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경험과 적지 않은 피해들을 ‘가족상황차별’로 진단하고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상황차별’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상황차별을 △특정한 파트너십과 돌봄의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 및 그를 거쳐 형성된 가족관계의 특성으로서 ‘가족구성 과정’을 이유로 한 차별 △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역사나 상태, 행위로 인하여 가족 전체,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뤄지는 것으로서 ‘가족구성원’을 이유로 한 차별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 이상 3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과 교류함으로써,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로서 차별금지법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 했다.

6. 양극화 시대 가족과 복지, 청년의 삶

2011년 들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국사회의 복지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국가가 특정한 가족형태 - 근대적 성별분업에 기초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을 토대로 구축되어 왔으며, 개인이 아닌 가족을 복지의 단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가족의 ‘정상성’을 강화한다는 우리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자극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진보적’ 대안 속에도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복지국가 논의에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즉 가족을 단위로 한 기존 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청년들의 삶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우리 모임이 가족구성에서 배제된 집단으로 상정한 이들은 주로 성소수자 등 제도적·형식적으로 가족구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양극화와 불안의 시대에 실질적 의미에서 가족구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청년들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비혼’은 하나의 선택적인 가족구성의 형태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왔지만, 오늘날 사회경제적 요소와 제도적 환경 속에서 이는 많은 청년들에게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선택’ 혹은 ‘강요된 선택’이 되고 있다. 끝없이 오르는 학자금과 만성적인 청년실업은 청년세대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문제이지만, 이들의 노동권, 학습권, 복지수급권 등 사회권은 독립의 지연과 함께 점점 더 개별 가족의 문제로 치환된다. 가족에 대한 의존을 더욱 강화하는 이러한 상황은 양극화의 세대적 재생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가난한 가족의 젊은이는 가족을 위해 독립을 연기하고 부유한 가족의 젊은이는 더 긴 생애를 가족의 자산과 사회적 지위의 의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은 우리 모임이 지금껏 가져온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각을 던져주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율과 선택이라는 자유주의적 의제로 가족구성권이 제한되는 것을 늘 경계해 왔지만, 가족구성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았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가족 벗어나기’ 아니면 ‘가족 강화하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확장된 공동체로서 가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자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을 결혼과 출산이라는 기존 가족제도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대안적인 가족형태를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상호의존의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복지국가 논의에 개입하고자 우리 모임은 2011년 상반기 몇 차례 세미나가 진행했다. 기존 통계자료와 연구 자료,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교육과 취업,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또 여러 문헌들을 통해 결혼, 출산, 취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청년들이 각자의 가족상황과 계급적 기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독립 혹은 ‘고립’에 처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얻은 우리의 고민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제도적·경제적·사회적으로 가족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보다 현실에 가깝게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차별로 인해서든 경제적 박탈로 인해서든 가족구성권으로부터 배제되는 여러 집단들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소수자 운동의 의제를 확장하는 실천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난 5년은 우리사회에 가족구성권이라는 의제를 던지는 작업이 매우 방대한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다.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각각의 구조물들에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한 형태와 이데올로기로 묻어나 있으며, 그러한 근간을 변화시키겠다는 우리 모임이 어지간한 포부로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진행해 온 연구사업의 성과가 적은 것은 아니다. 지나온 궤적들이 다음 단계의 밑거름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 왔기에 계속 성장해 나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듬해 연구 사업을 기획해 보자. (김원정@가족구성권연구모임)



활동보고 3

가족정책포럼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9년 말 좀 더 가족과 관련된 담론을 생산하고 정책연구를 위해 포럼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1~2개월에 한번 포럼을 열고 현안과 쟁점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아서 진행해나가면서 다양한 학자와 활동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안적인 가족담론/정책 생산의 풀을 넓히는 역할을 자처했다. 이 포럼은 진보신당 산하 상상연구소에 가족정책포럼을 등록하여 진보정당과의 연계점을 찾는 동시에 비용과 장소 등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였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적극적으로 가족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일상적인 활동과 별개로 담론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나선 이유는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보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구성권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좀 더 급진적이고 깊이 있는 담론이 필요했으나 그것을 외부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포럼은 2010년 12월에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올해 들어서 복지정책이 정국 현안이 되었을 때 복지국가와 가족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세대와 노동으로 연결시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가족정책포럼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상반기에는 가족정책과 관련된 현안을 짚어서 현재 가족정책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고 토론했고 하반기에는 가족상황과 차별에 관해 주거 등의 권리와 연계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가족상황차별을 정식화하는 작업을 하여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자 했다.

1차 가족정책포럼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방향과 대응"

일사: 2010. 1. 21. 7시

발제: 가족구성권연구모임

2차 가족정책포럼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

일사: 2010. 2. 18. 7시

발제: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영경(KAIST강사,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일사: 2010. 3. 23. 7시

발제: 한국사회의 부동산과 계급 재생산_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소수자의 주거권과 가족_호연(인권운동사랑방)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정책과 가족구성권"

일사: 2010. 4. 20. 7시

발표: '다문화 트렌드'에 던지는 질문들_허요영숙(이주여성인권센터)

5차 가족정책포럼 "주거제도와 가족상황차별-전세자금대출문제를 중심으로"

일사: 2010. 9. 29. 7시

발제: 35세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대출 허용 집단민원 경과보고_타리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청년 빈곤문제와 주거권_김숫샷 (강남에서 부모님 모시고 개 키우면서 살고 있음), 주거제도와 비혼자 차별_더지 (언니네트워크), 성소수자의 주거제도 배제_소윤(한국레즈비언 상담소)

6차 가족정책포럼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범주: 차별금지법에 담기"

일사: 2010. 12. 7. 7시

발제: 가족구성권연구모임

토론: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장), 권희정(한미로넛 사무국장), 진경(반차별공동행동)

* 발제문, 칼럼은 자료집 2부에 수록했습니다.

1) 가족정책의 이슈와 쟁점

첫 번째 포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방향과 대응"을 다루었다. 이명박 정부의 가족정책은 '저출산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가족정책이 크게는 저출산 대응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가족정책이 나뉘는데,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도 저출산 해결의 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정권 초반에는 일가정 양립, 보육에 대한 방안에 관심을 가졌다면, 현재는 출산지원금, 다자녀가족 세제혜택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고용, 소득 양극화, 비혼/만혼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내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였다.

저출산 담론이 말하는 위기론 자체에 대응하고 이명박 정부들이 더욱 노골화되는 정상가족중심주의에 대응하기위한 활동이 필요함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인했다. 고용과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복지의 문제를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어떻게 연관시켜낼지 향후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정권이 바뀌고 낙태근절운동이 생겨나면서 정부의 입장 자체도 불법낙태단속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짚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생명과 선택의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주요 논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급증하지 않으며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오히려 음성적인 낙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생명에 대한 다양한 신념과 맥락을 낙태 처벌을 위한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정당하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위기론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데 묶음으로써 고령화 대응이 정책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구성의 문제라는 점, 따라서 고령화보다는 저출산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결국 여성이 출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문제를 정책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생명의 문제라고 했을 때 탈정치화가 가능하고 정부가 문제해결과 캠페인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소외되어 있는 비혼여성, 성소수자가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차별철폐를 주장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미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동원할 만큼만 차별을 철폐하거나 새로운 차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세 번째 포럼에서는 주거권을 둘러싸고 가족정책과 계급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주거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급과 분배를 결정하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계층상승 욕망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였으며 실질적으로 계급을 재생산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구성권의 문제와 계급의 문제가 주거의 분배에 있어 함께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여기고 이에 대해 토론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다양한 차별의 이유로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논의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경험을 드러내고, 특히나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주거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경험들을 이제부터 주목하기 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누었다.

네 번째 포럼은 다문화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서 갑자기 다문화 정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겪었다. 소위 국제결혼은 종교적 이유로 이루어지다가 2000대 초반부터 급증하게 되었는데 최근 이혼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 정책은 특정한 부류의 국민(남성)에게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고 전사회적인 낭만적 환상이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사실상 동화정책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일 정도로 철학이 빈곤하고 제3세계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정상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 여성주의에서 주목할 것은 한국의 여성운동이 이룬 성과가 이주여성에게 연결되지 않고, 한국여성이 투쟁으로 쟁취한 빈 공간을 이주여성이 채우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다문화 정책 이면에 깔려 있는 혼인의 정상성, 하층계급 남성의 정상화 욕망, 인종에 대한 환상과 차별문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제기해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확인되었다.

2) 가족상황과 차별

다섯 번째 포럼은 주거제도와 가족상황차별을 살펴보았다. 3차 포럼을 통해서 주거권과 가족, 계급문제를 살펴보았으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정책대안이나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포럼을 통해서 현재 청년1인가구를 배제하고 있는 정책논리를 비판하고 청년빈곤문제와 주거권을 좀 더 강조하였으며 주거권내 비혼자 차별, 성소수자 주거권 배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청년(청소년)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지역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는 주거의 분배와 경험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시선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주거의 문제를 마을과 도시 정책 차원에서도 고민해보았으면 한다는 점 등을 토론했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포럼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가족상황차별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정식화하고 차별금지법 등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내기 위해 안을 마련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차별시정 업무를 통해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진정, 조사, 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유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가족상황차별을 말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차별받지 않는 가족을 정상화된 모델로 할 위험이 있어서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따라 가족경험을 차별로 말할 것인지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기도 있었다. 또한 가족상황차별은 다른 차별과 보통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족을 차별로 말하는 것이 낯설고 어려운 문화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차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족구성권, 가족다양성 등의 시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해결방법에도 연결시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타리@가족구성권연구모임)

활동보고 4

파트너십법안 연구

I. 들어가며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그동안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특정한 가족제도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가족'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관계들의 대안적 실천과 변화를 고민해왔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십과 관련한 해외의 여러 입법 방식을 비교 연구하면서, 과연 한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입법이 더 적절할지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두해왔다. 가족제도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그 나라의 기존 가족법에 터 잡아 만들어지고 변화할 수밖에 없기에, 해외 법률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도, 안으로는 한국의 가족제도 안팎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혈연과 법률혼으로 규정된 가족제도와 가족주의에 균열을 내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에 관하여 지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에서는 크게 두 줄기의 입법 모델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입법 모델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¹⁾ 하나는 현재 혼인 및 가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의 개정이며, 다른 하나는 혼인에 준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인데, 이 두 가지 입법 모델 중에서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자의 방식은 다양한 관계의 욕구에 반하는 것이며 기존 법률혼의 경직성 및 불합리성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고, 후자의 방식은 법률혼과 이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여전히 '정상'이며 그 외의 파트너십 관계는 열등하고 제한적인 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각각의 비판에 직면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비판의 지점들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판의 지점들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두 가지 입법 모델이 가족에 대한 대안적 실천과 변화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민법이 정한 혼인과 가족의 틀 안에 혈연 외의 관계나 동성 커플 등의 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법률혼의 틀을 무너뜨려 혼인과 가족에 대해 더욱 유연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혼인에 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역시 이 특별법을 열등하고 제한적인 관계로 분류한다

기보다는, 오히려 법률혼 외의 관계들을 담아내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가장 상위에 존재한다고 믿는 ‘정상’의 혼인과 가족의 개념을 형제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입법 모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나아가, 두 사람이(혹은 그 이상의 수의 사람이) 만나서 삶을 꾸리고자 할 때 나타나는 삶의 무수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관계의 시작과 과정, 해소의 모습들을 어떠한 대안적인 법의 언어로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온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지난 몇 개월의 고민을 담았다. 우리의 삶에 무수한 장면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법의 언어로 담고자하는 노력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비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관계를 상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두의 지혜를 구한다.

아래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효과, 해소에 나누어 각각의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하겠다. 이 글에서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둔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역시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II.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1. 성립요건으로서 동성(同性) 혹은 이성(異性)이어야 하는지 여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으로서 이를 동성 사이의 결합만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현재 법률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 커플에 대하여도 법률혼 외의 다른 파트너십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생활동반자관계를 동성 및 이성 사이의 결합에서 모두 성립하게 것은 법률혼 외의 다른 관계를 선택하고자 하는 동성 커플 및 이성 커플의 욕구와 맞닿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 이성 간의 혼인의 지위와 동일하게 인정받고 싶은 동성 커플의 욕구와 충돌하는 지점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동성 사이의 결합을 이성 사이의 법률혼과 동일한 지위에

두는 민법의 개정 등의 입법 역시 필요하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하면서(동성 사이이든 이성 사이이든 현재의 법률혼의 경직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전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활동반자관계에는 동성 및 이성 사이의 결합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즉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으려는 당사자들의 성별을 불문하고 생활동반자관계는 성립 가능하다.

2. 성립요건으로서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지 여부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들이 성애적 관계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면, 2인 사이에서만 아니라 3인 이상의 다수 당사자들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도 가능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3인 이상의 다수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도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입법 기술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3인 이상의 다수 당사자 사이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해외 입법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3인 이상의 다수 당사자가 꾸리는 생활공동체에서 기대하는 법률효과와 2인 사이에서의 생활공동체에서 기대하는 법률 효과는 관계의 안정성과 친밀성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인 사이의 생활공동체와 3인 이상의 다수 당사자의 생활공동체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적 효과와 관리 의무의 내용을 한 가지 법률로 모두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일단 부득이 생활동반자관계는 2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3인 이상의 다수 당사자들의 생활공동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보는 것으로 한다.

3. 성립의 무효 및 취소 사유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이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가 있다(민법 제815조). 또한 혼인의 취소 사유로는 ㉠혼인 적령 미달, ㉡미성년자가 부모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 ㉢혼인의 금혼범위(제809조)에서 무효혼이 되는 대상을 제외한 근친혼, ㉣중혼, ㉤약정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사가강박에 의한 혼인이 있다(제816조).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민법에서 정한 법률혼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의 부호 및 취소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민법에서 정한 혼인의 근친혼 등의 금혼범위(제809조)가 지나치게 넓은 지적과 이러한 혼인의 금혼범위를 생활동반자관계에 그대로 준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일단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의 금혼범위에 준하도록 규정하되, 향후 민법에서의 금혼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중혼에 관한 것이다. 민법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0조)고 규정하여 일부일처제의 이상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생활동반자관계에 준용하면,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을 하거나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민법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민법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그 혼인에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이 혼인과 생활동반자관계가 모두 성립하였을 때, 어떤 것을 취소하느냐의 문제는 혼인과 생활동반자관계가 위계의 문제로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후혼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순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미성년자의 생활동반자관계 성립의 여부이다.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에 이르면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을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아 행위능력이 인정된다(제826조의2). 이러한 미성년자의 혼인 성립 요건과 효과를 생활동반자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생각건대 생활동반자관계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를 전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생활동반자관계 성립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의사표시와 절차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등록법’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성립한다(제812조 제1항). 등록법상에 정하여진 신고방식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합치시킴으로써 혼인이 성립하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에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이 표시된다. 또한 혼인

관계증명서에도 배우자의 성명 등과 혼인신고일이 표시된다.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혼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등록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생활동반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생활동반자’ 란이 따로 마련되어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생활동반자관계의 효과

1. 생활동반자관계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여부

민법상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된다(제777조 제3호). 그리고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긴다(제777조 제2호).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생활동반자관계에도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인 신분에서 생기는 효과 이외에 친족으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의무는 없으므로, 생활동반자 상대방을 굳이 친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동반자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는 생활동반자의 자녀 및 상속 등 여러 문제와 얽혀있어 검토를 요한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친족관계의 발생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에서 쓴 법률혼의 규정은 개인적 삶의 선택 측면에서의 파트너십이 아닌, ‘집안과 집안’ 사이의 일로써 파트너십을 규정하여,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혼인을 이미지화한다. 법률혼의 경직성 혹은 불합리성으로 주요하게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생활동반자관계에서 친족관계의 발생을 부정하여 생기는 상속과 같은 법의 공백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생활동반자관계의 성(姓)

민법은 부부의 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부는 혼인 전의 성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고, 이는 생활동반자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제되는 것은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에 관한 것이다. 민법은 자(子)는 부(夫)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781조)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당사자가 합의하여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이에 관한 협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에 이러한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민법은 원칙으로서 부성주의를 따르고 있고,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제한적인 방법으로 인정할 뿐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서 자녀의 성은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의의 시점을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시가 아니라,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하도록 하였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성과 본'이 갖는 경직성과 불합리함에 균열을 내고자 함이다.

(3)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의 규정 여부

민법은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제826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서도 생활동반자 상호 간에 이러한 의무를 모두 규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는 부부공동체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며,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생활동반자 상호간의 최소한의 의무로써 동거의무를 제외한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기로 하였다. 동거의무는 그 성질상 동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생활동반자 일방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음을 감안해볼 때, 동거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양 및 협조의 의무의 경우, 생활동반자관계에서 생활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로써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양의무의 경우 생활동반자 상호간의 신체적·정신적 부양 및 경제적 부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4) 정조의무의 규정 여부

민법은 부정(不貞)한 행위를 이혼원인으로 규정함으로써(제840조 제1호),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서 살펴보겠지만,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재판상 해소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생활동반자관계의 재판상 해소 원인으로서는 정조의무가 논의될 여지는 없다. 다만, 부양 및 협조 의무의 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조의무 역시 생활동반자관계의 의무로서 규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생활동반자관계에는 정조의무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동거의무와 마찬가지로 정조의무 역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생활동반자 일방의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음을 감안해볼 때, 정조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규정 여부

민법은 부부 사이의 계약은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28조)고 규정하여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실혼의 경우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부부 사이의 계약은 애정 또는 압력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 취소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 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입법 취지인 '가정의 평화'를 오히려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입법론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준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생활동반자관계의 재산적 효과

(1)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의 준용 여부

민법에서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체결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혼인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제829조 제2항). 또한 부부재산계약을 가지고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까지登記하여야 효력이 있다. 부부재산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登記하지 않으면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29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모든 부부가 재산관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부재산제도(법정부부재산제)를 적용하게 된다.

생활동반자관계의 경우 민법상의 부부재산제를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과는 다른 재산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제를 규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생활동반자관계는 법률혼보다 개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시에 부부재산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생활동반자관계의 경우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산계약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동반자 각각의 재산의 유지, 형성, 분할하는 데에 있어서 생활동반자들에게 자유로운 계약의 측면에서 재산계약의 필수적인 체결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재산계약을 생활동반자관계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였을 때, 법정부부재산제의 적용 여지는 없다.

(2)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의 방식과 내용

그렇다면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은 어떠한 방식과 내용이어야 할 것인가. 먼저 생활동반자재산계약 역시 민법상 부부재산계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의 체결과 변경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자 하는 두 사람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민법상 부부재산계약과는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하고자 하는 두 사람은 반드시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은 두 사람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 성립 신고시까지 이를登記하여야 한다.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의 변경 시에도 이를登記하여야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의 변경도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처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재산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자유롭

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는 자유롭게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혼인이 종료 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이나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는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처럼 생활동반자를 맺으려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계약의 내용에 필요한 내용들을 열거하여 이에 관해서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동반자관계 해소시에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는 식의 내용이나, 생활동반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생활동반자재산계약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은 부부재산계약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이후의 재산관계에 대한 계약까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여 할 것이다.

생활동반자관계를 성립하고자 하는 두 사람은 반드시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때 법정부부재산제의 적용여지가 없다고 할 때 발생하는 법적 공백 역시 예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생활동반자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 생활동반자들의 재산관계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할 것인지 역시 논의해보아야 한다.

(3) 기타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은 유족의 범위에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시키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적 보호에 있어서도 생활동반자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법에서 보호하는 배우자의 지위와 생활동반자의 지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을 담은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V.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1. 사망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생활동반자관계는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다. 이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신분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부양 및 협조의 의무는 소멸하고, 타인과의 혼인 및 생활동반자관계 성립이 가능하다. 생존 생활동반자는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생활동반자재산계약에 의하여 규율을 받을 것이다.

2. 협의해소 및 일방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소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대하여 생활동반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되(협의해소),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법상 재판상 이혼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재밌는 토론이 오갔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힘든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한다. 재판상 이혼제도는 유책주의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유책사유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는 당사자의 유책행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파탄에 이를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라는 것도 어느 일방에게만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대하여 일방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생활동반관계의 해소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것에서 생각을 빌려온 것이기도 하다. 즉,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원할 때는 재판상 이혼이 그러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을 묻고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든지 일방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든지 생활동반자관계가 주관적인 파탄에 이르면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협의해소 및 일방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소 모두 그 방식과 효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V. 나오며

지금까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효과, 해소에 대한 몇몇 쟁점들을 적었다. 서두에 밝혔듯 이 글은 파트너십관련 법률에 대해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그동안의 다듬어지지 않은 고민을 담은 글이기에, 각각의 내용들이 아직 연결되지 못한 채로 거칠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생활동반자관계와 자녀에 관한 부분은 이 글에 적지 못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 안에 자녀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생활동반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법률 안에 담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려는 가족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분은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부터, 생활동반자관계도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법률혼과 법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공백을 최대한 메워야 한다는 의견까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안에서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법률혼이 아닌 생활동반자관계의 이성 간 결합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지위라든지, 생활동반자관계의 동성 간 결합에서의 자녀의 지위는 하나의 법의 언어로 담기에는 매우 다양한 현실의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혼인 관계에서 이미 출생된 자녀 혹은 입양된 자녀에 대한 법적 부모 아닌 생활동반자가 입양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방법, 생활동반자관계 성립 후 생물학적 연관 없는 자에 대한 공동 입양이나 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이 자녀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등, 세세한 고민의 결들을 찾고 이를 법적인 언어로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세세한 고민의 결을 상상하고 다듬는 것에서 법률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제도와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가족’을 둘러싼 보다 다양한 관계들의 대안적 실천과 변화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 해외 입법이나 한국 민법과의 비교법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수한 장면들 안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그런데 입법은 언제쯤 가능할까?! (선의 @가족구성권연구모임)

2부

활동 자료 수록

A. 가족정책 포럼 발표문/칼럼

2차 가족정책포럼

낙태와 출산장려정책을 둘러싼 쟁점 (2010.2.18)

[발표문]

생명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생명권

생명권과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지켜져야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상상하기란 쉽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리고 그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며 규제하고 있는 법에서 모든 생명체의 생명권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뇌사상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이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독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다. 인공적인 힘을 빌어 호흡은 하고 있지만 뇌사한 인간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사회는 일단 없는 것으로 합의를 본 듯하다. 얼마 전에 있었던 존엄사 인정 판결 또한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에 관한 헌법 소원 각하 결정에 이르기까지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요즘 많은 불임부부가 시술받고 있는 인공수정은 다태아 임신인 경우 다태아 축소술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불법낙태인가 아닌가? 이처럼 생명권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영역처럼 보이지만 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사 사정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생명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대한 솔한 과학적·사회적 입장과 이론, 이들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법인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토론에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맞다. 그래야만 '생명'이라는 절대권력의 단어 앞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번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물러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1)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185~186면.

수정란, 배아, 태아. 이들의 생명권. 이것은 낙태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의 권리와 늘 대치되는 것이다. 생명권의 온전함과 위대함 앞에서 낙태권은 정말 보잘 것 없고, 입을 떼서 권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소수의 이기적인 여자들의 떼쓰는 소리 정도의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모체 안에서 태아의 생명이 유지되어 출산되기까지는 태아는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는 존재로서, 온전한 인간의 생명권과 그 법적 지위를 동등하게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낙태죄를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며, 태아 생명 수호의 의무를 개인의 인격권을 초과하는 정도로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태아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임부의 모든 행동은 규제되고 선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태아에게 생명권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반드시 분리하여 사고하여야 한다.

낙태를 예방하려면?

낙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정란이 착상되는 순간을 절대화하는 데에만 힘쓰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하지 않는 낙태를 예방해야 하고 둘째, 원하지 않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원하지 않는 낙태 예방_출산권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일은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낙태권뿐만 아니라 출산권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단 임신한 심대의 출산권은 깊이 논의되어 본 적도 없다. 오늘 어떤 심대 임부가 낙태를 선택했다면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양육은 차치하고라도 임신과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들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가능할까? 지금 낙태가 아닌 출산을 결정한 심대들은 대부분 학교 다니기를 포기한 경우라는 점, 우리가 모른다고는 못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왜 낙태를 할까? '나 싱글맘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소수의 여성 뒤에 가족과 직장사람들에서부터 당장 시작될 편견에 찬 시선,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낙태를 선택한 이들에게 우리는 '불법'이라는 칼을 들이대며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비혼모나 심대출산에 대한 편견은 하루이틀 사이에 없어지지 않는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에 소용될 시간과 노력, 인력과 예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

어야 한다. 사회적 편견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편견에 맞서는 일은 개개인이 견뎌내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도 미비나 돈 때문에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심대출산은 무엇보다도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임신 출산한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대에게는 경제력이 없으니 경제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혼모가 가족이나 주변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고민조차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확한 비혼모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양육 비혼모 및 입양 비혼모의 수, 비혼모 지원정책이 자리를 잡을 때 예방할 수 있는 낙태의 건수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구체적인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미혼모자시설은 미등록된 시설까지 모두 30개소인데 그 중 17개소가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경우만 입소하게 하여 지원하는 시설들이 다수”라고 한다. 저소득층의 한부모나 미혼부모가 6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한해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비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양가족에게는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기혼여성의 낙태를 이야기하기는 좀 더 복잡하다. 사회적 편견도 없고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감히 낙태라니!라고 호통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해야 좋을까? 설문조사에서 태울조절, 자녀불원, 경제적 이유 등으로 표현되는 간단한 이유 이면에는 자녀들의 삶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결정이 있다. 안전한 육아처를 차지 못해 받을 동등 구르고, 자녀들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점점 높아만 가고 그렇게 돈을 들여도 우리사회의 교육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해외에 나가는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아이 출산하면 몇 십만원의 축하금이나 공공기관이나 해당하는 정년 연장으로 이런 낙태 이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가에서 저출산을 염려하며 대책을 내놓은지 몇 해가 지났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애를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의 소리는 이미 높다.

아이를 키우는 보육기관은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다.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서 아이를 낳든 그 아이의 보육처가 필요하여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대기차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려야 한다면, 안전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시설이라거나,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너무 멀어 접근권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건 인프라가 아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빠는 바로 오늘, 야근을 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주요한 사람과의 저녁 약속에 참석해야 한다. 이럴 때 누가 아이의 안

전을 책임질 것인가? 7시면 아이를 찾아가야 하는 놀이방, 어린이집? 아이가 학교에 진학하면 사정은 더욱 딱하다. 아이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나서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전전하며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밖에서 보내야 한다. 그 사설학원을 전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연히 부모의 몫이다. 적어도 저녁 9시까지의 아이들의 육아, 교육, 방과후를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어야 엄마, 아빠는 늙은 노부모나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이 고용할 수 있는 도우미의 도움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진정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절대성에 부응하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아이를 지금 출산해서 양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인프라는 바로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서서히 개선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련되어야 한다. 생명의 소중함이 한 치의 타협이 불가하듯, 그 생명을 사람으로 제대로 키워내는 것까지는 차차 개선해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는 한 치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그 최소한의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낙태 운운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뻔뻔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출산보다는 낙태를 부추긴 건 임신한 당사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다. 지금까지 낙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우리가 입담몰고 있다가,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염려되는 사태에 이르러서 불법낙태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무자격자들의 염치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2.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_피임권

어떤 낙태를 불법화하고, 어떤 낙태를 합법화 할 것인지 아직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요즘 언론보도를 보고 있으면 마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확하고 확실한 피임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각자 상황에 맞는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가능한 실패가 적은 피임실천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중요하다. 심대를 무성적인 존재로 전제하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식의 교육으로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없다. 그저 어떤 피임방법이 있는지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연령, 결혼여부, 자녀계획, 건강상태(특징) 등에 따라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 장단점, 비용, 실천방법 등을 상세하게 교육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100% 완전한 것은

없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중 100%인 것은 별로 없으니 이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지 모르겠지만, 이진 소중한 태아의 생명과 소중한 임부의 인격권과 관련되는 일로서, 어쩌다 실 패해도 괜찮은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의술로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피임술 개발에 우리사회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고유한 존재조건인지 더 고민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효과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피임방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피임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 년에 이르는 가임기간 내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슷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활용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임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조건이 마련되어야만 '피임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적의 방법을 선별하고 선택하며 성관계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에만 피임이 올바르게 실천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임방법을 알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파트너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된 성관계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낙태책임, 누구에게 있나?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우리 사회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면 원하지 않는 낙태는 줄어들 것이고, 사회를 믿고 출산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100% 피임방법이 개발되지만 하면 불가피한 낙태도 발생하지 않을테고, 그렇게만 되면 낙태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들인 노력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낙태수술 음성화와 같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결과만을 낳는 낙태 단속은 절대로 해답이 아니다.

삶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 낮아졌던 출산율이 다시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여성권한척도(GEM) 등이 있는데, HDI와 GEM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저출산 국가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108개 국가 중 HDI는 22위, GEM은 65위로 OECD국가들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HDI와 GEM의 격차가 클수록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정도는 높은데 양성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HDI와 GEM이 동시에 높은 나라들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HDI와 GEM의 격차가 큰 우리나라, 일본 등이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비교해보아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삶의 질이 높을수록, 특히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여성의 사

회적 삶의 조건이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 개인이 마치 태아를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 삶에 벌어지는 불편함을 견디기 싫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러는 양 낙태 비난 여론을 조성하지만, 정작 비난의 대상이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태아의 존재감을 몸으로 느끼는 것도 여성이고, 태아를 '사람'으로 키우는 엄청난 사회적 노동을 실천하는 것도 여전히 대부분 여성(엄마가 혼자 키우지 못하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여성 베이비시터 등 여성의 노동력이 저임이거나 무임의 형태로 투입된다. 미혼모 시설 등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대부분 여성이다)이다. 그리고 임신 중절을 결정하는 것도 태어날 아이, 이미 태어나 있는 가족과 주변인, 여성이 감내하는 사회적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끝에 내리는 '책임있는' 결론이다. 이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여성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몰아세우는 사회의 비난은,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곳 하나 찾지 힘들어 늘 폭력과 사고의 위험에 내몰려있는 아이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불안함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자신을 성폭행한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공간 외에는 달리 갈 데가 없어 오늘도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누구의 책임인지, 그 존엄한 생명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 것인지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삶의 권리, 낙태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 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사회경제적'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사유는 바로 앞에서 말한 '책임있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고려된 사유들이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이나 배아가 세포분열하는 과정을 절대화하는데 힘쓰는 것만으로, 태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적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구성원들의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천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온전히 예방할 수 없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상사회 또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고민과 실천에는 합리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논쟁 경과 및 관련 정보

I. 낙태권 논쟁 진행 경과

- 2009. 10. 19 진오비 “ 불법 낙태 근절 대국민 성명서” 발표
- 2009. 11. 01 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 “태아는 현재의 희망, 미래의 주인입니다”
- 2009. 11. 25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제 1차 저출산 대응 전략 회의’
-이명박 대통령, 낙태 문제 언급. 전제희 복지부 장관, 낙태 단속 강화 입장 표명.
- 2009. 11. 26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외 10개 단체)
- 2009. 12. 03 국회 법사위 홍일표 의원 주최 토론회 “낙태, 불편한 진실 이대로 둘 것인가”
- 2009. 12. 25 낙태 근절 운동본부를 프론티어 의사회로 개칭
- 2010. 01. 01 프론티어 의사회, 제보센터 활동 개시
- 2010. 02. 03 프론티어 의사회, 낙태 시술 병원 3곳 고발
- 2010. 02. 03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의견서 발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여성위원회 외 9개 단체)
- 2010. 02. 16 프론티어의사회,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 발표
- 2010. 02. 19 사회협의회 간담회 (보건복지가족부) 개최 예정

II. 관련 정보

1. 관련 현행법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7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2. 낙태관련 통계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2005), 보건복지부 참고)

-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 연간 342,433건 추정 *하루 1천건, 낙태시술율 29.8
- 결혼상태: 미혼 42.0%, 기혼 58.0% *10대 낙태 3%
- 시술이유: 미혼 96.0% - 사회경제적 이유(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기혼 76.7% - 가족계획(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 성별 아남)
- 합법시술: 4.4%
- 시술 당시 반복 낙태(이전 낙태횟수 1회 이상): 기혼 57.5%, 미혼 49.5%
- 시술 당시 현존 자녀수 0명: 전체 45.4%, 기혼 10.8%

3. 각 국가별 임신중절허용기한 및 상담절차

국가명	허용기한	낙태율	상담 절차
독일	-착상 이후 12주 까지: 요청에 의해 -12주 까지: 강간 또는 다른 성범죄에 의한 임신 -제한없음: 의학적인 이유	7.6	-의무적인상담(요청에의한 임신중절) -상담이후 의도적인 대기기간(3일:요청에 의한 임신중절) -임신중절을 실행하는 의사 이외의 2차적인 의학 적 동의(의학적이유, 강간 및 성범죄의 이취) -의학적인 사유와 강간 및 성범죄인 경우에는 상담이 의무적이지 않음
영국	-24주까지: 사회적, 사회의학적, 사회경제적 사유 -제한없음: 심각한 장애가 우려될 때, 여성의 생명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이 우려될 때	17.8	-2명의 의사의 동의를 요구 -미성년자(16세 미만 또는 보호 중에 있는)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 사회봉사자의 동의가 요구 되나,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
프랑스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산모의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 기형의 위협이 있는 경우		-의무적인 대기기간(최소 8일) -20주의 임신중절일 경우 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2명의 의사와 한명의 정신과 의사 또는 사회사업가의 검토가 요구
스위스	-법적인 제한 없음(대부분 12-14주 사이):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14주까지: 태아의 기형,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만 허용		-특별한 허가를 받은 의사의 인증 요구
핀란드	-12주까지: 사회적, 사회의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 산모의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강간 등의 성범죄에 의한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24주까지: 산모의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 기형의 위협이 있는 경우		-2명의 의사 권유 -임신 20주까지 임신중절에는 국립의학위원회의 인증 요구 -임신중절은 병원에서만 시행 -의무적인 피임상담
헝가리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2주기(4-6개월): '중대한 위기상황'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		-미성년자(18세미만)은 부모동의필요 -2번의 상담 출석 -의무적인 대기 기간: 첫 번째 상담이후 3일, 임

	된 경우, 강간 등 성범죄에 의한 임신		신중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8일을 넘기지 않음/ 두번째 상담은 임신중절 직전에 이루어짐
이탈리아	-90일까지: 사회적, 사회 의학적, 사회경제적 사유 -90일이후: 산모의 생명에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기형이 우려되는 경우, 강간 등의 성 범죄		-의사로부터 증명서 필요 -의무적인 대기기간 최소1주 -미성년자(18세미만)는 부모 또는 판사의 동의 필요 -상담: 의무적이지 않음
오스트리아	-완전착상 후 3개월까지: 요청에 의해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생명에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되는 경우, 산모가 미성년자(14세 미만)인 경우		-의사와의 상담 -임신중절은 의사에 의해서만 행해짐
노르웨이	-12주까지: 요청에 의해 -임신 2주기(4-6개월): 산모의 생명에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의 기형 위험, 강간 등의 성범죄, 사회적인 이유, 산모가 미성년자(16세미만)인 경우 -18주 이후: 극도로 심각한 상황인 경우		-임신 2주기(4-6개월)임신중절 시는 여성들의 신청이 2명의 의사가 있는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함. 만약 위원회에서 승인이 거절되면 그 여성은 다른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미성년자(16세 미만)는 부모 또는 판사의 동의 요구 -상담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대한 informed consent 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 해야함. -여성은 피임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음
네덜란드	-13주까지: 요청에 의해 -24주까지: 산모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산모와 의사 모두를 통해 입증될 경우 13주 이후에도 임신중절 허용	6.5	-미성년자(16세미만)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의무적인 대기기간 5일 -의사는 여성의 결정이 자발적인지 판단할 의무가 있음 -임신중절은 면허가 있는 병원이나 의원의 의사들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함.
스웨덴	-18주까지: 요청에 의해		-2주기(4-6개월)임신중절은 국립보건복지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함. -임신중절은 일반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만함.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제제조항이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8 참고)

[발표문]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백영경 (KAIST강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발행, 월간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1. 문제제기

2006년 6월 20일자 영국 Guardian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셰필드 대학교 생식의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계산해본 결과, National Health Service가 인공생식술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한 해 1 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게 될 것이며, 이들 어린이들이 평균 78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일생에 걸쳐 영국 경제에 147,138 파운드를 기여하리라는 것이다. 인공생식술에 의하지 않고 출생한 어린이가 160,093 파운드 기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적은 액수이나, 한 명의 아이를 출생시키는데 인공생식술에 들어가는 평균 경비 12,931파운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며,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불임 치료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국가적 이득을 산출하는 근거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서 문제는 연금 자원의 고갈이라는 정치적 문제의 원인을 불임으로 인한 출생아 수의 부족이라는 생물학적 문제로 치환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연금 문제는 불임 치료라는 의학적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서 간주되어, 결국 조세를 통해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설정과 해결 방식은 저출산 위기론 속의 남한에서도 결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성의 변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또한 현재 남한의 경우와 같이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정부 역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서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향후 5년간 32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구 변화에 따른 부담은 환경이나 건강 등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 계층 선을 따라 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며, 기왕의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부

담을 지우게 된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인구 위기는 거국적이고 초당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공동체”의 위기이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응이 갈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는 간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인구 문제의 해결을 더 많은 출산으로 국한해서 보게 되면서, 저출산의 해결은 개별 여성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개별 가정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 아니면 더 손쉽게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한편 저출산 위기론은 기왕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회 문제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 문제로서 논의되어 왔으며, 사실상 출산을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위기론 속에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 문제는 이제 저출산 현상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매프컴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한국 사회 전반의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농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2005년 현재 전체 인구의 43.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50.1%를 넘어갈 것이라고 한다.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혹은 계층간의 건강 격차 문제보다, 출산율 하락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근거는 과연 무엇이며, 그 선택적 판단은 누가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문제를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또 정치적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사안으로서 접근하는 일이다.

2. 통치 기술로서의 인구

인구 위기론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구 문제가 정당이나 파벌,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2.1이 되어야 하며, 1+1=1.08에 불과한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누가 쉽게 이의를 달겠는가. 그러나 인구 통계를 내고 문제를 찾아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근대국가라면 당연히 하는 일상적 행위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구 문제는 사실 진단부터 처방과 개입까지,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안이다. 인구수를 집계하는 문제가 뭐 그리 정치적인 수 있랴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인구를 셈할 때조차 시민권의 소유자/비소유자, 합법/비합법 체류자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가르게 된다.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흡연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상/비정상을 가르게 되며, 출산율, 이혼율, 혼인율, 사망률, 수명, 인구 이동률 등등은 끝없이 정상/비정상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나 사고 보상을 할 때 확실히 알려주듯이 개인의 가치는 삶의 방식, 연령, 병력, 직업 등등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정부도 인정하지만, 출산율의 잦대로 보면 거의 모든 사회의 변화가 다 문제요 위기의 근원이 된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이 문제, 가족의 해체도 출산율에 악영향을 주니 문제다.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고령출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임을 늘리고 출산 자녀를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또 임신과 출산 과정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험제정에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문제 행동을 끝없이 분류하는 것이 인구 논의다.

국가가 "적정 인구"의 재생산하기 위해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인구"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당면한 인구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가 통치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며, 개입할 수 있는 방식과 부문도 달라지는 것이다. 서유럽에서 인구가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연적인 실체로서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가 된 것은 18세기 경의 일이며, 통계학의 발달에 따라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는 인구 집단과 동일시되어 하나의 큰 몸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뒤르켐이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집합체에서는 개별적인 사건들과는 다른 질서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집단적인 사회적 몸은 그 집단 현상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통하여 하나의 전체로서 연구될 수 있다는 "통계학적 사고"가 등장한 것이 이 시기인 것이다. 그 결과 인구 집단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이며 이 전체 집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리를 잡았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역이나 강제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든지, 상시적인 질병 감시 체계를 갖추고 개인들의 일상적인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것이다. 통계를 위한 정보의 수집이 일회적인 것에서 국가의 항상적인 업무가 되는 전환은 인구 개념이 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푸코가 주장하듯이 인간들은 이제 "공통선"을 위해 관리, 통제 가능한 독립적 실체, 즉 "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을 관리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게 된 것이다.

3. 인구와 재생산의 정치학

UN 발표에 따르면 1995-2000년 기간 동안 인구가 대체율을 밑돌고 있는 국가는 61개국이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44%에 해당하며, 이 중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율 저하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해묵은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이래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되면서 1세기 이상 출산장려 정책을 펼친 결과 유럽에서 가장 높은 1.93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면서, 한국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서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 등,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에는 물론 본받을 점이 많다.

그런데, 프랑스의 출산장려책의 정치학을 좀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왜 저출산 위기에 대해 단지 더 나은 출산장려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설 수 없는지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프랑스와 같은 대표적인 친출산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파리 근교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사회가 이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좁지 않다. 프랑스 국가의 관심은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면서도, 이주에 의한 증가나 이주민들로부터 태어나는 자녀수를 억제하는데 있다 (2004년 프랑스 인구는 38만 7천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이주에 의한 증가가 10만 8천 명 정도로 집계). 다시 말해,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백인 중산층들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작년 9월 프랑스 정부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경우 매월 최대 1000유로까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 시책이 중산층 전문직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진정한 프랑스 인이란 백인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출산장려책의 와중에서도 특히 출산율이 높다고 지목되는 서아프리카 계 출신의 이민을 제한하고, 이미 이주한 사람들의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다. 파리 근교 사태에 대한 국내외의 보도에서도 접할 수 있었듯이, 이주자들의 주거 부족 문제, 청소년 문제, 실업 문제, 가정 폭력 문제는 모두 아랍계와 아프리카계들의 높은 출산율 때문으로 돌려지곤 한다. 결국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누구의 출산은 환영받지 못하는가라는 "재생산의 정치학"(the politics of reproduction)의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단지 낮은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바람직하지 못한 인구는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낮은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자체가 감소한다거나 그로 인해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계 이민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진짜 유럽인 들이 감소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민 정책을 통해 안정된 인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라티노나 흑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백인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며, 여전히 인구 감소보다는 인구 폭발이 국가의 의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인도에서조차 무슬림 보다 낮은 힌두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 심각하게 논의된다.

저출산 담론의 민족 혹은 국가중심성이나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족이나 국가 혹은 지방자치체와 같은 특정한 단위를 떠나서 출산율 숫자 그 자체로 만든 우리에게 아무런 불안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저출산에 대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문제 설정 그 자체가 이미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단지 출산율의 하락에 대한 우려만은 아니다. 이는 이주자들의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며, 결혼과 노동을 목적으로 한 "한국만 못한 나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한편,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한국인"들은 원정출산, 조기유학, 중산층 이민 등으로 유출되는데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다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농촌에서 아기울음 소리가 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촌의 문제는 단지 출산율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의 다산 경향을 끝없이 경계한다. 한국의 경우도, "국제결혼"을 저출산의 대안으로 타진하면서도 혼인 이주를 통해 한국에 온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들의 다산 경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생김새가 한국인과 다르지 않아 자녀를 낳아도 혼혈임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몽골 여성을 선전하고, 상대적으로 외모가 두드러지는 필리핀 여성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시부모로부터 인종적 편견과 혼혈아동에 대한 거부감에 따른 낙태를 요구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노컷뉴스 2006. 5.9) 낮은 출산율이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모두의 출산이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국제결혼의 증가는 '한국가족'이 더 이상 한국 내에서 재생산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단지 '한국가족의 재생산 문제, '한국가족'의 낮은 출산율의 문제로 읽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인구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가족'의 경계를 둘러싼 경합의 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베트남 여성은 유교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사를 잘 지내고 자녀교육을 잘 시키며, 피부색이 비슷하여 2세를 낳아도 표시가 잘 나지 않고, 출산 후에도 체형이 변화하지 않는다. 몽골 여성은 같은 우랄알타이어 족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어 습득이 쉽고, 자녀 교육에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 내부의 위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낯은 위계 역시 재생산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서구화되어 2세의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다리가 짧은 아시아인에 비해 러시아 여성들은 다리가 길며 체형에 균형미가 있다. 필리핀 여성들 역시 국제화 시대에 2세들에게 서구화된 생활방식과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선전된다.

1990년에서 2005년 사이 여성결혼이민자는 159,942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06년 4.26일 열린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순혈주의를 대신하여 다문화관점을 확산시키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가 매우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글이 오히려 신화에 불과한 단일민족을 사라져갈 뿐 실재했던 실체로 간주하거나, 인종주의를 설파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가족이 존재하고, 다문화가족이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한 종류로서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들을 한국가족 내부로 흡수통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 다양함은 평등한 공존이 아닌 위계의 또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단지 출산율의 문제나 결혼할 여성 수의 부족이 아니며, 인구의 흐름도 단지 한국 내로의 유입의 필요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못지않게 조기유학, 원정출산, 해외취업,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 비혼만혼 경향의 증대, 돌봄 노동의 공백 등 역시 글로벌 시대, 한국에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태의 복잡성은 당연한 문과제가 단지 이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만이 아니며, "한국인"은 누구이며 "한국의 문화"는 무엇인가, 또 "한국가족"이란 무엇인가가 함께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모 시민단체에서는 얼마 전 단체의 첫 사업으로 시민의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초기 임신부를 위한 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기 임신 기간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걸로 표가 나지 않아 초기 임신부들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지 못한다면서, 초기 임신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공모를 통해 임신부 배지 디자인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산부인과학회 측에서는 작년 제정된 임신부의 날과 연계하고자 하는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단체의 기본 입장을 캠페인이 정부의 출산장려책과 연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지 않으면서 현존하는 임신부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모성친화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나 가자고 제안한다.

필자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건강권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우리 사회가 임신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라는 판단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길쭉으나,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신부의 보호라고 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 같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 했듯이 모든 사람의 출산이 환영받는 것이 아닌 재생산의 정치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초기 임신부 뱃지를 당당히 달고 다니며 사회적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김새가 “정상적인 한국인”과 눈에 띄게 다른 이주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10대 여성이 뱃지를 달고, 지하철에서 초기 임신부에게 자리를 내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행색만 몹시 남루해도 학력이 낮아보여도, 임신부 뱃지는 그들에게 보호와 배려의 상징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애를 낳아 기를만한 사람인지에 관한 사회적 사찰과 감시, 개입의 상징이 되고 말 것이다 (보호의 취지로 시작해서 “의무”로만 존재하는 “초보운전” 표시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왜 어떤 사람들의 출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맥락을 떠난 임신부에 대해 보호와 배려를 이야기 하는 것은 단지 현실성이 없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기제로 전회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주최 측에서 주관적으로 저출산과 연동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저출산 위기론이라는 커다란 자기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임신부에 대한 순수한 배려조차, 이 사회에서는 저출산 위기론과의 관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배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들 가운데 초기 임신부가 선택된 것이 과연 비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캠페인이 과연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출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임신부에 대한 배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거꾸로, 저출산 위기론이 위세를 떨치는 이 땅의 현실에서는 임신부에 대한 당연한 배려마저도 출산장려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것이 필자가 저출산 위기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이다.

4. 맺음말을 대신하여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문제를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사회 각계각층이 합의를 봐야 할" 가치중립적이고 공동체의 공동운명이 걸린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이해하고 설계하며 또 정치적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사안으로서 접근하는 일이다. 특히나 현재 인구 담론이 강화시키는 불평등이나, 인구 담론이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위기를 논하며 또 어떤 부분에만 집중하는지, 또 그 안에서 누구의 재생산은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 누구의 재생산은 무시되는지, 그리하여 어떤 사람을 정상적인 한국인, 그리고 정상적인 한국 가족으로 생산해내는 등 즉 재생산의 정치학을 읽어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아니라고 보아, 개입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도입이라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서 나아가, 정부 저출산 대책이 가져오는 의료 자원의 재분배 방식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혹시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에 가려서 당장 필요한데도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일도 아닌데 출산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과잉된 의료적 개입을 지원하는 것인 아닌지를 따져 보는 식의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권오름]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나영정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낙태’는 인구조절과 가족계획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국가가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월경조절술, 영구피임술 등을 통해 산아제한을 했고 현재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낙태 이슈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낙태 논쟁은 왜 10대, 미혼모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왜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걸까? 그건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를 떼땃지 못한 성관계, 여성의 성적 타락의 문제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혼외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에서 기인한다.

혼외 상황이 어떠한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결정권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출발해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떠나서 안전하고 평등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은 낙태에 대한 법적 허용의 문제와 생명권에 대한 옹호로 초점이 맞추어지면 서 낙태를 직접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제대로 발언되고 않는다. 더구나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조차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비용 또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종교계와 일부 낙태 근절을 말하는 진영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이 대립하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당사자인 여성보다 언제나 법과 도덕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당사자인 여성의 의사에 반대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어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시작된 변화를 통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연속적인 과정인데, 언제부터 태아가 독립적인 존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충분한 지원 속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만들고 임신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동시에, 충분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장려정책도 처음부터, 다 틀렸다

최근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낙태단속을 언급하였고,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에서도 낙태시술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등 낙태단속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단속과 출산강요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더욱 여성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다.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인구의 위기로 회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양극화, 고용불안, 일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 가족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고 성평등과 아동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문제들은 내버려둔 채 이명박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현물지원, 주택지원, 조세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출산율

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출산 축하금 몇 십만 원으로 출산을 유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할 말을 잃는다.

한편 작년 말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가족형태는 미혼모, 다문화가족이다. 가족의 ‘다양성’ 자체를 저출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왜곡하는 시대에, 오히려 걸림돌로 인식되는 우리의 권리와 다양성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지 참 막막한 상황이다.

가족구성권과 만나기

모두가 저출산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뛰어드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위계가 존재하고 있다.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차별시정에 대한 의지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결혼과 관련이 없는 출산, 레즈비언의 출산, 동성애자의 입양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또한 장애나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하지 않으려면 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처해가야 한다. 인구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용, 복지, 교육, 조세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인구가 국력”, “출산이 애국”이라는 낡은 전략에 속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소위 국가의 힘으로 인식되지 않는 인구집단(빈곤층,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등)이 임신과 출산을 충분히 결정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2010.3.23)

[발표문]

부동산 계급과 한국사회

손낙구 (『부동산 계급 사회』 저자)

1. 한국사회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1967년 영국의 사회학자 존 렉스(John Rex)와 로버트 무어(Robert Moore)는 주택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영국 사회의 빈부 격차를 주택계급(housing class)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통찰한 바 있다. 렉스와 무어의 『인종, 공동체 그리고 갈등』(Race, Community and Conflict)에 등장하는 주택 소유자, 공영주택 임차인, 개인주택 임차인, 하숙집 임차인 등 일곱 개의 주택계급은 우리와 많이 닮았다.

물론 영국의 주택계급 분류 방식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계급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부동산 계급사회적 성격에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자산의 소유는 극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땅의 70%와 주택의 96%가 사유화 돼 있는 가운데 사유화된 땅과 주택의 소유 편중도 극단화돼 있는 것이다. 땅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0%가 땅을 한 뼘도 갖지 못하고, 33%의 가구는 국토 면적의 1%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전체 가구의 5.5%가 국토 면적의 74%를 소유하고 있다. 집의 경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무주택자인 가운데, 전체 주택의 59%를 17%의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빌딩 등 비거주용 건물의 소유 내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땅과 집의 경우를 미뤄보면 소유 편중이 더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자산의 소유 격차가 클 뿐 아니라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냐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어느 브랜드의 몇 평에 사는 지, 주택 말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 지 등 몇 가지 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

의 생활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어떻게 투표하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은 주거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부모의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은 뚜렷이 높다. 은행 문턱의 높이도 부동산이 울리고 내린다.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의 평균수명의 통계적 차이도 뚜렷하다.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직업과 노동 소득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이 불평등의 잣대가 되는 한국사회는 부동산 계급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부동산은 집과 땅, 그리고 빌딩과 같은 비거주용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냐를 파악하려면 전체 부동산 자산의 소유 정도를 살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에 비거주용 건물은 아예 빠져 있을 뿐 아니라 땅과 집도 개인 별로 합산되지 않고 따로 발표되고 있어 여의치 않다. 또 땅을 기준으로 소유 정도를 따질 경우 땅을 아예 소유하지 않고 있는 40% 가구 내부의 격차를 세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부동산 계급의 구분은 주택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가와 그 가격이 얼마인가를 통합한 자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각각의 자료를 적절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략의 계급 구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산을 기준으로 부동산 계급의 형성 과정, 부동산 계급의 구분과 계급별 특징, 부동산 계급과 한국사회의 순서로 한국사회의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동산 계급의 형성 과정

부동산 계급의 형성 과정은 역대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의 분배가 제대로 되었는지,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부동산 소유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 자리 잡은 부동산 격차가 얼마나 대물림되어 고착화 되는 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

주택공급과 주택소유 격차의 확대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발정책으로 경기부양 수단이 돼왔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주택정책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공급확대 정책이었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 주택건설실적(사업계획 승인 기준)에 따르면 한 해 평균 공급주택수가 1951~1960년 7만 채, 1970년대 19만 채, 1980년대 30만 채, 1990년대 55만 채, 2001~2007년 53만 채를 기록했

고, 1951~2007년의 57년 동안 공급한 주택총량은 1,561만 채에 달한다.

그렇다면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은 어떻게 분배되었을까.

주택소유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된 적이 드물지만 국토개발연구원(1992), 국토연구원(1998) 자료와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1990년 당시 주택수(재고주택 기준)는 702만 채로 이 가운데 599만 채를 1가구 1주택자가, 103만 채를 43만 가구의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5년 뒤인 1995년이 되면 주택수는 943만 채로 늘었는데, 이 중 703만 채를 1가구 주택자가, 241만 채를 86만 가구의 다주택자가 소유하였다.

1990~1995년 사이 증가한 1주택자수를 무주택자가 내집을 장만해 1주택자가 된 것으로 전체 한다면, 5년 만에 늘어난 주택 242만 채 가운데 104만 채(43.0%)는 무주택자가 사들여 1가구 1주택자가 됐으나 138만 채(57.0%)는 이미 집을 한 채 또는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가 사들인 셈이다. 그 결과 1990부터 5년간 다주택자수는 43만 가구에서 두 배인 86만 가구로 늘었으며, 가구당 주택수도 2.4채에서 2.8채로 증가했다. 전체 주택 중 다주택자 소유 주택 비중도 14.6%에서 25.5%로 10.9%가 증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 1990년~2005년 사이 주택소유 관련 지표의 변화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주택수는 621만 채가 늘었다. 이 가운데 40.9%인 254만 채는 무주택자가 사들여 내집을 장만한 반면, 59.1%인 367만 채는 이미 집을 한 채 또는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들였다. 그 결과 15년 사이에 43만 가구에서 105만 가구로 2.4배,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도 103만 채에서 469만 채로 4.6배 각각 증가했다.

또한 1990년 다주택자의 가구당 평균 주택수는 2.4채였으나 2005년엔 4.5채로 크게 증가했으며, 다주택자 소유 주택의 비중도 14.6%에서 35.5%로 증가해 전체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 소유 주택이 되었다.

<표 1> 주택소유의 변화(1990~2005)

(단위 : 호)

	1990년	1995년	2005년
주택수	7,014,578	9,434,392	13,222,641
주택소유자수	6,421,384	7,886,332	9,575,079
1주택자수	5,987,461	7,027,127	8,528,222
다주택자수	433,923	859,205	1,046,857
다주택자 소유 주택수	1,027,117	2,407,265	4,694,419
다주택자 평균 주택수	2.4	2.8	4.5
다주택자 소유 주택 비중	14.5%	25.5%	35.5%

*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1992), 국토연구원(1998), 통계청(2006)

이같은 사실은 역대정권이 대량으로 공급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 점은 같은 기간 동안 주택의 대량 공급에 힘입어 주택보급률이 72.4%(’90) → 86.0%(’95) → 96.2%(’00) → 105.9%(’05)로 급상승한 것과 달리 자가 점유가구 비중(49.9% → 53.3% → 54.2% → 55.6%)과 임차가구 비중(46.9% → 44.2% → 43.0% → 41.3%)은 완만하게 변화해온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2005)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개인 소유 기준으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대한민국 최고 집 부자는 혼자서 1,083채를 소유하고 있다.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 4위는 512채, 5위는 476채, 6위는 471채, 7위는 412채, 8위는 405채, 9위는 403채, 10위는 34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최상위 집 부자 1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5,508채로 한 사람 평균 550채씩이다. 이들을 포함해 30명이 9,923채, 50명이 1만1,948채를 갖고 있다. 100명이 갖고 있는 집은 모두 1만5,464채다.

집을 200채를 갖고 있어도 집 부자 20위에 들기 어렵고(21위가 212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7명에 달하며, 집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100위가 57채이니, 집 50채 소유한 사람은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결국 역대정권이 공급 확대 정책을 펴며 대량의 주택을 공급했으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되는 등 주택자원의 분배가 크게 왜곡됐으며, 그 결과 주택자산의 소유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불로소득의 사유화

부동산 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하고 그 결과 발생한 불로소득이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부유층에게 사유화된 것도 부동산 계급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땅값의 경우 1975년, 집값의 경우 1986년부터였다. 그런데 2007년 말 까지 땅값이나 집값이 하락한 해는 1991~1995년과 2004년의 6년뿐이고 나머지 해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극심한 투기가 되풀이돼 부동산 가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사두면 돈이 된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은 주택공급이 확대될수록 소유편중이 더 극심해진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 특히 투기이윤이 높은 주택일수록 여유자금이 있는 상류층이 사게 되고, 그 결과 소유 편중은 더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근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던 2000년 12월~2006년 12월 까지 만 6년 동안 전체 집값은 64.7%가 상승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불로소득(미실현 이득)을 계산하면 648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7%가 폭등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566조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122.3%가 폭등한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321조 원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올라 발생한 불로소득이 114조 원에 달한다.

결국 6년 동안 올라 발생한 집값 상승총액의 87%는 아파트에서, 50%는 서울지역 아파트에서, 20%는 강남권 아파트에서 발생한 셈이다.

만약 주택가격과 상승률이 동일할 경우 집한 채당 3,117만원씩 번 셈이며, 아파트는 가격이 더

<표 2> 2000~2006년 주택과 아파트 가격총액 증감 현황

(단위 : 호, 원, %)

	전체주택					아파트				
	늘어난 주택수	가격총액		증감분		늘어난 아파트수	가격총액		증감분	
		해당년도	2006년	증감액	증감률		해당년도	2006년	증감액	증감률
2000년	1,147만	1,118조	1,720조	602조	53.8	523만	585조	1,079조	494조	84.5
2001년	42만	45조	63조	18조	40.0	32만	41조	66조	25조	62.1
2002년	47만	59조	71조	12조	20.3	32만	50조	66조	16조	76.2
2003년	31만	41조	46조	5조	12.2	33만	57조	68조	11조	83.5
2004년	32만	41조	48조	7조	17.1	32만	55조	66조	11조	83.1
2005년	23만	31조	35조	4조	12.9	36만	65조	74조	9조	87.9
2006년	31만	46조	46조	-	-	31만	64조	64조	-	-
합 계	1,353만	-	2,029조	648조	-	719만	-	1,483조	566조	-

주: 1) 주택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건교부 발표 연말, 2000년 아파트수는 통계청 연말, 2006년 아파트수는 건교부 2007.1.1 기준 발표 공시가격 조사대상 아파트수.
 2) 가격총액은 다음 해 1.1기준, '적정가의 80%'인 2007.1.1기준 주택공시가격을 적정가로 환산해 적용 한 후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적용해 해당년도 총액을 추산.
 3) 증감율은 해당년도 대비 2006년 가격총액 증감율.
 4) 증감액의 경우 2001년부터는 그 해 증가된 신규주택만의 가격 변동액인 반면, 2000년은 그해 말 기준 기존 총주택의 가격 변동액이므로 증감액이 큰 것임.

비싸고 상승률도 높아 한 채 당 7,432만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 강남권 아파트는 수익률이 더 높아서 한 채 가진 사람은 3억8,359만원, 두 채는 7억6,705만원을 번 셈이며, 강남권 아파트를 6~20채 소유한 집부자들은 가구당 평균 29억2,167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마다 가격과 상승률이 다르므로, 집값 상승폭이 크고 비싼 집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다. 상승폭이 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 더 큰 이익을 봤음은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수록 목 좋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온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별 이득이 없었고, 나아가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이득은커녕 전월세값이 폭등해 주거비가 늘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물론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장치가 제대로 가동됐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테지만, 세제나 각종 부담금을 통한 환수 실적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대부분 사유화되었다. 땅의 경우를 보면 1980~2001년 사이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중 각종 세제나 부담금을 통해 환수된 것은 평균 5% 수준이며(정희남 외, 2003),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환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집의 경우도 환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대부분은 사유화되었다.

이처럼 주기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소유한 사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격차가 크게 확대되며 부동산 계급 형성에 기여하였다.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

부동산 자산의 대물림 또한 부동산 계급 형성과 고착화를 가속화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1965년~2006년까지 42년 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해준 재산은 75조3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인 52조8천억 원은 땅과 집, 빌딩 등 부동산 재산이다. 부동산 소유 편중 현상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다.

부동산의 대물림 흔적은 미성년자 심지어 갓난애가 수억 원 대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2004년 말 현재 스무 살이 안 된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모두 1억7천9백만㎡(5,40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 21배에 달한다. 이 중 10대가 가진 땅은 1억3천7백만㎡(4,200만평)으로 여의도의 16배에 이르며, 열 살이 안 된 어린애가 가진 땅도 4천2백만㎡(1,300만평)으로 여의도의 5배에 달한다. 또 미성년자 소유의 건물도 전국에 3,500동 6백만㎡(144만평)이 넘으며, 특히 돌도 안 된 영유아가 가진 땅과 집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행정자치부 2005).

심지어 은행은 미성년자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다 적발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6월 말 현재 은행이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은 363억 원에 이르며 돈을 빌려간 미성년자는 876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4,000만 원 넘게 빌려준 것이다(금융감독원 2005).

이처럼 부동산 소유 격차가 투기를 거쳐 더 확대되고 대물림되면서 부동산 계급을 형성해온 것이다.

3. 부동산 계급의 구분과 특징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계급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기본 자료는 주택 보유채수 및 전월세 보증금 규모, 주거 빈곤층의 규모에 관한 최근 자료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주택의 가격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주택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유층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고, 또 값싼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과 수십억 대의 초고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 간에 계급별 구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주택분 보유세를 납부한 최근 해인 2007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료를 결합해 최상층 계급 구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분석은 『부동산 계급사회』(2008)에서 필자가 분석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주택자산을 기준으로 부동산 6계급을 구분하고 계급별 주거생활의 특징과 집값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다.

부동산 6계급의 구분

부동산 계급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좀 거칠지만 먼저 집을 소유한 집단과 소유하지 못한 집단, 지하방·옥탑방·비닐집 등 적절하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극빈층으로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집을 소유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돼 셋방에 사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셋방사는 사람은 내집마련을 꿈꿔볼 수 있는 경계선인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2005년 말 현재)을 기준으로 둘로 나눴다.

지하실이나 옥탑방, 비닐집, 쪽방 등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일부 있긴 하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나눈 부동산 6대 계급의 특징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집값을 반영한 부동산 6계급

구분	계급	특징	분포	가구수	주택수	소유 주택수별 가구
집있음	1계급	집값 7.5억 원 초과	2%	38만	113만	여러채 23만 가구(98만채) 한 채 15만 가구
	2계급	집값 7.5억 원 이하	54%	836만	1,134만	여러채 82만 가구(380만채) 한 채 754만 가구
	3계급	집 있으나 셋방살이	4%	67만	67만	한 채
집없음	4계급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6%	95만		
	5계급	보증금 5천만 원 미만	30%	481만		
극빈층	6계급	지하,옥탑 등에 거주	4%	68만		

1계급은 38만 가구(2%)인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 한 채 또는 여러 채를 합친 가격이 매매가격 기준으로 7억5천만 원이 넘어 2007년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다. 15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7억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23만 가구는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98만 채에 달한다.

이들 중 상위 100인은 1인당 평균 100억 원의 주택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해 3만3천 가구가 20억 원이 넘는다. 15억에서 20억 원 사이는 4만1천 가구, 10억에서 15억 원 사이는 13만 가구가 해당된다. 또 7억5천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 17만 5천 가구가 있다.

1계급 중 93%는 서울(63%)과 경기도(30%)에 산다. 또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구에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6%가 살고, 양천·용산구 및 경기도 성남·용인·고양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 62%가 몰려 산다.

2계급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7억5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로 836만 가구(54%)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중 754만 가구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그 집에 거주)이고, 82만 가구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380만 채로 가구 당 4.6채씩 갖고 있다.

2008년 1월1일 매매가격 기준 집값 분포를 보면 전체 주택 중 93만 채(7%)는 3억7천5백만 원에서 7억5천만 원 사이, 106만 채(8%)가 3억7천5백만 원에서 2억5천만 원 사이, 1,128만 채(83%)는 그 이하의 가격이다. 이 가운데 고가 주택 상당수를 1계급 중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2계급에 속하는 다수는 2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3계급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력이 안 되거나, 직장생활 또는 자녀 교육 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다. 전체 가구의 4%, 67만 가구

가 이런 '이중인생'을 살고 있다. 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전세에, 나머지는 월세나 사글세에 살고 있다. 또 29만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 10만 가구는 3천~5천만 원 사이지만, 나머지 28만 가구는 보증금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에 살고 있다. 67만 가구 중 40만 가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33만 가구는 전세에 나머지는 월세나 사글세에 산다.

4계급은 현재 전세나 월세에 사는 가구 중에서 보증금이 2005년 말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로 전체 가구의 6%, 95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3만 가구는 보증금이 2억 이상이고, 21만 가구는 1억 원이 넘지만 2억 원은 안 되며, 나머지 71만 가구는 5천만 원은 넘지만 1억 원에는 못 미친다. 또 이들 중 83%인 79만 가구는 수도권에 산다. 가구 기준으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11%가 집을 없지만 전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을 내고 셋방에 사는 셈이다. 수도권 79만 가구 중 3만 가구는 2억 이상, 19만 가구는 1억에서 2억 사이, 57만 가구는 5천에서 1억 사이의 보증금을 내고 있다.

5계급은 보증금 5천만 원이 안 되는 전월세 또는 사글세 등 셋방에 사는 사람들로 전체가구의 30% 481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94만 가구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보증금을, 140만 가구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보증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247만 가구는 보증금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등을 떠돌고 있다. 보증금 유무와 상관없이 평균 월세는 21만원, 사글세는 28만원 수준이다.

6계급은 앞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처지가 더 딱한 사람들로 지하실, 옥탑방, 비닐촌, 움막, 동굴 등에 사는 68만 가구(4%)가 여기에 해당되면 인구수로는 16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지하방 거주 59만 가구의 경우 14%만 자가 소유이고 38%가 전세에, 46%가 월세 및 사글세 등 84%가 셋방에 살고 있다. 5만 가구에 달하는 옥탑방도 자가 비율은 14%에 머문 반면, 전월세 비율은 전세 37% 월세와 사글세 47% 등 93%가 셋방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59%, 경기 27% 등 93%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부동산 계급별 주거생활과 집값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

1계급은 집이 한 채이든 여러 채든 7억5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므로 주거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목적은 자산증식이다. 1계급이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상은 이들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계급에 속한 38만 가구 중 34.7%는 연간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다. 그런데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가구당 평균 3.4채에 달한다. 소득에 비해 소유한 주택수가 비정상적

으로 많은 것은 주택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집을 24채 소유한 A씨는 연간소득이 달랑 7원이고, 38채를 소유한 B씨는 연간 소득이 금융소득 800원이 전부다. 연간소득이 1,048만원에 안된다고 신고한 C씨는 집을 12채 소유하고 있고, 근로소득 120만원과 금융소득 27만6,000원 등 연간소득 147만6,000원을 신고한 D씨가 소유한 집을 40채였다. E씨는 집을 무려 98채 소유하고 있는 데 연간소득은 근로소득 1,450만 원을 포함해 3,990만 원에 불과했다.

<표 3>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의 몇 가지 사례 (2007)

번호	나이	연간소득	보유주택수	번호	나이	연간소득	보유주택수
1	36세	0원	5채	7	64세	858,000원	39채
2	56세	7원	24채	8	54세	1,476,000원	40채
3	105세	800원	38채	9	19세	13,080,000원	13채
4	66세	1,048원	12채	10	38세	22,150,000원	64채
5	64세	34,414원	17채	11	19세	36,330,000원	4채
6	58세	97,558원	25채	12	66세	39,900,000원	98채

자료 : 기획재정부 - 이광재(2008), 국민일보(2008.11.7)에서 재인용

심지어 집 4채를 소유하며 금융소득 1,592만원을 포함 연간소득 3,633만원을 번다고 신고한 19살짜리가 있는가 하면, 집을 13채 소유하며 연간 금융소득 1,308만 원을 신고한 29살짜리도 있다. 또 38살에 집을 64채나 소유하고 있지만, 연간소득은 금융소득 1,000만원을 포함 2,215만 원이라고 신고한 사람도 있다.

이들이 신고한 연간소득이 대부분 사업소득이란 점에서 실제보다는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1계급을 대표하는 사례는 아니자, 어쨌든 1계급 중 1주택 소유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에서 벗어나 자산증식용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1계급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본다면 투기를 가장 강력히 옹호하는 집단이다. 1계급 중 고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겠으나 이와 상관없이 1계급 전체에게 집값 폭등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집값이 떨어질 경우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일이다. 그 동안 주택가격은 넓고 큰 집일수록 폭등해왔다는 점에서 집값 폭등의 실질적 혜택을 가장 많이 얻은 계급이기도 하다.

1계급은 집값이 폭등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가진 경

우 임대소득도 더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간 발생한 불로소득이 축소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반대한다.

2계급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서 산다는 점에서 대부분 주거생활 면에서 어려움은 없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집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전월세 값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운데 87만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며 그 집에 살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거의 질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계급 중 집을 한 채 소유한 754만 가구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집을 가구당 평균 4.6채씩 소유한 82만 가구는 거주목적 외의 200만 채 이상을 자산증식용으로 소유하고 있다.

집값 변동에 대한 2계급의 이해관계는 처지에 따라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2계급 내부에는 주택가격과 소유 주택수의 차이, 집값 변동률 등에 따라 차이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은 2008년 1월1일 매매가격 기준으로 최저 9만원에서 최고 7억5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더구나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 집값 변동에 차이도 크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2002.12~2007.12) 아파트 값은 평균 34% 올랐으나 서울(53%)을 비롯한 수도권(49%)에서 집중적으로 올랐고 광역시는 19%에 그쳤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남양주시는 60~95%가 뛰었다. 아파트에 비해 연립(21%)과 단독(6%)은 덜 올랐고, 같은 아파트라도 소형(22.7㎡ 미만)에 비해 대형(전용 95.9㎡ 이상)은 1.5배가 더 올랐다(국민은행).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같은 1가구 1주택자라도 많이 오른 집을 가진 사람과 전혀 오르지 않은 집을 소유한 사람이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으며,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경우는 더 복잡하다.

2계급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폭등할 경우 집 규모를 늘려가는 비용이나 자녀의 주택 구입 비용이 늘어나므로 집값 안정에 호의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 처지에 따라 집값 하락 및 안정이 자산의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3계급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이 여전히 불안한 존재이다. 또 존재가 이중적인 만큼 집값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도 단순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호의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4계급~6계급의 주거생활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우선 집값은 소득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인이 내집을 장만하기가 힘들게 돼 부동산 계급 내 상향 이동은 매우 어렵게 구조화돼 있다. 2006년 9월 기준으로 한국사회 평균 붓금생활자가 최소한의 생계비 지출을 제외하고 저축을 통해 110㎡(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18.6년, 서울 29.1년, 서울시 강남구 44년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군대 제대와 대학 졸업 후 28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면 47세에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서울에서는 57세, 강남구에서는 72세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말 그대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돼야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다(손낙구, 2008).

부동산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은 내집 장만이 험겨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셋방 사는 고통 자체를 더 크게 한다. 집값 변동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은 123.6% 오른 데 비해, 전세가격은 266.7%로 곱절이 올랐다. 아파트 보다 셋방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더 심했다.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 1.8배 오른 반면, 단독주택은 3.3배, 연립주택은 3.2배가 더 올랐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서울 한강 이북 지역은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2.6배가 더 올랐고, 광역시도 2.5배 더 올랐다(국민은행). 이처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고통 받는 임차가구는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의 41.4%인 656만 가구 1,666만 명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4~6계급은 내집 꿈이 사실상 무산된 채 2년에 한 번씩 전월세 가격을 올려 주거나 이사를 다녀야 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는 가구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곳에 사는 가구 현황에서 잘 나타난다.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침실·시설면적기준만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13.0%인 206만 가구에 달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서는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 가구는 법령 미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판잣집·비닐집·움막·쪽방·동굴 등에 사는 5만 가구가 통계로 제외된 것은 물론(반)지하방 거주 가구 중 44만 가구도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열악한 곳에 사는 가구는 집계된 수치 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하방 등에 사는 부동산 6계급이다. 2005년 현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는 2만2천여 가구 5만3천여 명이 살고 있다. 비닐집 판잣집 움막에는 2만3천여 가구 5만7천여 명이 산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는 58만7천여 가구 142만 명이 산다. 옥탑방에는 5만여 가구 8만8천여 명이 산다.

인간이 동굴을 비롯한 지하공간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50만 년 전 베이징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베이징 원인이 살았던 동굴, 지하, 움막 등에 사는 사람이 68만 가구 162만 명에 달하는 현실은 부동산으로 계급이 나뉜 주거생활의 격차를 생생하게 웅변하는 것이다.

4~6계급의 집값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집값이 폭등할수록 주거생활이 후퇴하고, 집값이 떨어질수록 주거생활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4계급 중 일부는 집값이 폭락할 경

우 내집 장만의 꿈을 되살릴 수 있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5계급과 6계급은 현재 확보한 전월세 보증금도 많지 않고 소득도 높지 않으므로 설사 집값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5. 부동산 계급과 한국사회

부동산이 주거생활을 비롯한 부동산 내부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동산 자산의 소유 격차와 빈부격차의 연관 정도, 부동산과 삶의 격차의 관계, 이른바 ‘부동산 먹이사슬’의 작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을 살펴본다.

부동산과 빈부격차

“전세보증금이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라거나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집값이 너무 비싼 탓에 그 동안 번 돈이 대부분 전세금이나 집값에 충당했다는 이야기인 데, 이는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자산은 크게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대한상의 89%, 한국은행(주택자산) 83%, 국민은행 80%, 삼성금융연구소 79%, 통계청(전월세 포함) 81% 등으로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최소 79%에서 최대 8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국은 36%, 일본은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재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집값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쌀 뿐 아니라, 계속 오르지만 하니 돈이 생기면 우선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자산 중 주택 자산 비중은 1993년 76%였으나, 1995년 78%, 1999년 81%, 2001년 8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턱없이 높기 때문에 자산이 많고 적음은 곧 부동산이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부자집이나 가난한 집이나를 결정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계자산의 5분위 배율에서 금융 등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7억6,986만원으로 하위 20% 3,939만원의 19.5배에 달했다. 상위 20%의 자산 중 부동산은 6억2,006만원으로 하위 20% 2,700만원의 23배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의 금융자산은 1억4,980만원으로 하위 20% 1,237만원의 12배에

그쳤다. 부자인 이유도 부동산 때문이고, 가난한 이유도 부동산 때문인 것이다.

한편 같은 2005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제시한 가계소득의 5분위 배율이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5.4배, 전국가구 기준으로 7.6배이다. 따라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 소득격차에 비해 자산격차가 훨씬 심각하며, 그 가운데서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득과 토지의 지니계수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된다. 보통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소득격차 지니계수(완전 평등 0.0 ↔ 1.0 완전 불평등)가 사용되는 데, 2005년 현재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 지니계수는 0.348이다. 반면 2005년 가구별 토지소유 격차의 지니계수는 금액 기준으로 0.747, 면적기준으로 0.806으로 나타났다(김유선, 2005). 소득에 비해 토지의 불평등도가 두 배 이상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소득격차를 쟀 지수만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빈부격차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자산의 격차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자산의 격차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핵심은 부동산 격차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삶의 격차

또한 부동산 격차는 빈부격차의 핵심을 이루는 탓에 삶 구석구석의 다양한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손낙구, 2008).

서울시 안에서 아파트 값이 비싼 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수도물 보다 생수를 사먹거나 정수해서 마시며, 생활 만족도나 거주 지역 만족도도 아파트 값이 싼 곳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은행 역시 인구가 많은 곳 보다는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지점을 많이 두며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는 인구수는 54만 명으로 비슷하지만 금융기관수는 강남이 335개인 반면, 관악은 59개에 불과하다. 은행이 가계에 대출해준 돈의 93%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며, 이 가운데 62%는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동산이 많을수록 은행문턱이 낮고 부동산이 없을수록 은행문턱이 높은 것이다.

<표 4> 5분위 별 자산소득 현황(2005)

(단위 : 원, 배)

	자산			월평균 소득	
	총자산	부동산	금융 자산	도시 근로자	전국 가구
부유층 (상위 20%)	7억6,986만	6억2,006만	1억4,980만	633만	600만
60-80%	3억0,563만	-	-	379만	348만
40-60%	1억9,435만	-	-	287만	255만
20-40%	1억742만	-	-	210만	178만
빈곤층 (하위 20%)	3,938만	2,700만	1,237만	116만	79만
평균	2억7,912만	2억1,935만	5,977만	325만	292만
5분위배율 =상위 20% 상위 20%	19.5 (17.9)	23.0	12.1	5.43 (5.22)	7.56 (7.23)

자료 : 자산은 삼성금융연구소의 2005년 5월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결과." 소득은 통계청 "2005년 가계수지 동향."

교육과 건강문제 역시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04년~2006년 사이 아파트 값과 서울대 합격률을 비교해보면 서울시 안에서 집값이 비싼 강남서초구에서는 고교 졸업생 1,000명당 28명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그러나 집값이 가장 싼 은평강북중랑구 등 7개 구는 1,000명당 평균 6명이 합격하는 데 그쳤다. 합격률이 높은 동네와 낮은 동네의 가구당 소득도 차이가 있지만, 그 보다는 아파트 값과 아파트 값 상승률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동산 재산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부동산 격차가 수입의 격차로, 다시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져 학력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2004년 사이 5년간 성연령 표준화 사망률과 땅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시, 서울 강남송파구, 경기 용인시 등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함천군, 전남 진도군, 경남 의령군, 전남 무안신안군 등 땅값이 가장 적게 오른 지방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격차와 건강격차는 소득이나 부의 격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부를 결정하는 게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 격차와 큰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실하게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보다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 문화 역시 부동산 투기가 만들어낸 문화적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계급사회의 먹이사슬

나이가 한국사회가 부동산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구조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계급사회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경제가 대자본가를 정점으로 해서 맨 밑바닥에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먹이사슬'이 작동돼 굴러간다면, 한국자본주의는 '부동산의 먹이사슬'이 하나 더 작동되면서 굴러가고 있다.

이 사슬의 최 정점에는 부동산 1계급을 비롯한 부동산 5적이 있고, 맨 밑바닥에는 6계급과 5계급, 4계급이 있다. 그 사이에 2계급과 3계급이 끼어 있다. 부동산 먹이사슬에서 재벌은 '건설재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건설재벌은 개발정책을 포식하며 급성장해 이제는 정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정글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20% 안팎을 이어오는 등 부동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후진국형 토건체제로 굳어져왔다. 토건체제를 지탱해온 것은 건설재벌, 부동산 관벌, 정치인, 보수언론, 일부 학자 등 '부동산 5적'의 부동산 동맹이었다.

건설재벌과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역시 투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 1987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박정희가 도로를 뚫는 '길 대통령'이라면 나는 주택을 짓는 '집 대통령'이 되겠다"며 주택 200만호 건설 등 개발정책을 펴다 부동산 투기를 자초했다. '길 투기' 대통령에 이은 '집 투기'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요인 중 수도이전 등 충청권 개발공약을 빼놓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대한민국 건설재벌의 원조 중 하나인 현대건설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것은 건설재벌이 정치권까지 접수한 게 아닐까 여겨진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먹이사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뉴타운 개발공약에 호응해 자기 동네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중산층들이 대거 가세한 '뉴타운 선거'였다면, 지방의원 선거는 더 미세한 동네 개발공약의 경연장이다.

역대정권의 개발정책이 비대하게 키워 온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각종 개발공사는 불필요한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재정을 탕진하고 국토를 파괴하며 부동산 먹이사슬을 설 새 없이 작동시킨다. 여기에 전체 광고의 5분의 1을 아파트 광고로 채워 수익을 맞추며 투기를 부추기는 보수언론, 부동산 투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관변학자들 역시 '부동산 5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5적'은 건설재벌과 부동산 관벌정치집단의 정경유착, 보수언론까지 가세한 정경연 유착, 관변학자까지 끼어든 정경연학 유착 등 각종 부동산 동맹으로 얽히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왔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 부정부패 우리나라 뇌물사건의 55%는 건설관련 부패이며, 공직자

가 물러나는 주된 이유도 부동산 관련 비리와 투기가 많은 것이다.

6. 부동산 계급 해제의 방향

부동산의 극심한 소유 편중을 축으로 한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 한국사회의 밝은 앞날을 설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급속하게 악화돼왔다.

부동산 소유 편중을 어떻게 개선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 보다 부동산 소유 편중과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한정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려 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유 문제를 비켜가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대부분이 사유화돼 투기에 노출돼 있다는 것과, 사유 부동산의 소유 편중이 극단적으로 심각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땅과 집이 대부분 투기에 노출돼있는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추진돼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의 땅과 주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부동산 불안의 출발점이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한계를 애초부터 결정하고 있다.

현대자본주의 중주국인 미국의 경우 국토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의 국공유지 비율이 80%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공유지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하천 도로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공유지는 23%에 불과하다. 대지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국공유지 비중이 7% 밖에 안 된다. 주택의 경우에도 2007년 현재 재고주택 기준 공공임대주택이 3.7%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토의 70%, 주택의 96% 이상이 사유화돼 투기에 노출되고 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나아가 국공유 토지와 주택의 부족 때문에 부동산 가격 변동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은 주로 사후적인 성격의 세제정책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공유 토지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토지의 단계별 국유화나 공공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부동산 문제 해결 원칙으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토지(주택)공개념도 소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포괄해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건설재별 지원 등에 쓸 것이 아니라, 폭락한 집과 땅을 국가가 싸게 매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자세가 필요

하다 하겠다.

둘째,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소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투기를 근절시켜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 부동산 계급이 주기적인 가격 폭등과 부풀려진 가격 위에 떠리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투기 근절과 가격 안정화는 부동산 계급의 기반을 허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또한 앞에서 살폈듯이 가격 변동에 대한 부동산 계급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동산 계급 간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가 각종 투기규제 장치를 풀고 집값이 적정한 수준으로 하락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부동산 1계급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부동산 계급별 맞춤형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1계급과 2계급 중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계급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의 정상화, 단계별 택지국유화 정책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소유자인 2계급 중 1주택자와 3계급에 대해서는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4계급은 내집 마련 지원을, 5계급은 ‘셋방스트레스 푸는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6계급은 ‘지하방 탈출 사다리 정책’이 맞춤형 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다(손낙구, 2008).

셋째,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을 부추기는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관별 손에서 복지부로 옮겨야 한다. 복지부 산하에 (가칭)공공 주택청을 신설해 복지차원의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동안 주택정책이 1~3계급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면 지금부터는 4~6계급으로 대폭 옮겨야 한다. 투기수요 충족과 중산층 육성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던 주택공급 정책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이 주된 정책 수단이 돼야 하며,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도 공급된 주택이 어느 계급에게 돌아갈 것인지도 정확히 따져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한 극단적인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손질해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부동산 소유 편중의 현실을 국가기밀 취급하는 현행 부동산 통계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통계 정책에는 개발정책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부동산 통계는 난무하지만, 소유 편중의 실태에 관한 통계는 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봤듯이 주택소유 통계가 사라진 1991~2001년 사이 공급된 주택은 고스란히 집부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부동산 계급 구조를 굳혀버렸다.

부동산 소유 통계가 물가나 주식 통계처럼 최소한 매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면 부동산 계급사회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일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국민일보. 2008. “집 24채 보유 연 소득 7원 신고 … 종부세 대상자 세 경납 논리 허점”(10/0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토개발연구원. 1992. 『민간임대주택업의 육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8. 『주택시장구조변화와 신주택정책방향』.
 국토해양부. 2008. 『2008년 국토해양통계연보』.
 금융감독원. 2005. “가계부문의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 방향.” 보도자료(05/18).
 김유선. 2005.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노동사회』 통권 103호.
 삼성금융연구소. 2006. 『월간 금융리포트』 2월호.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이광재. 2008.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정감사 자료집(10/06).
 정희남·김승중·박동길. 2003. “개발이익 발생 규모와 환수 수준에 대한 실증 분석 1980-2001.” 『감정평가연구』 제13집 제2호.
 천현숙. 1997. “텍스와 무어의 주거계층론.” 『월간국토』 9월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고서』. 각 연도.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발표” 보도자료(11/24).
 행정자치부. 2005. “부동산 보유현황을 개인별·지자체별로 연중 파악 관리.” 보도자료(02/14).

[발표문]

소수자의 주거권을 생각한다.

호연 (인권운동사랑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활동가)

1. 주거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복덕방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8년 세계주거의 날 행사에 즈음해 주거권을 고민해 왔던 단위들이 주거권 실현의 내용을 담은 선언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적정 수준의 주거비 부담으로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적당한 수준의 집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적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살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는 마구잡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동안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주거권 개념에 근거해서 도대체 적절한 주거는 무엇이고, 그러한 주거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며, 그에 필요한 조건과 현재 주택 및 개발 관련 제도와 법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 우리는 주거권 개념을 구체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정상가족' 중심의 주거권 개념을 벗어나,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그 결합에 따라 주거권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소수자의 주거권을 논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진보복덕방>이라는 웹진에 담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진보복덕방>에서 기사화 되었던 소수자의 주거권 내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2. 소수자의 주거권

전세의 경우 세입자들은 대부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과 없는 살림에 이사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더 곤란한 문제는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이다. 나의 이사 경험으로 볼 때 집주인들은 재계약시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나는 아직 전세금을 동결한 집주인을 만난 적이 없다), 전세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사를 할 때마다 천만원이상 오른 전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세입자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매월 적자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 살림에서 이만한 목돈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럼 어쩐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금리가 연 2.0%이고 대출금도 1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고 하네. 그럼 대출 자격은 뭘까?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사람(음~ 해당이 된다) 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자(이것도 패스), 최근 1년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분(물론 해당) 그 밖에 재산이나 전세금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다. 아니 아직 아니다. 그 밑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이건 뭐지? 단, 단독세대주는 만 3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분이라고? 나는 단독세대주, 근데 내가 만 나이로 몇 살이지? 딱 만 35세다. 나이가 한 살만 어렸다면 자격이 안 되었던 거다.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세대 중 1인 가구는 20%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의 45.1%가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이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수는 0.43%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1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자격 기준에서 2인 이상의 가구에 적용되지 않는 만 3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을 적용받는다.²⁾ <진보북덕방>에서 비혼 여성들은 나이 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만 35세 이상이 되어야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독립은 나이의 문제이기보다는 혼자서 살던 같이 살던 개인이 독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누구나 독립을 하려면 살 집이

2) 사회권규약 제3차 반박보고서 NGO 네트워크(200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 보고서.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정책에서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낮은 공급율과 단독세대주에 한해 이러한 예외 기준을 두는 등의 주거정책은 소위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결혼과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가족'을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5년에 전체 가구 중 29%이고, 이 중 9%는 65세 이상의 단신 고령 가구이다. 1인 가구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전반적으로 주택 제도가 충분한편인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버블기 이후 1인 가구 대상의 임대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해 왔기 때문에 주택제도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인 가구 주택정책으로는 공영주택 입주권이 있는데, 입주에 따른 '단신자 요건'은 연령이 60세 이상, 신체 장애 1급~4급, 상이군인,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호수급자, 해외 인양자, 지적·정신 장애 1급~4급, 가정폭력피해자 등이다.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심임대지원사업'에도 고령, 장애인, 외국인 단신 세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³⁾

<진보북덕방>에서는 그동안 당사자들과의 만남과 기획 기사를 통해 동성애자 주거권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혈연관계의 가족과 함께 사는 시기에는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다는 점, 가족들에게 아웃팅되어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는 점,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집이 쉬는 곳이 되는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있다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보았다. 또한 주택 공급 기준 자체가 이성애에 관계를 전제로 한 가족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 커플 가구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부양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 주거공간을 마련했다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다시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 그래서 주거권은 개인이 점유하는 주거공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로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진보북덕방>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 동성애자들을 배제하는 이성애중심적 주거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⁴⁾

2009년에 작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에서도 "개개인은 연령, 경제적 지위, 집단 또는 다른 이와 관계 또는 신분 및 기타 요인과 관계없이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주거정책이 성소수자를

3) 전홍규(2008), "일본의 1인 가구 주거실태와 대응", <진보북덕방>.

4) 미류(2008), "어디에도 살지 않고 어디에나 살고 있다 -동성애자 주거권의 현실과 과제-", <진보북덕방>.

배제하는 이성애적 혈연관계만을 인정하는 '세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소수자들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동거하는 경우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동거하다가 한 사람이 질병, 유학 등의 이유로 함께 살던 다른 이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려고 할 때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불법 전대(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의 의혹을 받아 퇴거 압력을 받기도 한다.

주거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자, 관계적 공간(관계유형, 친밀감의 정도, 갈등 발생 시 소통문제 등을 포함하는)이며, 사회적 공간(이웃 및 지역사회 관계, 계급별 주거 분리, 사회적 시선 등)이며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서로 교차하고 연관되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09년에 있었던 장애여성공간,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에서 진행한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볼 수 있다. 장애여성들은 화장실/욕실 그리고 부엌 사용 등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주거공간이 물리적 접근 자체가 어렵고 가족이나 동거인, 활동보조인 등이 충분히 편한 관계가 아니어서 이용 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울 때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여성들은 이웃 사람들의 시선, 과도한 관심, 무시하는 눈빛과 말투 등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젠더, 연령, 장애유무, 섹슈얼리티,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살만한 집의 기준을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주거공간이 이미 구조적으로 비장애인, 혈연중심의 '정상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기준을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적용하기 어렵다면, 주거공간에 개인은 일상적으로 주거공간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⁵⁾

<진보복덕방>에서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주거권의 주체가 '어른들'인 비청소년이며, 청소년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상황을 독립으로 보기보다는 가출로 보고, 청소년이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청소년을 독립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대상도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주거가 될 수 없는 쉼터의 문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고 싶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 등 청소년의 주거권 자체가 이야기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⁶⁾

5) 호연(2009),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가 말하는 것들", <인권오름>

6) 공현(2008), "가출과 독립 사이-청소년의 주거권", <진보복덕방>.

이처럼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정책이 '정상가족' 중심일 때, 소수자의 주거권은 배제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주거는 물리적·관계적·사회적 특성이 교차하고 연관되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기보다 이러한 특성들의 결합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의 가족, 계급, 주거라는 주제에 맞추어 빈곤 가정 10대 여성의 주거권 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3. 빈곤가정 10대 여성의 주거권에 대한 단상들

1) 나는 그녀를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족재구성(사회적으로는 이것을 가족해체, 위기라고 말하지만)을 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성애적 가족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동거인의 등장으로 결혼을 하든지 안하든지 함께 사는 가족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일련의 가족재구성 자체가기보다는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들의 가족재구성 과정에서 빈곤 여성들은 자신이 집이라는 것이 없기도 하고, 설사 살던 집이 있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살림을 합칠 때 남성의 집으로 여성이 들어가는 가부장제적 패턴을 따라 이사를 한다. 그리고 10대 여성(남성)의 동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의 삶에 새로운 동거인이 등장하게 된다. 빈곤가정의 10대 여성들은 단지 엄마의 애인이라고 지칭되는 어떤 낯선 남자와 살기 시작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른들은' 그녀가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인지 몰라도 되고, '어른'이 아니기에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다. 이 상황에서 그녀는 '어른'이 아니니까 동의의 주체도, 선택의 주체도 되지 못한다.

그는 누구인가? 그녀는 그를 모른다. 단지 그녀와 그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을 뿐. 그는 '자기 집'이라고 속옷 바람에 돌아다닌다. 그를 볼 때, 그녀는 학교 앞에서 '바바리 맨'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다. 가능하면 그녀는 그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방'이라고 배정된 곳에 있다. 다행이다. 이런 방이라도 있다는 것이...

어느 날부터 아빠와 그녀 둘이서 살고 있는 집에 아빠 친구가 차고 가기 시작했다. 받은 하나, 세 사람이 누우면 더 이상 빈틈도 없는 좁은 공간, 도대체 그녀는 어디서 자야 되는 건가?

동의하지 않은 동거인은 10대 여성의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마치 그녀를 알고 있거나 한

듯이 그는 그녀에게 어른 행세를 하려 한다. 그는 그녀에게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하면서 핸드폰을 가져가거나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그녀는 ‘도대체 니가 뭘테’하는 생각이 든다.

낯선 사람과의 동거에서 10대 여성들은 관계적 거리감만큼 공간적 거리감을 두고 싶어한다. 하지만 공간적 거리감을 두기에는 집이 너무 좁다. 그래서 관계적 거리감과 다르게 공간적 거리감은 너무 가깝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벽에 붙인다. 그때서야 잠이 들고, 몸의 긴장이 조금 풀어진다. 그녀의 몸은 벽이 편하다.

2) 나는 집에서 언제쯤 나만의 장소가 생길지 모른다.

빈곤가정 10대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이 있던 경험이 많지 않다.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방이 두 개 일 때 대부분 부모님(할머니)과 같이 지내게 되는 것은 10대 여성이고, 오히려 남동생이 나머지 방 하나를 쓴다.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다 살고 있는 그녀는 집안의 남자들이 텔레비전에 집중해 있는 사이 옷 속에서 옷을 갈아 입고, 거의 집에서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보낼 수 없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내가 듣고 싶은 음악소리는 묻히고, 책을 펴도 글자만 눈에 들어온다. 집에서 거의 공부를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시험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자는 사람들을 깨울 수 없어 화장실 불을 켜 놓는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주거권 일반논평은 “주거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가 운이 좋게도 그녀가 자신의 방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녀는 집에서 텅덜며 집에 있고 싶어진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을 집에서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집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3) 그 순간, 나는 모른 척 하고 싶다.

빈곤가정 10대 여성에게 집은 거리와 다르게 안전한 공간인가? 외부와 내부라는 공간 분리와 외부 보다는 내부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통념이 이들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집에서도 순간순간 위협한 상황에 놓인다. 가정 폭력 속에서 그녀들은 아빠로부터 엄마를, 부모로부터 동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공간에 남아 있는 자로서 자신을 위치시킨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을 보고, 폭력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폭력의 잔재들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은 가족관계에서 신체적·심리적 거리를 두기 어렵게 만들어, 10대 여성들이

관계의 폭력성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녀는 폭력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야 하고, 분노의 증폭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녀는 육체 이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그녀의 몸이 그곳에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뿐이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간다면 한들 돈이 없으니 갈 곳도 없다. 그녀가 작정하고 집을 나갈 결심을 하지 않은 한 그녀의 선택은 버티는 것 밖에 없다.

4)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학교 친구들은 그녀(그)에게 어디 사는지 묻는다. 그녀는 000동에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학교 친구도 같은 동네에 산다.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대부분은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산다. 그녀의 학교 친구는 000 아파트에 산다고 먼저 말을 한다. 그녀의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딩하우스촌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는 그녀의 집이 보이기도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녀의 학교 친구는 다시 묻는다. 어디 사느냐고? 그녀는 ‘그냥 000동에 산다’고 말한다. 그녀는 학교 친구처럼 ‘심플하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하면 귀찮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기에, 그런 것이 귀찮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학교 친구들의 시선들, 그것이 귀찮다.

5) 나(우리가족)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만큼이나 주거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재개발로 인해,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밀린 월세로 인해 보증금조차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 가라는 집주인의 독촉을 듣게 될까봐 삶이 불안하다. 가족의 주거 불안 상태는 10대 여성의 머릿 속을 떠나지 않고 걱정거리 1번으로 자리한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돈도 없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고 그녀는 생각한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한다.

1968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 중 하나로 전유의 권리를 말하는데, 전유의 권리는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도시 공간을 생산하고 정의할 권리이다.⁷⁾ 르페브르의 전유의 권리를 미시적 공간인 주거공간에 적용해 본다면, 빈곤가정 10대 여성은 주거 공간에서 전유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자신

7) 강현수(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2009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의 장소를 찾을 수 없고, 마치 보이는 유령이거나 보이지 않은 사람이 된다. 공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영향을 통해 정의되고 유지되고 변화되기에 공간의 전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관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기존의 권력관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와 관련해 빈곤가정 10대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모르는 것이' 많다. 어쩌면 그것은 원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게 되어 버린 것이고, 어떤 것을 알고 싶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것은 알지만 모른 척 하고 싶은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른다고 느끼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미래에 닥쳐올 것들을 예측하면서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은 불안감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녀들은 자신의 삶은 정작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른다고(사실 그녀들은 알고 싶어한다)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이 반복되면 그 긴장을 유지하기 힘들어 무감각해지기도 한다. 이제 '어른들'은 그녀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설명들을 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 '어른들'은 그녀들이 질문하는 것이라도 대답을 해 주기 바란다. 그녀들은 들을 자격이 있고,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25.7만(전체 가구의 16%)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40.7%를 소득 1분위가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인 소득 4분위 이하가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에 따른 주거수준의 격차가 분명하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이 적절한 기준으로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면적 기준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그 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지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인간생활의 안정은 곧 따뜻한 주거생활에서 비롯된다", 이 문구는 1964년 3월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문화관에서 열렸던 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행사였던 '주택전'의 주제였다. 주거생활이 늘 따뜻한 것은 아니지만, 주거생활이 인간생활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빈곤가정 10대 여성들의 삶에서 공간의 물리적·관계적·사회적 특성이 교차하면서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두서없이 살펴보았다. 사실 아직 질문이 깊어지지 못했고, 몇 가지 단상들만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떠오르는 질문은 '공간에서 무엇이 그녀들을 위한 안전을 구성하는가?'이다.

건교부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인)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제곱미터)
1	침실 1, 부엌	12(3.6평)
2	침실1, 식사실 겸 부엌	20(6.1평)
3	침실2, 식사실 겸 부엌	29(8.8평)
4	침실3, 식사실 겸 부엌	37(11.2평)
5	침실3, 식사실 겸 부엌	41(12.4평)
6	침실4, 식사실 겸 부엌	49(14.8평)
7인 이상	침실4, 식사실 겸 부엌	52(15.8평)

- 침실은 부부침실 확보, 만 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만8세 이상 이성자녀는 침실 분리, 노부모 침실 분리, 그리고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구조성능환경 기준인데, 이는 영구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여야 함을 그 기준으로 제시

[인권오름] 가족정책 토크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케이 (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받는 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이 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확장시키는 작업과 다양한 위치의 존재들이 저마다의 삶의 맥락에 맞게 누려야 할 주거권을 요구하는 작업은 긴

밀하게 맞물린다. 또한 가족이 구성되는 방식 및 그 형태를 좌우하는 요소에는 계급, 성별, 연령, 지역, 장애, 성/성별정체성, 인종 등의 다양한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 때문에 주거권에 대한 모색 역시 것처럼 여러 변수들에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살피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 꾸리고 있는 가족 형태가 어떻게 성별이 어떻게 뭐가 어떻든, 통념상 번듯해 보이는 집을 구입하고 그걸 유지할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 집 사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거권이란 집의 소유와 거주 그 자체를 넘어선 주거의 여러 국면을 아우르는 것이지만, 내가 내 의지로 굴릴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주거와 관련된 여타 문제들을 압도하는 요소이다. 한국 사회가 손나구 씨의 표현대로 '부동산 계급 사회'에 다름 아니라면, 자기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층 계급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주거권을 생존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느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가령, 주택마련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전세담보 대출 등의 대출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으로부터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자기 집 없고 자기 집 가지기 어려운 이들도.

하지만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남부러울 것 없이 소유하고 있는 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동성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의 문제에 연루되면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된다. 또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이른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가족이 재구성되고 거주 형태가 변화하는 상황에 던져질 때, 아무리 살 곳 그 자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과는 별도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역시 무주택자이면서 임대주택 구하기도 어려운 조건과 다른 삶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경우,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받는 일은 한층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무주택자의 빈곤은 그/녀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한하고, 혼인/혈연/출산을 매개로 하지 않은 관계는 제도의 지원체계로부터 밀려남으로써 주택 등에 대한 공공 정책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더 어렵게 살게 된다. 가난해서 집이 없고, 집이 없어 더 가난해진다. 동성 커플은 혼인 관계 및 직계존비속 관계를 중심으로 매겨지는 청약 가점 우선순위를 거둘때 볼 수도 없다. 그런 장벽 때문에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주거권, 가족구성권으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이 저마다 제대로 주거권을 보장받으려면 주택정책과 가족정책(에

전제된 규범적 가족상이 더불어 변화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걸맞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가족정책에 전제된 '정상가족' 규범 자체가 깨져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비혼 여성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의 경우 상호적인 부양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청약 가점은 고사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단위조차 될 수 없는데,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 가족으로 이들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 같은 공동체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가족을 규정하는 경계를 넓히는 작업이고, 가족구성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한편 주택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비혼 여성 공동체를 굳이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포섭해 내지 않더라도, 즉, 비혼 여성들끼리 모여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현행법상 가족이 아닌 것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성애/혼인/혈연이라는 요소로 전폭 몰두어 있는 단위라면 그런 식의 '가족' 외에 다른 사회적 단위들이 등장해서 '가족'과 겨뤄보면 어떨까. 가령, 진보신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거연대협약'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안이라 볼 수 있다.

집 없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 주택정책 중 하나는 아마도 공공임대주택 수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청약자격, 입주자격도 실제 청약하고 입주할 물량이 있어야 논의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단순히 전체 물량의 증가만이 중요한 것 역시 아니다. 주택의 설계도 문제다. 기존 '정상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물량이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물리적으로 공평하게 공간을 나누어 쓰고 싶은 이들은 곤혹스러워진다. 방 크기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중요하다. 1인가구의 주거 수요는 그간 주로 민간임대로 충당해 왔는데, 주거비용은 낮추되 주거의 질은 높이는 공공임대가 늘어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충만이 주거권 보장의 만능해결사인 것은 당연히 아니기에 여타 정책에서의 변화 역시 시급하다. 일례로,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5세 이상이 되어야만 국민주택기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된다. 이 역시 혼인과 출산을 매개로 구성된 가족 단위에 우선 혜택을 주겠다는 점 (은근히, 아니, 대놓고?) 전제로 한 요건으로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독신/비혼/1인가구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 세입자 권리 보장도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터무니없이 오른 전세금에 값싼

집을 갑자기 알아보러 돌아다녀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되는) 환경의 공간에 속아서 입주하게 된 뒤 땅을 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드러내는 노골적 동성에 혐오를 묵묵히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내 돈 들어보일러 고치느라 화병나지 않아도 되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권리 보장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정책과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디서 어떻게 무슨 수로 살아갈지 머리를 싸맨다. 사람의 삶 살이에 맞춤형 제도의 운용을 기대하는 일이 과한 희망이 아니길 바라며, 모두가 누우면 따뜻하고 아침이면 별드는 집에 안심하고 누워 잠들 수 있기를 바란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2010.4.20)

[인권오름] 가족정책 토크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더지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2009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12월 한나라당의 조진래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종에 따른 모욕적 언행을 포함하여, 고용·교육·재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답보 상태이나, 지난 4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종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조예 제정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다문화 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한 해 3만 건을 넘기 시작하여, 이후로는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한 해 3만~4만 건 내외로 추산된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외국인 체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귀화자는 2만 5천명으로, 이중 한국 인과의 혼인에 따른 귀화가 68%, 한국인 부모에 따른 자녀의 귀화가 29%이며, 이중 여성 귀화자는 약 76%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한 ‘외국인’의 수에 관한 통계들은 공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암시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질적인 외국인, 소위 ‘제3세계’ 이주민들에 대해 동화 모델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제안되는 가운데, 특히 아내, 며느리, 어머니라는 ‘소명’을 전제로 체류하

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동화정책 및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 교육 문제라는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활발히 제안되고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4월 20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네 번째 가족정책포럼 <다문화정책과 가족구성권>의 발표자였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은 이러한 ‘다문화’, ‘다문화가정’은 어느 새 복지정책, 지자체가 주도하는 문화행사의 블루칩이 되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트렌드로서의 다문화를 지적했다.

다양한 경계 위에 선 다문화 트렌드의 이면

‘다문화’라는 키워드는 ‘결혼이주-여성’을 매개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주노동통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재현되며,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 그 자녀들은 다문화 가정으로서 두드러지게 재현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지위 규정 또한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으로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난민 간의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은 제외되고 있다. 결혼이주자 그룹에서 미등록 이주의 비율이 늘고 있으며 이 미등록 이주여성/남성에 대한 처우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자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외국인 주민으로서 관리 및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를 통해 구성된 가족은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다문화 가정’으로 관리되며 ‘외국 국적’이 아닌 ‘외국 태생’이라는 경계를 상징하게 된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의 가족은 여러 가지 (분명치 않은) 법적, 정책적, 문화적 규정과 경계 위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관용’의 얼굴로 가려진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은 ‘혼인’이라는 이벤트만으로 이야기될 수 없다. 다른 가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조건, 개인의 권리와 선택으로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들과 관계한다.

2005년도 가구 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설동훈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은 출신국에 있는 원가족을 부양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60%가 취업 상태(한국인 여성의 취업률을 웃돈다.)에 있으며, 미취업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열기가 높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하거나 사회적 구성원 협상력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언어, 문화 장벽과 친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도 장벽이지만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취업, 사회활동, 여가, 소비 등에 있어 남편에 대해 협상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간혹 여권을 빼앗거나, 이혼을 무기로 삼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지위에 머물게 된다.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과 동시에 이혼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건수가 2007년 보다 30% 증가했고,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 건수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 건수의 2배에 달하며, 증가율 역시 전년 대비 40%에 육박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과 무관하게 체류 자격이 인정되도록 체계가 개선된다면, 이혼률이 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불안정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위가 가족 내의 취약한 여성의 지위와 고충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은 한국 여성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빈 공간을 ‘정상 가족 만들기’라는 환상을 통해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트렌드’는 인종, 계층에 대한 동정심을 매개로 한국 사회의 ‘관용’적 표정을 전시하는 데 급급하다. 특히 가족이라는 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추며 가족 안에서의 이주여성의 현실과 투쟁에 대해서는 무감하다. ‘다문화’는 최신의 현상이 아니다. 인종 편견과 차별의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5차 가족정책포럼

주거제도와 가족상황차별 : 전세자금대출문제를 중심으로

(2010.9.29)

[발표문]

35세 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대출 허용 집단민원 경과 보고

타리 (진보신당 성장치위원회)

35세미만 단독세대 전세자금대출 불허 대응과 관련된 경과

- 3/23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토론회 (가족구성원연구모임,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4/15 '35세 미만 1인 가구 국민주택기금 신청자격 배제'에 대한 질의에 국토해양부의 '불가' 답변(조승수 의원실)
- 4/23~5/10 '35세 미만 1인 가구 국민주택기금 신청자격 배제' 철폐를 위한 온라인 민원인 모집(진보신당)
- 5/11 '35세 미만 1인 가구 국민주택기금 신청자격 배제'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진보신당)
- 5/12 소수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토론회(진보신당)
- 5/19 500여명의 집단민원 제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담당자 면담(진보신당)
- 7/14 집단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불가' 답변

○ 참고 자료

1. 4/15 조승수 의원 질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요구자료 제출

1. 개인수요자대출의 대상에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배제한 법적 근거와 배경
2.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상자격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3. 1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조승수 의원)

※ 작성자 :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행정사무관 황현주(☎2110-6221)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끝.

1. 개인수요자대출의 대상에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배제한 법적 근거와 배경

□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주택법 제60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자 등에 대한 용자(주택법 제63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에서 대출 대상자를 '만20세 이상인(단독세대주는 제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규정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 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자
3.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자
4.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

□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대출상환 원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 한정된 재원 여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대상부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

□ 따라서,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2.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상자격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 추가 재정소요(추정) : 총 59.2조원(년간 1,716억원 소요)

<산출 근거 >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05)
 -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 가구수 : 1,042,471 세대
 - 20세 이상 35세 미만 인구 : 11,430,252명

○ 대출가능 대상(추정) : 986,262 가구

구 분	연령별			
	합계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1인 가구수	1,042,471	268,041	410,775	363,655
연간급여 3천만원 미만 비율('06, '07)	94.6%	99.3%	96.6%	88.9%
대출 대상(추정)	986,262	266,164	396,809	323,289

- 가구수 대비 대출 비율(2009년) : 0.29%
 - 2009년 주민등록세대수 : 19,261,292 가구
 - 20세이상 35세미만 1인가구(1,263,761) 차감후 : 17,997,531가구
 -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 수요자대출 건수 : 53,064건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호당 대출 한도 : 6,000만원

3. 1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 독신자, 학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09.5.4)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하여 주택법에 근거를 마련('10.4.5)하고 세부 기준 마련 중

□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5년도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 가구수 기준으로 **최고 59.2조원(년간 1,71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자금 운용상 허용 곤란**

○ 대출 대상 확대는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어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운용 취지에도 위배

* 유주택자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

○ 향후, 기금 재원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경우,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 확대방안을 장기 검토할 계획

2. 4/20 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35세미만 1인 가구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허용하면 연간 17백억 추가 소요, 전체 기금의 0.03%에 지나지 않아 배제근거 없어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청년층 1인가구는 소외되고 있음. 점점 늘어나는 도시거주 청년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35세미만 1인 가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전체기금의 단 0.03%의 증액으로 35세미만 1인 가구에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짐. 늘어나는 규모에 비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 증가 및 빈곤 격화...‘살 집’이 없다

- 인구성장세 감소와 가족구성의 변화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1인가구는 현재 20%까지 증가함. 마포구 일부지역의 경우 40%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2030년에는 2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

구 분(천가구)	'95	'00	'05	'08	'12	'17	'20	'30
일반가구	12,958	14,312	15,887	16,673	17,596	18,547	19,012	19,871
1인가구	1,642	2,224	3,171	3,357	3,589	3,907	4,109	4,713
2인가구	2,185	2,731	3,521	3,781	4,128	4,559	4,844	5,583
3인가구	9,131	9,196	9,426	9,535	9,879	10,081	10,058	9,576
4인이상가구	6,495	6,453	5,904	6,038	6,197	6,250	6,192	5,779

<1인 가구 추계, 국토해양부>

- 소형주택의 비율과 건설비용 모두 감소하고 중대형의 건설비용은 크게 증가함. 1인가구를 위한 39㎡의 주택은 소량만 공급되고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항에서 단독세대주의 신청가능 면적을 40㎡ 이하로 규정함. 가족상황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을 규정하는 항목이 많음. 2010년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은 39㎡:49㎡:50㎡이상=650호:3000호:10200호.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합 계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60㎡이하	131,936	220,686	236,414	169,622	138,986	135,443	121,059	145,419
60~85㎡	207,570	224,522	303,876	278,006	212,308	200,910	177,957	201,968
85㎡초과	93,982	84,646	126,251	137,754	112,506	127,288	170,487	208,405

<건설비용 현황, 국토해양부>

- 최근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지금 추진 중인 ‘준주택’은 민영에게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형 고급 오피스텔이나 실버타운 이상이 되기 어려움.

- 도시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29세미만 청년층 1인가구는 다가구주택, 입차의 거주비율이 높고, 비도시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노인가구는 일반단독주택, 자가비율이 높음. (1인가구의 74.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가구는 최근 고용불안의 증가와 함께 고시원, 반지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 1인 가구의 빈곤화 역시 두드러짐. 1인가구 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일반가구 평균소득인 249만원에 크게 못 미침. 2009년 1인 가구의 3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줄어 1인 가구 소득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불황으로 인한 타격이 1인 가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주거비 지출 비중은 크게 높아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은 20%대로 전체가구 지출 비중인 10%에 비해 크게 높음. 주거비 부담이 큰 보충부월세 비중은 2000년 20.0%에서 2009년 27.4%로 증가함.

○ 35세미만 1인가구에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허용하야

-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자급별 개요

자금종류	신청자격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만 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자 · 만 20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6개월이상 무주택인자

(출처: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 2010. 1. 4.)

-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주택법 제 60조)하였으나 35세 미만 1인 가구에겐 대출이 제한되어 있음.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나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토해양부는 대출을 세대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기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우선하여 대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공급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형평성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 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자
3. 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자
4.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 35세이상인 단독세대주**

-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를 제한하는데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문제가 있음.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특정 나이와 가족형태에 따라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차별의 소지가 있음.

- 국토해양부는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5년도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가구수 기준으로 최고 59.2조원(년간 1,71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자금 운용상 허용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유주택자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 축소를 우려함.

<산출근거>

o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05)

-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 가구수 : 1,042,471 세대
- 20세 이상 35세 미만 인구 : 11,430,252명

o 대출가능 대상 (추정) : 986,262 가구

구 분	연령별			
	합계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1인 가구수	1,042,471	268,041	410,775	363,655
연간급여 3천만원 미만 비율('06, '07)	94.6%	99.3%	96.6%	88.9%
대출 대상(추정)	986,262	266,164	396,809	323,289

o 가구수 대비 대출 비율(2009년) : 0.29%

- 2009년 주민등록세대수 : 19,261,292 가구
- 20세 이상 35세미만 1인 가구(1,263,761) 차감 후 : 17,997,531가구
-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 수요자대출 건수 : 53,064건 (5조 3천억 가량)

o 근로자서민전세자금 호당 대출 한도 : 6,000만원

- 그러나 연간 1,716억원 추가 소요는 전체 건수(53,064건)와 비용(5조 3천억 가량)대비 0.03%에 지나지 않음. 추가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체 대출비율에 0.0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 유주택자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35세 미만 대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음. 연령에 따라 대출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연령별 형평성에 어긋남.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허용하여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권요름】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나영정(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8월의 끝자락, 종로 3가에는 틈새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였다. 올해 봄, 35세미만 1인 가구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집단민원인을 모으기로 했다(<http://www.newjinbo.org/xe/ytsignature>). 보름 동안 500여명이 모여 5월 19일 국토해양부에 집단민원을 제출하였는데 두 달 동안 미루고 미루다 돌아온 답변은 달랑 두 장.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부족하고 대출은 부양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왜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한지, 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가 단지 가족형태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속 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 (틈새모임)”이라는 다소 긴 모임을 정하고는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면서 그 규정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과 노력은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공성이라는 틀은 아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의 이름으로 나름 주거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며 무주택서민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시중의 다른 주택에 비해 최대 50%까지 저렴하다고 하지만 선뜻 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또 다른 빚을 예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가 한 것은 규제완화밖에 없다. 당연히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고시원과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은 35

세미만의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대책이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거의 공공성이란 뭘까. 주로는 신규건설과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공급,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장애, 나이 등에 따른 쿠퍼제 도입, 토지 공공성 도입, 강제퇴거 금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 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틈새들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대안적으로 제시된 주거의 공공성에도 틈새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거는 삶의 터전이며 다양한 삶의 양식이 시작되고 타인, 세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주거는 계층적 차이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집은 사회와 분리된 가족의 공간이라고 인식되는데, 이 가족은 관습과 제도를 통한 인정의 영역이다. 하지만 계층이라는 물질적 구조와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정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정책은 철저하게 가족을 통해서,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제도화되지 못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회적 관계가 차단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배분되는 구조, 주거가 할당되는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은폐되기 쉽다. 이런 의미들이 고려된 공공성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소수자들도 주거권의 감각을 가져보자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만난 틈새들은 주거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의 운동을 확장해나 가려고 하고 있다. 기존의 주거권 운동의 주체들은 철거민으로 대표되었는데, 주거의 문제에 대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집은 소유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바뀔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또한 아파트 분양에 집중되지 않게 될 것이다. 소수자들이 주거권에 대해 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소수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집과 집을 둘러싼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차별이나 폭력의 위험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공간을 점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수자들이 어떤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은 가격에 따른 접근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어떤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틈새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생생한 사례를 모으고, 우리의 요구를 정식화해보겠다는 계획을 나누었다. 그 노력은 아마도 주거의 공공성이라는 틀에서 다른 이들과 만나게 할 것이다.

[발표문]

청년 빈곤문제와 주거권

김순숙

청년세대의 독립불가능성과 청년실업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른 것은 2007년 대선을 축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88만원 세대”의 출간을 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세대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별 저항없이 다루어지게 된 것은 청년 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다수의 현실인식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유니온을 비롯해 새로운 시기의 청년운동담론이 생겨난 점들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이 주제가 발생시킨 주류담론들은 청년의 세대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의제 속에서, 지금까지 주체로 동의되지 않았던 세대를 주체로 인정하거나 혹은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에 가깝다. 청년문제(정확히는 화제)의 발화점은,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맹신해 온 인서울 4년제를 졸업해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부조리는, “4년제 졸업한 청년들조차” 피할 수 없는 보편적 노동 불안정화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청년들 만큼은” 걱정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연령에 대한 온정주의의 일 수도 있었다. 실업을 비롯해 임금노동의 불안정화 등 보편적 문제들을 세대적 특성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보편적 문제에 대해 선별적 해답을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해답들이 주체적 청년들의 운동은 될 수 있을지라도 청년주체의 운동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년기를 사회진입의 시기, 혹은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가정할 때, 청년세대에게 산적한 기반한 문제점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가 임금노동시장 진입으로 위해 대학의 훈련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통해 경쟁을 관리하는 문제, 또 강요된 학습노동에 대해 오히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요구하면서 진입장벽을 증첩시키는 문제, 높은 주거비용과 무보조상태로 인한 독립불가능성 등 문제점은 주로 진입의 불가능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노동시장진입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각의 문제점들이 청년세대의 특성에 대한 독립적 의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문제점들의 교집합이 바로 청년 의제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청년세대를 진입시기로 규정하지 않고 가족 안에서 인적소유관계에서 소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계층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청년세대의 의제

로서 실질적 가족구성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사회가 이른바 “정상가족”을 문화적-제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모른척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보장에 있어서 생존 자체를 볼모로 잡고 가족구성 방식의 강요하고 있는데, 주거와 생활비용의 면에서 진보신당이 제기했던 35세 미만 1인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불안정 문제, 근로장려세제의 자녀부양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성부부와 혈연자녀로 이루어진 4인가구로 대표되는 “정상가족”의 기준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골레라면, 이 기준을 근거로 한 제도는 현실적인 면에서의 골레다. 이 골레들은 청년세대가 통제상황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가족구성에 있어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 복지가 여전히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러한 통제적 요소들에 대해 부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은 가족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용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시민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보편적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개인의 관계설정에 대한 사회적 간섭을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에서 이탈을 제도적으로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세대(즉, 청소년세대)에게 있어 이 점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포기하면 편하다. 이게 무슨 소리오.

[발표문]

주거제도와 비혼자 차별

더지 (언니네트워크)

1. ‘비혼’은 복지정책으로부터 차별당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누군가가 ‘차별받고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어떻게 차별이냐’는 대답을 돌려받기 일쑤이다. ‘비혼’의 경우 더욱 그런 것 같다. 한겨레21에서는 ‘비혼자는 차별당하는가(2008.3.13)’라는 대담에서 ‘저출산 대응책이 기혼-유자녀가족에 대한 배려인가, 비혼자 차별인가를 쟁점으로 삼았다. 이는 ‘비혼 차별’이 기혼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문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논의였다.⁸⁾ Daum의 한 블로거는 글⁹⁾에서 ‘자유와 책임, 평등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며

8) 당시 패널은 언니네트워크와 한겨레21 기자, 두 명의 기혼-유자녀 여성이었다. 패널이었던 한겨레21 기자는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혼가족, 유자녀가족에 대한 혜택이 비혼자에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비혼자 차별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9) <http://blog.daum.net/21cnew/16223719>

비혼자가 권리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비혼’이 어떻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저출산 문제’라는 국가적 위기관리 정국은 ‘결혼-출산-양육’의 장소로서의 가족을 지지하고 재생산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 관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얼마나 유효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겠지만, ‘혼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혼자는 차별받는가?라는 반문에 가까운 질문 또한 이러한 효과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비혼’을 부담, 책임, 제도적 규정에서 ‘자유로운’ 자연상태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상태는 ‘박탈’에 가까우며 박탈의 조건과 상태를 생산하고 유지하도록 고안된 권력망의 손아귀 안에 놓이게 되는 것¹⁰⁾에 가깝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제도적 지지와 구제로부터 배제된다는 것, 어떤 존재들이 사법적, 제도적 고려 대상으로 집단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오로지 시장에서의 자기 가치에 의존하여 살아남아야하는 냉혹한 현실에 거주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자기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은 소수의 성공‘신화’를 제외하면 계층, 성별, 인종, 나이, 학력 등으로 차이화된 개인들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장에 속박되는 것이다.

혼인-출산-양육과 같은 공식화된 생애주기는 제도적 문화적 지지를 받고 있다. 비혼의 생애주기는 ‘혼자 살다 외롭게 죽는’ 괴담뿐이다. 비혼의 생애전망은 제도적인 지지가 부재한 채로 시장에 맡겨진다. 복지서비스의 공백은 시장화된 영역에서 공급되거나 가족구성원의 헌신과 봉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 비혼 자녀 역시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고충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미미한 복지정책마저 상당부분 가족을 기본단위로 제공되며 비혼 자녀들은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복지 대상으로 고려된다. 이는 세대재생산을 하지 않는 자들의 재생산 조건은 제도적 고려사항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가족 제도 외부에 있는 다양한 개인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지지체계는 전무하며 비혼의 생애전망은 불투명한 채로 남겨져 있다.

2. 주거제도에서 비혼 차별

비혼의 주거 경향

10) 버틀러,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에서 국가의 사법적, 제도적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며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는 3,170,675명(약300백만명)에 달하며 이중 1) 법적, 사실적 부배우자(미혼, 이혼, 사별)로서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2) 결혼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과 노인인구층을 제외한 25세~54세 1인가구는 전국 1인가구의 약 88%인 2,802,636명이었다.¹¹⁾ 이 중 이혼과 사별을 제외한 미혼 비율은 75.4%였다. 전체 1인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인가구는 비혼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거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표1】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것이다. 비혼의 86%가 1인가구 형태로 살고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표1】 서울시 연령별, 거주 형태별 비혼

단위:명(%)

	전체			1인 가구			비혼연가구		
		남	여		남	여		남	여
전 연령	711,732 (100)	335,038 (47)	376,694 (53)	611,490 (86)	284,325 (40)	327,165 (46)	100,242 (14)	50,713 (7)	49,529 (7)
25~39세	342,391 (48)	201,485 (28)	140,906 (20)	288,754 (41)	169,090 (24)	119,664 (17)	53,637 (8)	32,395 (5)	21,242 (3)
40~59세	142,984 (20)	68,672 (10)	74,312 (10)	132,986 (19)	63,608 (9)	69,378 (10)	9,998 (1)	5,064 (1)	4,934 (1)

따라서 전체 1인가구를 기준으로 1인가구는 비혼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비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혼은 1인가구 경향을 띠고 있다. 비혼의 주거를 사코할 때에 1인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1인가구 주거실태와 주거제도의 문제

김옥연 외(2009)¹²⁾에서는 서울시 청장년층 비혼 1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서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울시 1인가구의 49.6%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전체의 76%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으로서, '1인가구'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비자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외의 유사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는 이는 '부양가족없음', '연령이 낮음', '생활면적이 좁음'등을 이유로 주택정책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표2】 1인가구 관련 주요 주택정책 요약¹³⁾

구분	주요내용
분양주택 공급제도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동일순위 내에서는 분양가족수를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u>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낮음</u>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대출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하고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의 경우 1인가구의 주요거처인 <u>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u>
국민임대주택 공급	40㎡이하의 주택에 대해 단독세대주의 입주가 가능하나, 이 규모의 <u>소형 임대주택 공급여조</u>
소형주택 의무비율	<u>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u> 경향에 따라 저소득 1인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선택기회의 감소
역모기지제도	일정연령 이상의 주택소유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 없거나 젊은 독신가구는 <u>해당되지 않음</u>

3. 가까이 있는 도시-청년층-비혼 여성의 이야기

원가족의 소득 수준과 비혼

젊은 비혼여성들이 원가족으로부터의 유일한 독립수단처럼 간주되는 '결혼'을 택하지 않고 세대분리하게 되는 것은 빈곤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져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집을 떠나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높은 주거비용때문에 유사주택(하숙, 원룸, 고시촌)에서 시는데 이러한 주거환경은 결혼 혹은 취업하기 전까지의 임시거처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거안정성이 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 김옥연, 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7권 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13) 손재영, 김재환(2009), 주택청약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주택연구 제17권 2호 p.157, 전게서에서 일부 재인용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원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 젊은 비혼 여성이 중,소형 주택에 살기란 원가족의 도움(혹은 출혈)없이 보증금 등의 목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젊은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거치지 않는 한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원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초기의 주거비용을 보전하면서 살게 된다. '투자를 위해 아파트를 사놓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아니라면 부모의 지원은 결혼을 위한 미래의 지출 계획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도 그나마 부모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모와 같은 후견인이 없거나 원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월세의 부담을 안고 한없이 열악한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소득 수준의 청년층이 자기 소득의 일부, 상당부분을 주거비용에 지출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재생산 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빈곤층의 '비혼' 현상의 증가로 순환된다.

같이 모여 살기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듣는다. "마음 좋은 부잣집 언니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게 내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자조섞인 이 이야기는 홀로 좋은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로 다가오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젊은 비혼여성들은 실제로 지인, 혹은 파트너와 보증금을 합쳐 좀 주거비용으로의 지출을 낮추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낮은 월세로, 전세로, 주택으로) 옮기기도 한다. 또, 지인이 원가족의 도움이나 자기 경제력으로 마련한 전세 주택에 동거하면서 현재보다 더 낮은 월세, 또는 같은 월세로 부엌이나 거실, 풍광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도 한다. 이는 혼인으로 이뤄진 가족 역시 부부 2인 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비혼 여성의 주거 전략일 것이다.

통계적으로 비혈연 일반가구 형태로 살고 있는 비혼이 14%로 적은 비율이 아닌데다, 비혼 여성들이 가사노동이나 돌봄을 함께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사는 '모여살기' 전략이 비혼여성의 생애전망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반면, 통계적으로는 1인가구로 잡히지만, 무거운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동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개개인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비혼을 위한 주거제도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렇듯 다양한 주거양식들도 고려해야한다.

4. 비혼을 위한 주거제도란?

‘저출산 위기’가 대두되면서 혼인-출산은 국가재생산을 위한 절대절명의 요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청년층이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각자가 지불가능한 주거비용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빈곤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며, ‘영구히 젊은’ 것이 아닌 비혼이 나이들어가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부모 가정이나 등 가족을 꾸리고 사는 이들의 가족상황뿐만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자들을 ‘가족없음’이라는 영역으로 박탈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의 형태(홀로 살기, 파트너와 함께 살기, 비혈연공동체 구성하기 등)를 파악하고 각 계층이 지불가능한 주거비용과 주거에 대한 욕구를 지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혼을 위한 주거제도는 하나가 아니라, 1인가구, 청년빈곤,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파트너십, 비혈연공동체의 영역과 관계하면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표문]

성소주자의 주거제도 배제

소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들어가는 글.

말은 바는 주거정책으로부터의 성소수자 배제 문제지만, 여기서 주요 사례가 되는 것들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들어온 온라인 내담내용이나, 면접 시 기록된 파편적 이야기,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에 국한된다. 레즈비언의 주거권 문제를 고민하면서, 혈연관계를 전제로한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야 막 시도하면서 겪었던 본인의 문제가 사실 레즈비언이라는 겪는 문제라기보다 결혼여부에 따른 비혼 여성 차별,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차별과 같은 주제들에 더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중삼중고라니 정말 서럽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담 어느 하나에 얽혀갈 수 있

는 것 아닌가하는 간사한 맘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집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미성년자라 번번이 집으로 잡혀가는 10대 이반이나, 결혼적령기의 꾀박을 이 악물고 견디는 20-30대 레즈비언 처녀(!)들, 남편을 떠나선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할 기혼레즈비언 주부(!)들, 버는 족족 살인적인 월세에 흘러보내는 레즈비언 커플들의 이야기를 놓치게 될 테니, 분명 주거권 문제는 성적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하다. 여기서는 제도에서 배제되었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을 짧게 풀어내고자 한다.

단독세대로 읽히는 2인 가구: 동성애자 커플의 경우

“가족구성이 너무나 이성애 중심적이다.”라는 아주 새삼스런 이야기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성 간 혼인, 출산,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소위 ‘정상가족’ 드라마에서 가능한 주택정책은 성소수자로 구성된 가구를 가구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이라기보다는 아예 인식불가라고나 할까. 동성애자 커플이 자신의 주거실태를 신고할 리가 있나, 그럴 제도가 있나, 누가 물어보기를 하나, 그러니 문제가 드러날 수가 없다. 성소수자 주거권 문제는 실수요자의 비가시성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나 연구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닌다.

주택정책에서 주택 공급의 단위는 ‘세대’이고, ‘세대주’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대표하며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20세 이상부터 세대주로 인정된다. 하지만 동성애자 커플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단독세대주 2명이 같이 사는 2인 가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배우자로, 한 가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성애자 커플이 어떤 제도에서 ‘이탈’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각자 따로 임대아파트 신청해 놨지. [질문자: 근데 그거 단독세대주는 좀 힘들지 않아?] 그래도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집에서)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는 거 같아. C랑 같이 나중에 귀촌하려고 계획 중이야 [맞아 요즘엔 내려가면 정착금도 준다던데] 그건 아마 가족이 같이 내려가야 할 걸. (활동가 A와의 대화)

동성커플은 가족관계로도 부양가족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데 청약을 통한 주택공급에서 부양가족 수로 가점제를 둔다는 걸 고려하면 동성애자 커플이 우선순위에 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또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하다는 점에서 2인 가구에 적절한 주거형태

가 아닐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있어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독세대주로 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동성애자 커플들이 공공기금으로 출현된 주택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보여준다. 허물며 놓친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대책도 가족을 동반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대출, 집수리비,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다.

청약에 있어 공급 기준이 되는 ‘세대’ 개념/단위를 ‘가구’로 바꾼다면, ‘부양가족’의 기준을 동거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한정된 주택기금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부양가족’을 지닌 저소득세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발상이라 오해를 살까 불안하다. 실제로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가족개념이 시대착오적인 건 아닌지 조심스레 의심해 볼 수는 없을까?

‘가족’의 의미 확장이 무리한 요구?

지금까지는 이성을 통해 결혼한 부모와 자녀, 부모의 성역할 분업을 통한 경제적 협동, 자녀 양육, 돌봄 등이 이뤄질 수 있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재혼 가구, 맞벌이 가구, 자녀 없는 부부, 기러기 아빠, 모계친, 비혈연 가구... 여기에 동성애자 동거 커플도 추가해 본다면 이미 이성애/혼인/혈연/출산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개념/단위의 기준은 불안정한 상태다. 가족 구성 형태와 내용 및 성격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나 사회가 가족의 현실적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이상’ 현상으로 보는 태도는 정부가 실수요자의 조건변화를 반영한 주거 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정부가 원하는 ‘가족’형태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차라리 제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애인과 7년 쯤 만나고 있지만 어떻게해도 가족관계도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둘의 관계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애라도 행복하라고 남자한테 보내줘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당당하게 그녀를 제 동반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둘이 붙잡고 같이 죽자고 맨날 울어요.(30대 내담자 B_전화)

상담원님, 저번에 말씀 드린대로 금요일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바로 신고했는지 버스정류장에서 경찰에 잡혀서 집으로 그냥 왔어요. 엄마는 자꾸 참고 학교 다녀라고 하고 아빠는 학교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몰라요. 저한테만 엄마 괴롭힌다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는데 무서워요. 정말 먹지도, 자지도 못하겠어요. (10대 내담자 C_게시판)

한편으로는 가족이, 세대주가 모든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도 미심쩍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항상 우선순위를 주는 건 모든 세대주가 사족에 대해 정말로 최선을 다할 때 진짜 의미가 있겠다. 가족부양의 의무를 지니는 세대주가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가족에게도 부양의 의무를 지는지는 미지수다. 혈연관계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상황들과 그 가족관계의 불안정성은 성소수자 구성원의 주거권을 취약하게 만든다. 기존 가족제도에 ‘없혀’ 살아가는 어떤 성소수자는 세대주의 집에서 부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에서 편히 공책도 펼 수 없는 10대 이반들이 가출을 감행하고, 결혼 압박에 독립을 강행한 20대 레즈비언들이 싼 값에 덜 안전한 주거환경을 택하도록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가족에 대한 ‘뺨타지’ 역시 주거 정책이 있어서 가족개념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주거권과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만 논리가 직결될 수 없기도 한다. 설명 동성결혼을 통한 동성애자 커플의 가족형태가 제도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정책의 보수성(세대 개념/단위의 총체적 문제)을 재고하기 전에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박탈의 문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가족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 성소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 나올 때도 “저 애한테로 시집(장가)갑니다”라고 말도 못 꺼내니 부모님께 손벌릴 수도 없고,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축하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전 지원은 큰 희망이었다.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이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낮다는 점, 주거비 지출비용 역시 전체가구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인가구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삶을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하게 된다. 또, 2인가구로 살아가는 동성애자 커플의 경제적 조건을 어떻게 열악하게 만드는지도 보여준다.

10대 시기에 정체화한 많은 내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20살만 되면 바로 집에서 나올 거예요”이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최대한 늦춰서 20살에 독립을 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신청자격을 얻기까지는 15년, 그동안에 많은 여자와 만나고 헤어지면서 가족을 꾸렸다가, 풀었다가 할 거고 많은 돈을 월세로 지불하게 될 거다. 나이상한은 원가족에 속해있어야 하는, 혹은 속해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멋대로 규정해 버린 셈이다. 또 1인 가구에서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놓고 ‘나이 어린’ 1인 가구를 주거 정

책에서 배제한 것이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몸 누일 곳을 가질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계획 자체가 남의 일**”이다. 이전 자발적으로 가족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가족구성을 거부하는 경우와는 다른 문제다. 파트너와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부양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를 얻지 못하게 된다.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주거환경의 위태로움, 월세 계약상태의 장기화와 빈번한 이사는 성소수자의 큰 집인 주거비의 경제적 안정 제도 진입을 막는다.

저와 파트너는 약 2년간 함께 살고있고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혼인할 수 없는 처지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coming out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가꾸어온 화분 하나도 친구나 가족들에게 우리 둘 공동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을 반반 나누어서 각자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참 싫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공동 명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담자 F_게시판)

자꾸만 비가시적 존재가 된다는 건 최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나마 보장받아야 할 최악의 사태에서의 최소한의 안정망도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서류 상으로 둘의 공동생활을 증명할 것이 없는데 현실이라 레즈비언들 조차 동거를 시작할 때 어떤 일들에 대비할지 잘 알 수 없고, 헤어질 때 한 쪽이 뒤통수 때리는 일을 마주했을 땐 그냥 울고 마는 경우들도 있다. 둘이 같이 살아왔고, 가구로서 인정받을만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장치를 만들어 의무화해서(하지만 의무화는 조금 위험할 수도) 그 둘 사이에서, 그 둘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동성 커플의 동거에 국한한 특별제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들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볼 수는 없을까 궁금하다.

#성소수자의 <주거권>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확장된 개념의 주거복지정책

몇몇 내담과 이야기거리를 주거문제로 고민해 본다는 건 주거문제는 주택시장의 진입여부에 달린 것도 아니고, 부동산 소유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걸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정부정책이 의도적

으로 성소수자를 배려했다는 정황을 찾기가 어렵기에 이를 중심으로 비판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때문에 가족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 상황도 생기고, 통계 표하나 없이 뜬구르뭇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성소수자의 주거권 실태조사가 엄밀히 진행돼 실제 정보가 축적돼야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제도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성수자들의 수요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성소수자의 <주거권>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몇 가지 고민지점을 확인한 후 마무리 하려해본다.

일단 주거는 주거의 안정이 성소수자로서의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짚고 가본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오늘로 끝날 거라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다. 또 성소수자에게 주거권과 관련한 권리를 새로운 가족개념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게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가족’ 없이도 살 수 있는 권리 둘 다를 의미한다. 가족개념만을 중심으로 볼 때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룹 홈이나, 10대 쉼터의 경우들이 하나의 가족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을런지 어떤 식의 더 다양한 가족관을 상상해야 할까 고민이든다. 한편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주거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성소수자들이 호모포비아적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1차적 안정망이 되어 준다. 하지만 ‘집(혹은 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독립된 공간은 사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을 가장 개인답게 만들어 준다. 더럽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모텔비를 날리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쉼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공간이든 주거공간은 (성소수자가 아닌)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곳이지 않나? 아우팅 위험으로부터, 주인집이나 이웃의 의심스런 눈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학교 때문에 전세로 얻은 집에 애인이랑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근처 가게 아저씨가 쳐다보고..그 아저가게 아저씨 아들도, 막 저희 손잡고 지나가는데 웅얼웅얼 욕하는 거 같아요. 큰 방 창문으로 내다보면 맞은편 집에 옥탑방이 있는데 주말에 돌이 방에 누워있는데 아줌마가 위에서 노려보고 [총력] 옆 집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랑 저희 애길 하면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들은 뒤로는 신경이 날카로워 졌어요. 얼마 전에는 일찍 들어와서 분명히 문 잠갔는데 어제 아침에 잠깐 슈퍼 가려고 보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잠겨 있지는 않고 혹시 누가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쳤어요.(20대 내담자D_게시판)

이런 의미에서 주거권은 단순히 집 소유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

에서만 그치지 않고, 주거구입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인 가족 형태들에 주목하면서 그에 맞는 주거 정책이 복지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주거복지에 대한 한 설명에 따르면 “주거 복지란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요소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화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거주자의 관계, 거주자의 사회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가 도출된다. 그렇다면 그 복지의 내용 역시 성소수자 나름의 경험들 속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 든다. 삶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주거형태 환경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드러날 수록 어찌면 여타 다른 사회적 계급(층)의 문제가 더 쉬어 나와 성소수자들의 경험이 분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 역시도 성소수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한 권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먼저 고민하신 분들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웹사이트

-진보복덕방 <http://www.culturalaction.org/housing/>

미류, 어디에도 살지 않고 어디에나 살고 있다: 동성애자 주거권의 현실과 과제

미류, 교작은 계속 살 권리가 있다: 동성에 커플의 입차권 승계

토리, 차별만 있고 대책은 없는 청년 1인 가구정책

케이,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http://www.rda.go.kr/>

-가족구성권연구모임까페(비공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lsangdam.org/>

상담팀, 2009-2010 상담사례집(미출간) *모든 내담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참고] 내담자 F에 대한 상담

혼인하지 않은 법적 타인간에도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전세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월세 임대차계약 시에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도 공동 명의로 할 수 있고요, 공동명의 통장 개설은 두 분이 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함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이 그간 해 오신 제테크가 있으실 터이니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통장들을 개설하여 같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칠 때는 계약시 중개인과 집주인 입회하에 공동명의로 계약함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쓰시면 되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중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갈 때 공동명의로 계약한 두 분이 각각 애초 계약시 정한 비율대로 집주인에게 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처음부터 잘 처리해

두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다툼(집주인과 두 분의 다툼, 혹은 두 분 간의 다툼)에서 생길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요, 주택 소유 공동 명의의 경우는 '등기'와 관련이 되는 것인데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 (동네의 작은 복덕방보다는 전국 체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 있는 큰 부동산이 나올 듯 합니다) 를 찾으시거나 법원 등기소 등을 찾으셔서 문의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논문

강미선·장미현, 「가족개념의 대안에 기반 한 주거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안(대안)」(대한건축학회)

기타

케이, 여러 메모들 / 야롱, 여러 코멘트들

6차 가족정책포럼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범주 ; 차별금지법에 담기 (2010.12.7)

[발표문]

왜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하는가

선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 들어가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들어 지켜우실 법하지만) 2007년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이야기해보자. 법무부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일곱 가지 사유(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를 삭제하였다. ‘정차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에서조차 배제된 이 일곱 가지 차별금지사유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지, 사실 여전히 의문이다.

이 일곱 가지 사유가 다른 차별금지사유 안에 완전히 포섭되기 때문에 차별금지사유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배제된 것인가? 아니면 이로 인한 차별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서 법조항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인가, 반대로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어서 차별을 이야기할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로 인한 차별이 드러나는 것은 국가로서 성가신 일이어서 배제된 것인가?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사유로는 차별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 글은 차별금지법에서 배제된 차별금지사유들에 관한 이 끝없는 물음표를 속에서 ‘가족상황차별’이 차별금지법에 담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꾸로 되짚어보고자 한다.

2. 혼인차별과 겹치고도 ‘남는’ 이야기: 가족상황차별의 독자적 의미

먼저 ‘가족상황차별’이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차별금지사유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는 차별금지사유

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가족상황차별과 ‘왠지’ 가까워 보이는 차별금지사유로 ‘혼인’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2007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8002호) 제3조 제1항 역시 ‘혼인’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대해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혼인차별’).

이를 살펴보면, 혼인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지 그리고 이에 따른 혼인차별의 의미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서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혼인 ‘여부’라는 법문의 해석상 (이성과) 혼인을 하였느냐 또는 하지 않았느냐만 주된 논점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혼인’에 대하여 별다른 정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

만약 혼인을 ‘혼인상의 지위(status)’라고 하였을 때, 가족상황차별에 포섭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차별과 가족상황차별이 서로 중복되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인차별이 가족상황차별을 완전히 포섭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혼인차별이 차별금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상황차별이 더 넓은 개념으로서 또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혼인차별 외에 가족상황차별 역시 규정될 필요가 있다. 가족상황차별은 혼인과 출산과 입양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중심적인 가족법 및 가족정책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즉 ‘혼인차별’을 넘어선 다른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상황차별을 ‘가족관계구성과정과 가족구성권 및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같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로 정의하였을 때, ‘혼인차별’만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가족관계구성이 ‘혼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혼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구성을 파악해내는 것은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은/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혼인차별은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연계차별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가족의 돌봄과 관련된 차별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혼인차별과 가족상황차별은 서로 중복되는 차별금지사유가 아니라, 각각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한편, 차별금지사유로서 혼인차별을 의미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혼인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하고, ‘혼인 여부’뿐만 아니라 ‘혼인상의 지위(status)’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비혼 상황에 대한 차별을 논의하기 위하여 법문상의 ‘미혼’이라는 용어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가족상황차별과 얽힌 이야기: 복합차별과 연계차별

다음으로, 차별금지사유들이 갖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례로, 자신의 동생이 레즈비언인 40대 초반의 비혼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건을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이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까?

거칠지만 몇 가지 이유를 같이 고민해보자면 우선, 해고되지 않은 다른 남자 사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동생이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들어,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역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비혼 상황을 이유로 ‘혼인상의 지위’에 의한 차별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40대라는 이유로 ‘나이’에 의한 차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 레즈비언인 가족구성원이 있다는 이유라면, ‘가족상황차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차별이 한 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라는 법도 없다. ‘여성의 나이들’에 대한 차별, ‘비혼 여성’에 대한 차별, ‘레즈비언인 동생이 있는 것’에 대한 차별……. 위에서 나열한 차별사유가 전부 관련 있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차별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차별의 성격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 여러 차별금지사유들이 중첩적이거나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때 드러나는 차별금지사유 간의 관계는 단지 차별금지사유들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과적이기도 하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교차점들은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만이 명시되었을 때보다 차별의 양상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차별’에 대한 언어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차별’에 대해 얼마나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변화가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이 사회의 담론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차별’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다양한 차별금지사유가 명시됨으로써, 차별 사안의 현실적인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법적으로 입체적인 접근과 조망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차별금지사유가 법문에 명시됨으로써 어떠한 차별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차별 사건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차별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차별을 받은 ‘것 같은’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차별피해를 주장하려면, 법조항을 기초로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단계가 필요할 터인데, 이 때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들은 당사자로 하여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가족상황차별은 다른 차별금지법사유들과 마찬가지로 복합차별을 담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위계, 가족 관계 내의 지위에 따른 책임, 제도 밖의 가족 구성에 대한 욕구들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혼인상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 다른 차별금지사유들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데 섞여있는 것이고, 이 다양한 결들을 짚어낼 수 있는 언어로써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하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가족’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현실은, 가족상황차별에서 가족구

성원과 관련된 연계차별을 가시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차별금지법에 어떤 차별금지사유를 더하고, 어떤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며, 어떤 차별금지사유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차별금지사유 간의 경중을 나누어 위계를 긋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의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담는다.

4. 가족상황차별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마지막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2005년 개정 민법은 호주제의 본질적 구성부분인 가계도와 호주승계제도를 삭제하고,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던 가족의 범위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였다.¹⁴⁾ 그러나 그 내용은 혈연과 혼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에 한정하여 중심이 되는 기준으로 ‘정상가족’ 개념을 유지함으로써, 정상가족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족들을 끊임없이 배제와 포함의 논리로 유형화하며, 다양한 가족들을 위계화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갖는 ‘모범적인 삶’에 대한 이미지는, 결혼 및 출산과 양육의 시기와 방법을 중심으로 하나의 생애과정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모범적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진입이 지체되거나 혹은 이미 진입한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문제 또는 사고처럼 다룬다.¹⁵⁾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삶을 왜곡하거나 특정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기능을 해왔다. 즉, 가족의 문제는 다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¹⁶⁾

나이가, (초혼/이성) 부부와 그들의 직계혈족으로 이루어지는 ‘정상가족’은 부모는 성역할에 입각하여 생계유지자와 가사노동자의 분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족 바깥으로부터 복지비용이나 보살핌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자립적 가족’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제로 1960-70년대 우리 정부가 지향했던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⁷⁾ 즉, 법률혼 중심의 가족정책은 국가

14)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2008, 30면.

16)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앞의 책, 34~35면.

17) 양현아, 한국 친족상속법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해석: 1958년-2007년, 가족법연구 제23권 1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친밀성’으로서의 가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들의 성과 사랑의 욕구 추구라는 면에서 이는 억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이성에 혈연 집단에 독점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인정이 사실상 허구적 신화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족애나 책임과 같은 신화적 믿음들이 지금껏 국가나 사회에 의해 자의적으로 특정 집단이 그러한 가족의 요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배타적으로 가족에 의한 인정을 부여해 온 것이다. 특정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가족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선택지들을 억압하고,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현실을 부정한다.

즉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상황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가족상의 해체와 이에 따른 가족다양성의 수용은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5. 맺으며: ‘가족상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반차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가능한 모든 차별사유나 차별영역들을 예상하고 비교적 완벽한 차별목록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사안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규율하여 차별판단기준과 구제방법에 관한 일관되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나 차별영역이 중첩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차별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¹⁸⁾ 앞으로 제정될 차별금지법에 거는 기대도 이와 비슷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가능한 모든 차별 사안들을 차별금지법 안에 제대로 담아내어, 이 사회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충분히 환기하여 차별에 관한 담론이 무수히 쏟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가족상황차별을 수면 위에서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연구결과 등을 보다 정확하고 풍부하게 반영하여 가족상황차별을 법의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가족제도와 관련한 새로운 규범과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법의 언어를 정교하게 다듬는 일은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지만, 그 법이 다루는 영역이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호, 2009, 42~44면 참조.

18)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167면 이하 참조.

[발표문]

차별금지법에서 재정의 하고자 하는 ‘가족’이란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의 정의의 필요성

차별금지법안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권고안이나 2007년 정부안과 노회찬의원안 모두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었다.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이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정의규정 통해 가족상황차별을 가시화하고, 해석의 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2. ‘가족’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

‘가족’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36조를 기본으로, 친족과 상속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뿐이다.

현행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2005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¹⁹⁾이 문제가 되었고, 현행 민법의 규정대로 가족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자는 정부안과 이를 삭제하자는 이경숙의원안, 노회찬의원안이 대립했었는데, 결국 대안가결형식으로 현행법대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민법에 가족개념을 규정할 필요성여부에 대하여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가족해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가족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고, 가족이란 용어는 다른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민법에서 정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찬성론과 “법률상의 가족개념은 현실의 가족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고, 붕괴 또는 해체를 우려하는 가족이란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현실의 가족공동체 내지 사회통념상의 가족을 의미하며, 민법에 가족개념을 규정한다고 하여 이로부터 곧바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법인 민법에 가족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법령에서 사용하는 가족의 개념은 그 개별법의 입법목적취지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각기 다르고 이는 ‘친족,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민법에서 가족개념을 일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이 있었다. 그리고, “개정안에 규정된 가족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고,²⁰⁾ 개정안에서 가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하는”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불명확한 개념이며, 때문에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신분공시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가족은 그 기준이 되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생계를 같이 한다”는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가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규정하게 되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는 바,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19) 2005년 개정되기 전의 (구)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부모나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의 가족에는 포함되나 배우자의 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과 자녀(부부)의 가족이 달라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10.10. 다음과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한 바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며, 제3조 제2호에서는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사별이나 미혼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 그룹홈 및 위탁가정 등 혼인, 혈연, 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혼인, 혈연, 입양에 관계없이 형성된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3.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의 정의의 어려움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할 것인가.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관단지침」, p181

‘가족’이라 함은, 혈연 또는 비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가족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정하여, 가족을 혼인과 혈연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혼인과 혈연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지 못하고, 그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범주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 중에는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취급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가족의 범위를 법률혼,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친족관계 뿐만 아니라 인척관계, 입양을 통한 비혈연 관계 등 혼인·혈연·입양에 관계없이 형성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의 가족상황 정의

가족상황이란 부모, 자녀 관계로 규정. 이는 혈연 관계 외의 입양을 포함, 그 외의 돌봄, 책임, 계약(care, responsibility, commiment)관계에 있는 부모-자녀(parenting) ‘같은’ 관계, 장애를 가진 노인이나 친족을 돌보는 성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가족도 포괄한다.²¹⁾

21)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protects specific familial relationships from discrimination through the grounds of marital and family status. The Code defines “family status” as “being in a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This can also mean a

가족이라 함은, 혈연 또는 비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비혈연 관계도 포함하고자 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정의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가족과 다른 집단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개념정의를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한다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개념요소를 중심으로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모임 안에서 판례상 사실혼 개념을 활용해서²²⁾ 가족의 개념도 가령 ‘사회적,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집단’으로 정의해보자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면, 가족이란 ‘친밀한 개인의 인적 결합의 자유를 기초로 사회적,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집단’ 등등. 그런데 판례상 사실혼 개념은, ‘혼인의사’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요구하며 ‘혼인’의 개념과 ‘부부’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로 차별금지법에서 가족의 개념 규정을 “가족으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와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기엔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순환에 빠지고, 자칫 ‘실제’ 가족과 ‘유사’ 가족을 구분하여 비범주화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교육, 정책 집행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추상적인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 대신에,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정의규정을 혼인, 혈연, 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란 이혼, 사별이나 비혼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 그룹홈 및 위탁가정, 동성커플가족(동성가족) 등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의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말한다.

parent and child “type” of relationship, embracing a range of circumstances without blood or adoptive ties but with similar relationships of care,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Examples include parents caring for children (also by adoption, fostering and step parenting), adults caring for aging parents or relatives with disabilities, and families headed by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ed persons.

22)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함(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의미.

[발표문]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차별 사례

더지 (언니네트워크)

◎ 가족상황차별이란?

‘가족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방식
 인권위원회법 차별판단 지침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정의
 가족 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말한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의 가족상황 정의
 가족상황이란 부모, 자녀 관계로 규정. 이는 혈연 관계 외의 입양을 포함, 그 외의 돌봄, 책임, 계약(care, responsibility, commitment)관계에 있는 부모-자녀(parenting) ‘같은’ 관계, 장애를 가진 노인이나 친족을 돌보는 성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가족도 포괄한다.
 김소임(2007)²³⁾의 가족상황 정의
 가족구성원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가족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지칭한 차별 사유를 ‘가족상황차별’이라 통칭하고자 한다. ‘가족형태’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분석적인 개념으로 쓰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의 상황과 다양한 가족사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족상황차별이란 1) 가족 구성 과정과 2)가족구성원 및 3)가족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족상황차별의 이해

23) 김소임, 「인정 페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가족 상황’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가족상황차별’을 설명할 수 것이다. 여기에 서 명시한 4가지 가족 상황은 차별 사유와 같이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상 황차별’이 포괄하는 범주와 사례들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구분임을 밝힌다.

김소임(2007)의 가족상황 구분

가족구성의 형태 : 재혼 가정, 한 부모 가정, 입양 가정 등 부부 관계, 양육 관계 등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원 : 가족구성을 통해 형성된 가족 내 위치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책임 : 가족구성에서의 자기 위치에서 발생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법 차별판단 지침의 가족상황 구분

가족 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 * 구분은 있되, 세부 정의 없음

1. 가족상황으로서의 가족구성과정

‘가족구성과정’이란 한 부모 가정, 입양 가정, 동성커플가정, 다자녀 가정 등 가족의 특정한 관계 구성 방식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로, 가족의 현재적인 특성은 **특정한 가족사(family history)를 거쳐 형성된 것**이며 당시의 가족 형태는 그 이전의 가족관계의 구성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미혼 입양 등의 이력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가족구성과정은 **가족 정의 상의 차별과 불균등한 가족구성권리에 의해 끊임없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만나 결혼을 하고 혼인 관계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형성된 가족 역시 특정한 가족사를 거쳐 형성된 가족이지만 소위 ‘정상가족’의 가족구성과정은 문제시되지 않으며 이는 이미 가족 전형(family stereo type)과 편협한 가족(법률적, 문화적)정의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에서 다루어야 하는 가족 상황으로서의 ‘가족 형태’는 가족 전형과 가족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가족구성의 권리 상의 불균등함, 그에 따라 특정한 가족 관계 구성 과정 및 그를 통해 형성된 가족들에게 작용하는 차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족구성과정’에서 초점이 되는 가족관계 구성방식이란 크게 혼인 관계와 양육 관계 나눌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혼인 관계와 양육 관계를 ‘제도적 결혼’과 ‘혈연 자녀 양육’이라

는 협소한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파트너십과 돌봄의 관계**를 포괄해야 할 것이며 ‘가족’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기반으로한 해외의 입법례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가족 상황 그가족구성과정

- 특정한 파트너십과 돌봄의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 및 그를 거쳐 형성된 가족관계의 특성.
- 이는 특정한 ‘가족 정의’와 ‘가족 전형’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족구성권리 상의 불균등함을 바탕으로 한다.

사례1 동성가족(필자 주:동성커플가족)에게도 혼인으로 인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발췌) 이에 대하여 뉴저지주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에서는 동성커플에게(법적)혼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하고, 단지 동성커플에게도 혼인한 이성커플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동일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즉 비슷한 상황에 놓인 두 그룹 중 한쪽에만 주어지는 혜택과 편익이 ‘불평등한 본배’인가만을 검토한다고 밝힌 후, 그 결론에 있어서 다수의 견해는 ‘동등한 보호’를 규정하는 뉴저지주 헌법 제1조 1항에 따라, 지속적인관계에 있는 동성커플에게도 이성커플이 혼인을 통하여 향유하는 동일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 p190의 사례1.1가(2.1)-1
판결 : Mark Lewis & Dennis Winslow, et al. v. Gwendolyn L. Harris, etc., et al., 2006.10.

사례2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일부 발췌) 캐나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결혼한 파트너가 이용할 수 있는 사고연금에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파트너를 배제하는 것은 캐나다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하였다. 캐나다 대법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혼인이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만큼 보험법에서 “배우자”를 법적으로 혼인한 사람에게 제한하는 것은 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험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아울러 차별사유로서의 ‘가족관계’를 이루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되는데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 p189의 사례1.1가(1.1)-2

판결 :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Miron v. Trudel, Supreme Court of Canada building Ottawa, Canada, 1995.

2. 가족상황으로서의 가족구성원

김소임(2007)에서는 ‘가족구성원’이란 ‘가족구성을 통해 형성된 가족 내 위치에 관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내의 위치란 보통 파트너십, 돌봄에 관한 관계적인 지위에서 파생되는 가족 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이는 가족 책임을 설명하는 데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가족 상황은 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역사나 상태, 행위에 대한 차별이 가족 전체,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확대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인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그 가족 전체가 낙인찍히거나 ‘부모 노릇’에 대해 비난을 받거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가족 전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을 이유로 한 가족상황차별은 연계(associational discrimination) 차별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또한 특정 가족구성원에 대한 차별(예시에서는 ‘장애를 이유 로한 차별)과 동시에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상황 그가족구성원

- 가족구성원이란 한 가족구성원 개인의 역사나 상태, 행위로 인하여 가족 전체,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뤄지는 것
- 연계 차별을 다루어야 한다.

사례3 사내부부를 자진퇴직의 형식으로 해고시킨 경우

(요약) 해당 판결에서는 자진퇴직의 형식으로 이뤄진 해고가 ‘부당 해고’임을 판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적 해고’로도 보고 사내부부라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사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 사례2.1바(1.1)-2

판결 : 2002다19292 해고무효확인

사례4 (가상사례) 가족원 중 장애인이 있어 가족에 대한 주택임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과 동시에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 가상사례2.2(2)-2

사례5 출산지원금 지급 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OO시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진정인이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재혼 등의 사정으로 세 자녀 모두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장려금의 본래적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OO시장에게 동 장려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결정례집」, 243p

판결 : 2007.11.13자 07진차423 결정

3. 가족상황으로서의 가족 책임

가족 책임이란 가족 관계(파트너십, 돌봄)로부터 파생되는 위치에서 부여되는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가족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

첫 번째로,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특히 고용 차별의 경우 출산, 양육 등이 ‘어머니 노릇’으로 간주됨에 따라 여성의 경우 현재 자녀가 없다고 해도 미래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고용 상의 차별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기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족책임을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이 ‘어머니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가정됨으로써 한 부모 가정의 ‘아버지’에 대한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가족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상가족이테올로기는 가족의 형태 뿐 아니라, 그 안의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통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발견하고 기존의 가족 정책 및 복지제도를 그에 맞추어 조정하는 적극적 조치가 없다면 가족형태 및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시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로,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가족구성원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래 사례 6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 상황 그가족책임

- 가족 관계(파트너십, 돌봄)로부터 파생되는 위치에서 부여되는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에 관한 성역할, 정상가족 통념을 기반으로 발생함.
-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과 같은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적극적 조치를 통한 정책적 지지가 시급함.

사례6 취학 전 자녀를 두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발췌) 이는 아이를 가진 남성과 비교했을 때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것은 아이를 가진 남성은 직장일에 지장을 받지 않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은 직장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성차별이라고 보았다. 국가인권위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볼 때 양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서, '가족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도 해석하였다.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판단지침」, 사례1.1가(4.3)-1
 판결 : Philips v. Marietta Corporation, 1971.

[발표문]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차별과 복합차별

가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 복합차별의 의미

(1) 복합차별의 개념

현실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는 어느 하나의 차별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에 대한 어떠한 차별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혼인 여부에 의한 차별, 그가 구성하고 있는 가족형태 또는 그의 가족 상황 때문에 발생한 차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차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차별에 대한 논의로서 '복합차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복합차별²⁴⁾이란 어떠한 차별행위가 복합적, 중층적 또는 중첩적인 복수의 차별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차별은 '이중(또는 다중)의 차별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정 개인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다중의 차별조건을 지니고 있는 때에 복합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합차별은 최소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첩적 또는 부가적 차별(additive discrimination)로서 복수의 개별적 차별사유가 단순하게 더해져서 발생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로서 복수의 차별사유가 결합하여 다른 개별적 차별사유와는 상이한 특유의 차별사유를 구성하는 형태이다.²⁵⁾

* 중첩 차별(additive discrimination)의 예

- 어떤 기관이 직위를 발령함에 있어서 여성보다 남성을, 흑인보다 백인을 우대하여 결과적으로 흑인 여성에게 이중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탈락시키는 경우
- 채용심사에 있어서 점수를 산정할 때 진정직업자격²⁶⁾과 상관없이 학벌, 외모, 신체조건,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의 차별사유를 각각 감점사유로 하고 있어 이런 사유가 중첩적으로(더해져서) 작용하여 합격선을 넘지 못해 채용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경우

* 교차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의 예

- 어떤 기관이 직위를 발령함에 있어서 흑인 여성에게만 특수하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탈락시키는 경우. 이 때, 발령 심사의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균점수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고, 흑인과 백인의 평균점수 역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이혼 사실과 여성이라는 사유가 결합하여 이혼 여성에게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이혼자에 대한 차별'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차별로서 특유한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구분은 복합차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드러낸다. 복합차별은 차별사유들의 물리적 합산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차별사유들의 화학적 결합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복합차별'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일반화된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복합차별(compound discrimination), 중첩차별(additive discrimination) 등의 용어 등이 활용되어 왔다고 한다. Susanne Burri and Dagmar Schiek, *Multiple Discrimination in EU Law - Opportunities for legal responses to intersectional gender discrimination?*,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2009, p. 3
 25) Sarah Hannett, "Equality at the Intersections: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Failure to Tackle Multiple Discrimination",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23, No. 1, 2003, p. 68
 26) 진정직업자격이란 해당 직무내용에 있어서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이 요청되어 이를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고용상 차별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 자격 또는 조건을 말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복합차별 개념이 필요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의 차별행위가 확연히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2)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의미와 양상을 보다 잘 드러내고, 이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복합차별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이유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은 복합차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사유 어느 하나로 규율된다면 그러한 개별사유가 핵심적인 사유로 다루어지면서 다른 차별사유들을 간과하게 하며, 분리된 개별 차별사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차별의 고유한 차별양상이 있고, 따라서 복합차별의 관점이 없다면 ‘장애 여성’의 차별 경험이 ‘장애 차별의 경험’과 ‘성차별의 경험’으로 나누는 것처럼 차별 경험이 파편화되어 버리며, 복합차별의 관점 없이 차별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구제, 예방, 구조적 접근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등이 제기된다.²⁷⁾

실제의 구체적인 차별 양상은 어느 하나의 차별사유로 수렴되지 않는다. 개개의 차별사유는 개별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별사유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하나의 차별사유만으로 그 차별행위의 의미와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다. 가령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게이와 레즈비언 모두에게 남성(성)과의 대척점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과도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반대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서 동시에 드러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관상 같은 차별행위라 하더라도 차별을 당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다중적 차별조건에 따라 그 의미와 결과가 전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차별조건에 따라 특정 차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달라지기가 쉽다. 이것 역시 차별행위가 기본적으로 복합차별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차별금지법에 복합차별에 대한 내용을 당장 담아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행위를 실질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합차별의 관점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2.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차별’과 복합차별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차별(이하 ‘가족상황차별’) 역시 다른 차별사유들과 결합하여 복합차별이

27) Sarah Hannett, 앞의 글, pp 69-70 참조

발생한다. 특히 가족상황차별은 제도적인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사이에 경계 또는 문턱이 존재한다는 점, 가족이 인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 전통적 가족이데올로기에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주로 여성에게 부과한다는 등의 가족제도 내부의 차별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합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이차적 차별인가 복합차별인가?

가족상황차별은 언뜻 보기에는 다른 차별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에 파생하여 발생하는 이차적 차별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동성 동거 가족에 대한 차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가족구성권 영역에서의 차별로 파악되거나, 이혼자의 가족이 겪는 차별 역시 혼인과 관련한 차별의 한 유형이나 결과로 파악되기 쉽다. 가족상황차별이 부수적인 결과처럼 보이는 것이다. 만약 가족상황차별이 일부 차별사유의 부수적 현상으로 주로 나타난다면 가족상황차별 개념의 필요성과 범위는 상당히 축소될 것이고, 복합차별을 논의할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상황차별이 다른 차별사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 그 차별의 실체는 복합차별에 가깝다. 예를 들어, 동성 동거 가족은 성적 지향과 무관해 보이는, 이성 동거 가족과 공유하는 여러 차별행위를 당할 수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특수한 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차별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차별피해의 정도가 가중되기도 한다. 가령 동성 동거 가족에게 공공주택임대서비스가 거부된 경우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로만 주장한다면 이성 동거 가족 역시도 겪는 일이므로 차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반대로 가족상황차별로만 주장한다면 법률혼 보호 필요성 등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차별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모까지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차별조건을 보유한 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가족제도나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만 보거나 단순히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다른 개별 사유로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족상황차별은 복합차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이다.

(2) 가족구성과 복합차별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비혼모 또는 비혼부 가족, 독신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등 가족형태 또는 가족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혼인,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의 다른 차별사유와 결합하거나 이미 결합한 형태로서 복합차별의 양상이 나타난다. 각각의 가족구성과 차별사유들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강한 접착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적 지향의 경우 선택하게 되는 독신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등의 형태는 그의 성적 지향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별 사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적 지향이 선택하게 되는 비혼이라는 상황 역시 결합하여 혼인 여부의 차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고, 여기에 (특히 레즈비언의 경우) 성차별의 요소까지 결합된다. 이러한 경우 차별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당

히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차별행위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가중된다. 이로 인해 고용 영역에서는 취업이나 승진, 업무 시간 및 형태, 수당, 휴가사용 등에서의 차별, 그리고 차별의 한 형태로 발현되는 성폭력, 제도적으로는 사회보장이나 세제 혜택 등의 배제,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입양 등의 제한 등의 차별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이는 어느 한 가지 차별사유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복합차별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혼인 여부는 그 자체가 가족구성원의 하나의 사유로서 가족상황의 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비혼자가 독신 가족, 동거 가족, 공동체 가족 등 어떤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실혼 인정 등에 따른 차별의 내용이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 가족구성과는 구별되는 사유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비혼 이성애자가 구성하는 동거 가족에 있어서도 일방 혹은 쌍방이 트랜스젠더거나 장애인인 경우 특수한 복합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비혼자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또 자녀를 입양한 경우 등 가족상황차별이 복합차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수 발생하게 된다.

재혼, 입양, 국제결혼 등 ‘가족구성과정’과 관련하여서도 복합차별이 생겨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언어, 성별 등의 차별사유와 결합한 고유의 복합차별 양상이 나타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뒤에서 살펴볼) ‘연계차별’ 역시 발생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하였을 때에는 ‘혼인’이 차별사유로 결합하여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외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의 차별사유가 연계차별로 작동하면서 성차별과 결합하여 폭력적인 차별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3) 가족구성원 및 가족책임과 복합차별

앞서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차별 사례”에서 언급하였듯, 가족구성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족 상황차별은 연계차별로 드러나기도 한다. 연계차별은 엄밀히 말해 복합차별과는 구분된다. 연계차별은 타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친구가 게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이 때 차별받는 당사자가 게이 아님에도 게이로 인식되거나 게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이는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로 평가된다. 차별을 가하는 자로서는 상대방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게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차별을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차별을 당하였으나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개념이 연계차별이다. 가족구성원이 장애인, 이혼자, 동성애자, 이주민 등이라는 이유로 다른 가족구성원이 차별받는 것 역시 연계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의 매개가 되는 ‘타인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집단이 가지게 되는 운명공동체 또는 운명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연계차별의 성격과 복합차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다른 차별사유와 가족이라는 관계가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이다. 이를 성적 지향 등 개별차별사유로 접근할 경우 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간접적으로 차별을 받은 것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 가족 관계에

대한 차별이, 다른 차별사유와 관련된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²⁸⁾

가족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의제되는 구성원, 즉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환자 등과 관련한 연계차별로 복합차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족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서 특히 여성이라는 지위와 결합하여 복합차별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여성이 남성과 달리 미취학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었다면 이는 가족책임이 차별사유로 작용하는 것과 성차별이 결합한 복합차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성차별구조와 가족제도의 차별구조가 동시에 문제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요청된다.

3. 맺음말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 등을 통한 규범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장애 여성 운동 등에서 다중적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최근 반차별 운동을 중심으로 복합차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일반적 차별금지법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합차별이 오히려 차별의 본질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요청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다.

가족상황차별에서도 복합차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차별사유와의 관련성 없이 ‘순수한’ 가족상황차별은 상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가족상황이 차별사유로서 고유한 의미가 없거나 가족상황은 결국 다른 차별사유들로 설명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합차별의 논의를 통해 가족상황차별의 특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구제, 예방방법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단지 가족상황을 차별사유로 명시할지 여부보다, 이러한 지점이 보다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8) 2009년 7월에 있었던 인도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 사건에서도 차별가해자는 그와 동행하던 한국인 여성에게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시귀니까 기분 좋으냐?”는 차별적 발언을 했다. 연계차별은 이러한 경우에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복합차별의 성격으로 드러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지선, 「인종과 젠더 사임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4) -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2010. 9.)자료집 참조. 이렇게 연계차별 역시도 다른 차별적 계기를 통해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복합차별과 매우 친한 성격을 가진다.

[토론문]

‘가족상황’ 사유와 차별금지법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의 정의방식 및 이해와 관련된 논의들은 한국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담론의 활성화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 생각됨. (인권위 차별판단지침 2008에서 제기한 본인의 논의도 이와 비슷한 맥락임)

- 지난 9년여동안(2001. 11~2010.3) 인권위법에 근거한 차별사유별 진정통계를 보면, 가족상황 사유는 접수 70건에 각하 43건, 기각 13건, 조정 1건, 권고 7건 등으로 전체 진정통계 중 0.9%였음

-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함(사유의 세분화?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낮은 민감성? 판단기준의 부재? 한국사회에서 가족논의의 정체?)

○ 그렇다면 이 발제문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법에 담기? 어느 법에 담기?
-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가족의 무엇에 대한 차별을 가장 심각한 차별피해로 보는가... (민법 개정? 복지 수급권의 문제? 혼인권?)
- ‘가족상황’ 문제를 차별피해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의 정체성은?

○ “가족상황”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외국 입법례

- 프랑스 형법 : 성별, 가족상황, 임신, 외관, 성, ...성적지향...을 이유로 개인 사이에 생기는 모든 구별은 차별이 된다(제25조의1)
- 프랑스 노동법 : 어떤 사람도 채용과정이나 연수 또는 기업내 훈련기간에서의 접근에서 제외될 수 없고, 어떤 근로자도 출신, 성별...성적지향...가족상황, 임신, 유전적 특징...가족의 성(nom)...을 이유로...차별적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제132조의1)
- 캐나다 인권법 : 인종, ...성적지향, 혼인여부, 가족지위(family status)...(제3조제1항)
- 홍콩 가족지위차별금지법 : 가족지위(family status)
- 영국 평등법 : 혼인 및 동성결혼(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영국은 2005년 제정된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을 평등법 2010으로 통합

○ 외국입법례에 대한 단상

-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금지의 규정들이 시민권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를 전제하고 이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권 보장을 통해 획득되기 어려운 영역의 권리에 대한 규정들이 아닌가?
- 일반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등을 통해 ‘가족상황’을 차별사유로 정한 나라들을 찾기 어려우나 이는 해당국가들이 (법률혼이건 사실혼이건) 혼인여부를 둘러싼 차별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혹은 동성에 혼인권 등과 관련한 차별에 대한 접근을 성적지향, 시민권 등으로 접근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외국의 경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접근 즉 싱글맘, 한부모, 입양가족 등은 차별 피해보다 서비스 지원쪽에서 접근되는 경향
- 최근 제기되는 가족책임은 돌봄의 책임과 관련한 차별

○ 가족상황과 관련한 차별금지와 돌봄의 책임에 따른 차별금지 논의

- 최근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 국가들의 논의는 이를 돌봄의 책임에 근거한 차별금지의 논의와 함께 함. 호주는 2001년부터 뉴사우스웨일즈의 차별금지법에 돌봄제공자의 책임(carer's responsibility)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미국도 최근 가족책임에 따른 차별(Family Responsibility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주정부의 법규와 정책들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 미국의 가족책임차별이란...가족책임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다. 임신한 여성,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리고 고령의 부모나 배우자/파트너가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그들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 * 호주의 돌봄 책임과 관련한 대상자 범주에는...자녀(혼인, 입양, 의붓, 수양 그리고 법률적 책임이 있는 모든 어린이), 현재 혹은 이전 배우자, 사실상의 이성 혹은 동성파트너의 자녀, 법적 후견인인 모든 성인, 직계가족구성원이며, 직계가족구성원에는 결혼에 의한, 또는 사실혼에 의한, 이성 혹은 동성의 배우자 혹은 이전의 배우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이전 배우자의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의 형제, 이전 배우자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자매, 이전 배우자의 자매, 손자 또는 배우자의 손자, 이전 배우자의 손자,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이전 배우자의 조부모가 포함
- 국가의 복지재정 축소와 더불어 시장과 가족에게 복지를 맡기려는 복지혼합의 결과가 이러한 논의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검토해보아야 함.

○ 복합차별과 관련하여

- 차별이 한가지 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다양한 사유들이 결합하여 차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

- 현재 이러한 복합차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특정 사유에 대한 차별피해자를 어떤 근거 법률에 의해 구제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규정. 즉 복수의 차별인 경우 각 사유별로 예외사유를 갖춘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든 규정 마련
- 발제문의 논의는 복합차별을 어떻게 법에 담고자 하는 것인지...아니면 차별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담론형성을 위한 것인지...

[토론문]

권희정(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1. 미혼모

1) 용어의 문제 -차별을 충분히 드러내기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된 여성을 지칭하는 낙인을 가진 단어이다. 최근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견어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혼모나 미스맘이란 용어가 대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굳이 '미혼모'란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비혼모'나 '미스맘'이란 용어가 미혼의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선택하며 미혼모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차별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전제한다.

2. 미혼모 되기

1) 출산 및 양육권에 대한 차별

'한 두 번의 실수', '원하지 않는 관계', '유부남과의 관계',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서 흔히들 미혼모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혼모는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임신은 1년 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연구방안).

- 사례1 (35세, 33 출산, 대졸, 임신 당시 기업팀장):
10년 교제-첫 번째 낙태-남친의 두 번째 낙태 강요-출산결심
- 사례2 (38세, 33 출산, 대졸, 임신 당시 시민단체):

- 집안 반대, 결혼 허락받고자 임신했으나 관계악화로 헤어짐-출산
- 사례3 (40세, 34 출산, 대졸, 임신 당시 자영업):
2년 교제-헤어진 후 임신 발견-출산-입양-양육
- 사례4 (37세, 35 출산, 석사, 임신 당시 해외지사 근무):
2년 교제-결혼약속-임신-출산-이후까지 남자가 결혼약속 지키지 않음
- 사례5 (32세, 27세 출산, 대졸, 당시 연구소)
1년 교제-임신-결혼계획-갈등-출산 후 헤어짐
- 사례6 (30세, 25세 출산, 대졸)
결혼 - 3일 만에 남편 사망- 미혼모

이들은 모두 친밀한 관계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성적인 비난 및 낙태와 입양 강요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사례 4의 경우는 언니와 남동생 모두 동거 후 결혼했지만, 본인만이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화냥년'이란 비난을 받았으며, 사례 3의 경우는 가족의 입양강요에 입양을 보냈다 찾아온 경우이며, 심지어 사례 6의 경우는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남편이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낙태를 강요받았다.

미혼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 출산권, 양육권의 침해

3) 미혼임신-출산-양육권의 침해 나아가서는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차별의 배경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초혼연령은 28.3세, 첫출산 연령은 30.97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결혼이 출산의 조건이 되는 매우 결혼중심 사회란 것을 반증한다. 미혼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권 및 가족구성권에 대한 차별은 이러한 결혼을 출산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결혼제도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저임신 문제와는 다르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사회는 고임신사회이 저출산사회라고 말할 적이 있다. 즉 이 말은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대한 제도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미혼모 집단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질 필요도 없으며, 미혼이 비출산으로 이어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기혼의 맥락에서 낙태권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미혼의 맥락에서 출산 및 양육권 그리고 가족구성권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사회이기 때문이다.

2) 미혼모-교육권 및 노동권에 대한 차별

대부분의 미혼의 임신한 여성은 배가 불러오면서 중/고생은 스스로 자퇴, 대학생은 휴학, 직장인은 스스로 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퇴나 자진사퇴 역시 사회의 낙인으로 인한 강요된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사례1-권고사직, 사례2-사내 커플이어서 한 쪽이 그만 둘 것을 강요받다 남자가 유학을 떠남으로 여자는 남음, 사례 3 -미혼모임이 알려지자 매상이 떨어져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 사례 4-남성의 결혼약속 불이행, 출산으로 인한 혼돈 속에 회사에서 사퇴처리됨, 사례5 - 임신으로 계약약 안 됨, 사례6-계약직 전전

3) 미혼모-주거권에 대한 차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정씨는 '아이와 함께 발 뺀고 누울 집'이라고 대답했다. 지금은 근무하는 학교가 가까워 동생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로 인근 '모자원'에서 지냈다고 했다.

'모자원'이나 '중간의 집'등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강남이나 서초, 또는 경기 동남권에는 시설이 거의 없단다. 또, 정씨가 지냈던 구로의 '모자원' 같은 경우엔 이용 희망 인원이 많아 아이를 낳은 지 24개월이 지나면 예의 없이 퇴소해야 한다. 또, 정씨처럼 모자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경우에도 출퇴근이 힘들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씨는 자기 같은 양육 미혼모에게 한부모 가족을 위한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도 딴 나라 이야기란다. 지금의 청약 점수 산정기준으로는 미혼모가 입주 가능한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부양 가족 수, 자활사업 참여기간 등이 점수 기준에 포함되는데, 아이 하나가 대부분인 젊은 미혼모들의 경우 부양 가족 수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힘들고, 자활 사업 참여는 비현실적 항목이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2010-12-3, 결혼식 3일만에 숨진 남편, 나도 미혼모)

* 군포 임대아파트 분양 경우 기혼자 가구 대 한부모가구 (70:30), 경쟁률 (0.06:1 vs 6:1) 기혼

자 가구 제모집 후 분양완료

* 사례 가 (대학교 1학년 여류방학 출산 후 학교 복학 계획)

- 전세자금 대출 자격 안 됨
- 동사무소 복지사 시설 권유
- 시설 입양 권유 “아니 입양 안 보내고 어떻게 공부를 계속하려 하죠?!?!?”

4) 미혼부의 비가시화 및 책임 면제 - 남성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성차별

[토론문]

가족상황차별과 차별금지법

진경(반차별공동행동/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가족상황차별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게 될까? 선의님이 “가족상황차별이 이제까지 다루어지거나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동감을 하며, 가족상황차별이 차별금지법의 담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제대로 된)차별금지법이 있다면 가족상황차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예상 사례들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차별’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가족주의와 혈연주의가 어떤 이태올로기보다 공고한 한국에서 가족상황차별은 차별금지법의 담론에서 다른 해외 사례들과 조금 다른 위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발제문을 읽으면서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해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인권위법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가족형태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쓰기에는 모호하기 때문에 가족상황차별’이라고 통칭한다 하였다. ‘가족형태’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대가족/핵가족의 구분에 주로 쓰여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특정한 가족사를 거쳐 형성된 맥락을 살피려 한다는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로서 ‘가족구성과정’이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 올만큼 효과적 인지 의문이 든다. 가족구성과정/가족관계구성방식/가족형태 등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인데, 가족상황차별의 범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정리가 필요한 듯하다.

- 가족구성원에 의한 차별은 그나마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범주다. 특히 가족 구성원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유독 강한 한국에서는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연계차별/복합차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가족 전체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낙인은 매우 두드러진다. 장애인이 독립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한 집에 장애인이 있을 때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 외에 이러한 연계차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잠착되어 강력한 근거리 배정원칙에 예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같은 학교를 다닐 때, 장애아동 본인 뿐 아니라 형제자매 역시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폭력,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장애인 형제자매의 존재는 '숨겨야'하는 것이다. 비장애 형제자매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불이익과 차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 모두 묶여서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가족구성원의 존재 자체가 잠재적 차별사유가 되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족상황차별과의 연계차별로 보기 보다는 '장애 차별'로 환원하는 성향이 강하다. 가족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도 심각한 상황이라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지만, 일부의 흐름에서 '건강 가정'을 지향하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 가족상황차별이 복합차별/연계차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가족상황차별 자체를 충분히 고민해볼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가 가족복지점수를 두는 것이 혼인여부나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이 아닌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 토론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부양가족 복지점수의 특징과 성격은 무엇인가, 본 사안 외에 가족형태나 혼인여부, 기타 가족형태에 의해 급여, 복지체계, 세제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그 배정은 무엇인가, 차별적 요소가 있는가?,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게 더 많은 복지점수 또는 수당을 배정하는 것(배우자 100포인트, 자녀와 부모는 50포인트)이 합리적인가?'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고 한다. 실제로 공무원들과 대기업 직원들은 가족수당이라는 것을 받고, 최근 기업들은 '가족친화경영'을 모토로 직원 가족들을 챙기는 것(가족 생일에 케익 보내기, 가족 건강검진 실시, 가족여행 보내주기 등)이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런 '가족지향 복지'에서 배제 되는 가족들과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런 상황을 차별금지법이 있을 때 어떻게 차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 만으로 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가족상황차별을 모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너무나 당연하게도)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인 가족상황차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새롭게 담아야 할 것인지, 운동세력이 기존의 법과 정책에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가족'개념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제문에 나와 있는 가족상황차별의 여러 범주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가족상황차별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차별의 피해 당사자들이 가족상황차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B. 기타 발표문

2011.1.15 제2회 LGBT인권포럼

[사회권 섹션]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가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가족구성권연구모임)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또는 '연구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관련하여 현재 모임의 현안 및 문제의식을 소개하면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운동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활동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발제를 요청받았습니다. 사회권과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한 영역으로서 가족구성권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런 취지에 맞추어,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걸어온 길과 우리 모임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려고 합니다.

1.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걸어온 길²⁹⁾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만을 다루기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연구모임은 2006년 8월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가족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 안팎을 아우른 차별을 없애고 가족제도로부터 배제된 집단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 및 정당, 활동가, 연구자,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모임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면서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연구모임으로 꾸러진 것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성소수자의 시민권 문제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 자체의 문제, 그리고 가족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차별 현실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소수자 운동의 입장에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보다 대안적이고 폭넓은 시선에서 접근하고, 연대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임

29) 이 부분은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민주노동당: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2008.에 수록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소켓글을 상당 부분 옮겨온 것입니다.

니다.

시작

2005년 3월,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근간을 이루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 이전부터 확산되었던 가족에 대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모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그동안의 다양한 가족 논의들 사이에서 ‘빈틈’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가족에 대한 기존의 담론과 제도에 균열을 내겠다는 포부로 출발하였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먼저,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기반하고 있던 부계혈통주의·성별분업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현실 속의 가족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분류하는 범주들은 끊임없이 ‘가족’에 포함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나누고, 어떤 가족이 ‘가족’에 포함되느냐를 결정짓는 기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회복해야 할 가족의 돌봄 기능, 경제적 생존단위로서 역할과 더욱 밀접히 결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른바 “다문화가정”이 가족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모임은 이러한 논의의 틀로는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의 실질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가족 담론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논의의 틀을 전환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내걸었던 의제는 ‘가족구성권’이었습니다. 가족구성으로부터의 배제야말로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가족과 관련한 차별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가족구성권이라는 문제 설정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화하는 작업들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의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 동성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와 공동체 가족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이자 과제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 설정은 우리의 활동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정상가족’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 담론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개(1) - 연구활동의 진행

활동 초반, 연구모임은 대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활동보다는 새로운 파트너십 관련 법률 제

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토론과 연구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 시민사회단체나 연구자들이 진행한 가족 차별 사례 분석, 파트너십 논의에서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또는 동성결혼에 대한 연구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외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파트너십 관련 법률을 정리한 자료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파트너십 관련 법률의 상을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와 함께 진행한 또 다른 작업은 여러 사회정책·제도 안에서 가족이 어떠한 정의 하에 어떤 범주로 설정돼 있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어떤 차별을 초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와 자료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주택정책, 조세제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러한 제도 설계의 근간이 되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6월에는 “가족에 대한 발칙한 이야기: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1년간 고민해 온 문제의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리 모임은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출발하면서도 오늘날 가족을 ‘선택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는 개인들의 실천, 친밀성의 관계에 대한 욕망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존 가족관계의 성별 권력 불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정형화되고 제도화 된 가족 범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해 건강보험, 임대주택 제도 등을 통해 제도와 정책에 드러난 가족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 가족과 개인, 가족과 가족을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해외 파트너십 관련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 동성애자 운동에서 제기되었던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워크숍을 기점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모임 구성원을 확대하고 우리 모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경로들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참여하던 단체, 연구자, 활동가들 외에 더 많은 단체, 개인들에게 참여를 제안했고, 이후 가족구성권의 문제의식을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담론과 논리를 개발하고 이후 입법 운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 구성원들은 △심층면접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성원들에 대한 사례 조사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정리 △동성결혼과 동반자 관계 관련 해외 법률 정리 △고용정책, 복지제도의 가족 차별 검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업결과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 담론·제도·사례 연구』(2008)를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전개(2) - 문제의식의 확대와 심화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처음 계획은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을 펴낸 이후 그때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거쳐 법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결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문제의식을 좀 더 넓히고 깊이 있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입법운동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대중적 활동을 통해 가족 차별과 관련한 현실을 드러내고 가족 차별의 현실에 놓인 사람들의 자력화를 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보다 현실에 다가가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가족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더욱 가로막게 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정책 담론을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도한 것이 <‘비정상’ 가족들의 ‘대법한’ 미래기획 “찬란한 유언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가족 차별을 구제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가족 차별과 가족구성권 배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죽음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반대로 유언장 쓰기를 통해 가족제도가 어떻게 제도 바깥의 가족들을 차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족제도와 여기에 터잡은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아울러 성찰하면서, 가족제도 바깥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가족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죽음 후의 자기주체성을 유언장으로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게이, 레즈비언, 장애인, 성, 비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결혼이주여성, 비혼모 등과 함께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란한 유언장” 행사와 동시에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2010년 한 해 동안 <가족정책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가족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접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낙태’와 ‘출산장려’정책, 주거 정책과 계급의 문제, ‘다문화’와 관련한 가족 정책, 주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 혼인 및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강화와 가족 차별, 차별금지법과 가족 차별 등을 주제로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가족 차별과 가족구성권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보수적인 가족정책의 흐름에 대항하고 대안적인 정책 방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앞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그동안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을 넘어, 이제까지 발전시킨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모임을 확대하여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흐름을 만들 계획입니다. 가족과 가족구성권에 관한 연구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면서도, 변화하는 가족과 관련한 법·제도·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러한 운동에 공감하는 단체, 개인들과 보다 광범위한 연대모임(네트워크)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 운동의 큰 줄기 중 하나는 그동안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목표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동반자 관계와 공동체가족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운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연대모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³⁰⁾

인권으로서의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right to found a family)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인권법에서 명시하는 인권개념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그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규약들은 이성간의 결합만을 전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가족을 둘러싼 성별 불평등과 권력관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³¹⁾

그러나 최근의 해외 입법례나 인권규약의 현대적 해석은 가족구성권이 이성애적 결합만을 의미

30) 성소수자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차별사례와 법적 문제, 정책적 대안,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영울 연구책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한영희 외,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토론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편,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도서출판 해울, 2006.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2008. ; 장서연, 「동성 커플의 가족구성권 이야기」,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자료집,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9. 등을 참조.

31)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앞의 책, 15-16쪽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전문가들이 채택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적용에 대한 요그야카르타 원칙(THE YOGYAKARTA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Relation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2006)은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고,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럽의회는 2000년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동성 파트너십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한 데 이어 2010년에는 초정부적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회 결의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1728 (2010)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에서도 회원국이 법적인 동성 파트너십을 보장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2004년 미국 심리학회(APA)는 대표자회의에서 「성적 지향과 결혼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Sexual Orientation and Marriage)」을 채택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공론의 영역과 공공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성적 지향과 결혼에 대한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자원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인권의 영역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인식은 점차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동성 결혼을 인정한 국가가 두 자릿수가 되다

이러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동성 결혼, 또는 결혼관계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성간 파트너십 등록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포르투갈(5월)과 아이슬란드(6월), 아르헨티나(7월)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10개국으로 늘었고³²⁾, 아이슬란드 요한나 시거다 도터 총리와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이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사실 독일은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되고 있지만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32)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등 10개국입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 내에서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주 등에서도 동성 결혼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동성 결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미국 내에서의 동성 결혼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촉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동성 결혼 뿐만 아니라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프랑스의 ‘팍스’처럼 동성간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국가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이 동성 결혼 또는 파트너십 인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자의 파트너 간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의 현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차별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어 발생하는 차별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한 게이 커플은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파트너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상태를 가장 잘 알고 수술 접수부터 간병까지 할 사람이었지만, 병원 측은 그가 서명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트너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직접 와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³³⁾ 다른 레즈비언 커플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파트너가 한밤중에 병원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친구사이에 불과하다면서 10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내지 않는 한 입원동의서를 쓸 수 없다는 병원측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친한 게이 친구가 남편인 것처럼 행세해서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해주고 보살펴주고 싶어하기 마련”이라면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³⁴⁾ 이처럼 동성 파트너는 의료와 관련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환자의 몸상태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접견할 권리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파트너의 중요한 삶의 순간에, 오히려 거기서 배제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레즈비언은 15년간 파트너와 동거를 하며 같이 재산을 모았지만 재산 명의가 다 파트너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바람에 서로 헤어진 이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성 커플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었습니다(이성 커플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그는 “마흔이 넘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편, 앞의 자료집, 11-12쪽 사례.

34) 위의 자료집, 15-16쪽 사례.

다.³⁵⁾ 재산분할청구뿐만 아니라 상속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유언장으로 미리 대비하여 두었다면 어느 정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방비로 아무런 관계없는 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유언장으로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 사망한 사람의 형제 등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유언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반드시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은 가족으로서 인정되지 않아 가장 가혹한 일이 벌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앞의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레즈비언 커플은 파트너가 오랜 투병기간 동안 옆에서 돌보았지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던 그녀의 가족”들은 파트너를 따돌리고 유골을 자신들의 고향 묘소에 모시겠다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³⁶⁾ 이처럼 현실 속 동성 파트너는 파트너의 사망시 장례절차의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파트너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하게 되기까지 하며, 애도할 수 있는 과정 자체를 박탈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국제 커플의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게이 커플은 한국인과 재한 일본인 커플인데, 일본인 파트너는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 파트너가 직업을 잃게 되거나 정년을 채우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같이 살 수 없어 걱정이 큼니다. 실제로 중간에 반년 정도 직장을 잃었을 때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있어야 했는데, 생이별을 한 것이었을 뿐더러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³⁷⁾ 이렇게 국제 커플은 국내 체류자격이나 귀화요건 등에 있어서 차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밖에도 건강보험·국민연금·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혜택 등에서의 불이익, 각종 복지나 노동 관련 수급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나 장기공공주택임대 서비스 및 ‘보증자리 주택’ 신청 등에 있어서의 배제, 경조사 휴가·간병휴가·육아휴직 및 관련 비용 혜택 등 크고 작은 많은 차별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또 입양을 통한 가족구성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역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한 명이 FTM인 동성 커플은 세제 혜택 같은 것보다는 떳떳하게 인정받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다면, 파트너십 등록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꼭 서로가 배우자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³⁸⁾ 또 다른 게이 커플 역시 “금전적인 것 한두 가지 따져서 결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팎으로 안정적이기 위해서 꼭 동성 결혼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³⁹⁾

35) 위의 자료집, 13-14쪽 사례.

36) 이경,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슝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도서출판 한울, 2010.

37)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편, 앞의 자료집, 16-17쪽 사례.

38)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앞의 자료집, 103쪽 사례.

법원의 태도

이렇게 입법의 공백 속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빈틈을 메울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 역시도 동성 커플에 대해 사실혼과 같은 보호를 국가가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중략)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⁴⁰⁾

2004년 법원은 위와 같이 동성 파트너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보수적이고 협소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실혼과 유사하나 사실혼은 아니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법률상 신고가 없을 뿐 실질적으로 파트너로서 공동생활관계를 유지·영위한다는 점에서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동성 파트너 역시 법률상 신고를 ‘못할’ 뿐이므로 법적인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도화의 가능성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한국에서는 아직 제도화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

39) 같은 책, 같은 쪽 사례.

40)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힌 것처럼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정치 현실상 지금 바로 입법을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 보장 입법에 있어서 소수자에게 유리한 때란 없습니다. 보다 덜 불리하고 더 불리한 때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를 포함하여 함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준비 과정을 탄탄하게 거치면서 한 번에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에서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법 형태가 ‘결혼’이 적절할지 아니면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안 가족’들의 가족구성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형태가 적절할지, 단계를 밟는다면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이 좋을지, 입양은, 등록과정은, 국제커플은, 외국에서의 동성결혼을 한 경우 등등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3. 맺음말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무턱대고 이를 주장할 수만은 없는 ‘제도화의 함정’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⁴¹⁾ 가족구성권을 확보하려는 운동은 시민권 운동으로서 시민권을 인정하는 주체를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독점적 권력을 확인한다는 점, 시민권의 작동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지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는 포섭과 배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시민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차별이 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문제를 지닌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은 가족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기존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자 가족들이 시민권적 권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성애에 기초한 가족들이 중심에 있고 동성애자 가족들은 ‘특수’하게 ‘주변적으로’ 배치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운동이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가족제도에 편입해 들어가려는 시도로 기능하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가족 제도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1) 이하의 내용은 오가람,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운동의 과제와 전략」,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 토론회』 자료집, 한국케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06.의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는 것입니다.

한편, 커플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권 보장 역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수자들의 선택하는 가족의 구성 형태란 단지 파트너간의 결합인 경우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한 양육자-자녀 가족, 그룹홈 또는 공동체가족 등의 여러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구성권 보장의 현실적인 상을 어떻게 그럴지부터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은 이미 그 자체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단지 시민권을 ‘획득’하고 가족 제도에 ‘편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민권을 ‘재구성’하고 가족 제도를 ‘변혁’시키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점을 초기부터 인식하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들을 살펴면서 입법화의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좌고우면하면서도 중심을 가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